기본연구 2020-26

# **혁신적 포용사회**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연구

연구진 장세길 · 신지원

Jeonbuk Institute





# 혁신적 포용사회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연구





##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장 세 길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신 지 원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관리 코드 : 20JU0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1. 연<del>구목</del>적

- □ 조례에 의한 실행계획 수립의 기초정보 제공
  - 이 연구는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정책의 비전과 목표, 주요방향, 전략, 추진 체계 등을 설계하여 전라북도가 조례에 의한 실행계획(2개년)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전라북도조례 제4조(실행계획 수립) ① 전라북도지사는 문화다양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 2. 문화다양성 개념 검토

- □ '문화적 권리'의 개념 변화
  - 세계대전 이후에 문화적 권리가 등장하였으나, 이 당시에는 문화적 권리가 보편적 개념으로 정립되지 않은 채 휴가여가의 권리, 문화·여가활동의참여보장 등 개인적 차원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됨
  - 이후 문화적 권리는 개인적 차원의 문화적 향유권에서 출발하여 소수집단
     의 문화적 권리로, 나아가 문화적 권리의 경제적 측면과 국민국가의 주권
     적 권리로 대상이 확대되어왔음
  - ICESCR와 ICCPR(1976) 이후에는 제3세계 국가의 언어와 문화유산, 소수민족문화의 보호를 목적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문화다양성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문화다양성선언(2001) 이후에는 문화권 권리가 인간·국가(사회)발전 개념, 즉 경제적 측면이 강조됨

#### □ '문화다양성'의 개념 변화

○ 세계문화발전위원회의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보고서(1995년)에서는 과

거 문화의 보존에 집착하기보다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증진시키는 것이 국가·지역·인류사회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이 강조됨

- 유네스코의 심포지엄(1999, 문화: 특별한 형태의 상품인가?)에서는 문화 상품 문제가 제기되었고, 문화상품의 정의, 전지구화와 문화다양성 증진 문제, 문화 비경제성과 예외규정 등이 제시됨
- 문화다양성이 본격 등장한 세계문화다양성선언(2001)은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공통유산이며 개별국가의 총체적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라는 것을 천명하였고, 문화적 권리를 인권의 기본요소로 규정하면서 문화상품은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화상품 예외규정을 명시함
- 문화다양성선언과 달리 문화다양성협약(2005)은 첫째, 문화다양성과 인권 보다 문화상품성과 표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문화의 경제적 측면'을 강 조하였으며, 둘째,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채택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 면서 국민(민족)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강조함
  - 문화다양성협약에는 국민국가의 주권적 권리뿐 아니라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소수집단 과 원주민의 문화적 권리 역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당시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미국 중심의 문화적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민국가의 문화주권 수호가 강조된 나머지 소수자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증진보다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이슈가 주목받음

#### □ '권리로서 문화'의 개념 변화

- 초기 문화의 개념은 예술작품과 그 생산과정으로 이해했으나 점차 포괄적 문화개념으로 확장되었고,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선언에서는 인간의 생활양식과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질들의 복합체로서 이해됨
- 예술과 문학의 결과물과 생산과정에서 극히 제한적인 개념에서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생활양식 전반에 대한 이해와 창조적 활동의 개념으로 확대 되었다가 문화주권의 수호가 강조된 다양성협약에 이르러 다시 예술(대중 문화 포함) 중심 문화의 생산, 매개, 수용에 따른 결과물로 축소됨

#### 3. 문화다양성정책 현황

#### □ 정책의 단계별 변화 과정

○ 우리나라에 문화다양성정책이 처음 도입된 것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이 체결된 2005년이며, 이때를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현재에 이름

〈한국 문화다양성정책의 단계별 변화 과정〉

정책 단계	주요 특징
	문화주권 수호와 스크린쿼터제
2005년-2009년	한국에 도입된 문화다양성은 문화산업이라는 한정적인 영역에서 만 관심을 가졌고, 문화계의 표준화 및 획일화에 대항 논리로 접 근됨으로써 스크린쿼터제 반대 외에 정책이 구상되지 않았음
	협약 비준과 다문화정책으로서 문화다양성
2010년-2013년	다문화 담론이 정책적, 사회적 쟁점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축소되었고, 문화다양성은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정착에서 공존으로 바꾸고 다양한 계층(특히 외국인주민)의 문화(향유)활동을 지원하는데 역할에 그침
	문화다양성의 '독립'과 문화예술정책으로 '귀환'
2014년-현재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삼고 통합(동화)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문화정책으로서 문화다양성이 비판받았으나, 다문화정책에서는 (예술이 아닌) 소수자집단의 문화(삶)를 대상으로 삼은 것에비해 '독립한' 문화다양성정책은 정책대상자(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만 확대되었을 뿐 오히려 문화다양성의본원적 가치가 축소된 채 예술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축소됨

#### □ 정부와 지자체 정책의 한계와 과제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에는 개인 및 소수집단 및 국민국가 문화의 보호
   와 문화적 예외성을 함께 명시하고 있지만,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강조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문화정책과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전라 북도 정책 역시 문화적 '표현'이 강조되는 예술 중심이 두드러짐
- 문화적 권리와 인간·사회발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대상은 소수자(집단) 이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삼음

-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수혜자 역시 소수자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예술을 향유하는 것에 모아져 있는데, 전문가들은 "소수자가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여야 하는 다수자를 대상으로"(라도삼, 2018: 54)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소수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조건으로 살아가는 타자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의 정책이나 사업들은 소수자를 복 지의 대상처럼 약자의 산물로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함
  - 이러한 이유에서 소수자를 위한 독자적인 시설(예, 장애전용시설, 다문화전용시설 등)을 조성하지만 오히려 소수자와 다수자의 사회적 접촉면을 늘려 다름을 상호 인식하고 공존이 가능함을 깨우쳐주는 것이 필요함
-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정부 공모사업 대응의 일환으로) 문화(관광)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수록 정책이 체계화되고 있으 나, 전라북도에서는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이후 전담부서가 지정되었을 뿐 아직까지 문화다양성정책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 문화다양성협약 체결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우리나라 정 책방향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 에서는 지역에 맞는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정책대상을 설정해야 함
  - 정책은 주민의 욕구나 수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전라북도에서 문화다양성정책이 필요한 이유와 주민의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 특히 국가 간 무역 분쟁에 초점을 맞추어져 체결된 문화다양성협약과 달리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정책은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소수자의 사회적 배려 외에 소수자의 문화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다수자와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접촉면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소수자를 위한 전용 시설을 조성하기보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소수자와 다수자가 각각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상호 문화를 인식하는 계기를 넓혀 주는 사업이 필요함
  - 대상을 설정할 때 사람이 아니라 활동을 중심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소수자는

고정된 것이 아닌 상대적 개념으로, 처한 위치-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며, 특히 "유네스코에서도 문화다양성을 대상이 아니라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함"(라도삼, 2018: 55)

-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때 기존 정책과 다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통되 인식이 정립되어야 하고 이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의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제도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일 본 오사카의 헤이트 스피치 처리 조례, 또는 전라북도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문화다양 성을 체크하는 절차 등의 제도가 있음

#### 4. 조사 및 의견 수렴

- □ 사업사례, 의견조사를 종합, 계획수립 방향 설정
  - 다른 지역 사업과 정책연구 사례, 델파이조사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정책대상별 관계자의 심층인터뷰를 통한 실태와 과제 제안을 종합하여 전 라북도 제1차 문화다양성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정리함

〈사례·의견수렴·조사 분석의 주요내용과 전북정책 수립의 시사점〉

지역	주요 내용	전북정책 수립 시사점
	경기도와 경남에서는 교육청 조례 제정	전북교육청 조례 제정 추진
조례	실태조사를 최우선 과제로 실행	실태조사 선도과제로 추진
그네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없음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필요(조례개 정-조항포함 검토)
ua	소수자 현황 파악 실태조사 사업이 가장 미흡, 정책기반(법·제도, 예산, 기구 등) 마련 부족	정책기반 마련, 선도전략 추진
사업   사례	다문화사업 중심, 문화다양성 독자 시업이 부족	독자적 문화다양성 사업 발굴
714	대표 시업: 무지개다리시업, 문화다양성 날(주간)	무지개다리사업의 확대(개선)과 광역단위 문화다양성 주간 추진
연구 사례	소수자 대상의 직접 시업보다 시민사회 이해증 진을 위한 교육 중심의 인식개선 시업 강조	소수자 직접 사업에 앞서 시민사 회의 인식 개선을 우선 추진
[-1]	(정책빙향) 공통적으로 소수문화 보호, 공존의	주요 정책방향을 준용, 지역특화

	시민문화, 정책기반 구축 등 제시하고, 지역 특 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정립·활용방향 제시	문화다양성 정립·활용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포함
	행정·공공기관 정책개발 시, 문화다양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를 제안(서울연구원)	공공정책 수립·집행 시, 문화다양 성 지침과 가이드라인 적용
	문화다양성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상징적 선언 이자 도시의 비전과 지자체의 의지를 담은 선언	전라북도 문화권(문화다양성) 선 언 정립과 발표 검토
	다문화사업과 문화예술지원사업의 혼동, 문화다 양성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발굴 필요	다문화, 생활문화, 문화예술 지원 사업과 독립된 사업 발굴
	지역의 독특한 문화정체성과 지역 고유의 문화 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정립, 활용 시업 제안	전라북도 지역별 생활권별 고유의 문화적 다양성 정립 필요
	전라북도 조례의 문화다양성 정의 개선 필요	예술 중심으로 문화로 확장되고, 예술표현을 넘어 문화다양성의 가 치에 주목하는 정의
	시업의 중요도와 시급도의 1순위: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우선과제로 설정
델파이 조사	정책대상별 소외도·시급도 조시결과, 장애문화, 성적지향, 민족·국적, 성별 등이 높은 순위	세부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으로 우선 고려하여 사업 구상
754	정책방향 순위: 소수집단의 기본권 신장 및 권리 보호→집단 간 상호 이해 및 갈등 해결 등	소수집단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상호이해 교육 중요
	정책방향 수립 시 1순위 고려사항: 예술정책 중 심이 아닌, 사회 통합적 접근이 필요	예술에서 문회로 개념을 확장, 문 화다양성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책과제 발굴
	정책대상 관계자별 문화다양성에서의 문화에 대 한 개념과 이해가 다름	도 정책에서 문화다양성의 '문화' 개념의 사회적 공유 필요
	혐오와 차별에 대한 표현의 금지 강조	혐오표현의 금지에 대한 제도
	시민들의 선호와 이에 기반 한 정책지원에 영향 을 받아 특정 장르에 활동 집중되는 현상 발생	예술활동 지원에 있어 다양한 장 르가 지원받도록 지침 필요
0.511.1	정책적 지원의 불균등에 대한 정책대상 간 갈등	청년-기성세대 간 사업지원에 대 한 불평등 논쟁 해소책 필요
인터뷰 조사	정책지원 심의위원 중 문화다양성 이해가 부족 하거나 갈등이 있는 정책대상 관계자가 참여	정책지원 사업의 문화다양성 지침 과 가이드라인 제작, 권고
	집단 간 차별만이 아니라, 집단 내 분절된 차별	집단 내 분절적 차별에 대한 사 례 수집과 다양성 이해 사업
	자발적 네트워크 조성과 상시적 의견수렴, 활동 가 역량강회와 연대(교류)시업 필요	소수집단 역량강화와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 사업 구상
	다양한 문화 간 교류 및 공존의 문화가 형성되 기 위한 문화다양성 관련 장소·시설이 필요	다양한 문화를 통합하여 체험하는 다문화통합 공간·문화원 구상

#### 5.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

□ 비전과 목표와 전략

비전

#### 공존의 문화로 공생사회 창의전북 실현

목표

- \* 공생사회 원리로서 문화다양성의 확산
- \* 다름을 즐기고 활용하는 창의전북 구현

#### 전략 1 광역 단위 문화다양성 정책 기반 마련

- 가. 전담기관 지정과 문화다양성센터 운영
- 나. 현황·사례 중심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와 활용
- 다. 문화다양성 지침·가이드라인 제작·권고와 적용
- 라. 문화다양성 조례 제·개정과 제도 마련

#### 전략 2 접촉면 확대를 통한 공존의 문화 형성

- 가. 문화다양성 교육교재·콘텐츠 개발과 교육 실시
- 나.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주간 지정, 페스티벌 개최
- 다. 문화다양성 공공 캠페인과 일반 공모전 추진
- 라. 기관 연계, 외국문화향유·국제교류 사업 확대

#### 전략 및 과제

#### 전략 3 전북의 문화다양성 조사·정립 및 육성

- 가. 문화다양성 확장 위한 소수문화 역량강화, 네트워크
- 나. 지역 고유의 문화다양성 조사와 DB 구축
- 다. 전시 콘텐츠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라. 문화다양성 리빙랩: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가치 확산

#### 가. 소수문화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및 체계 마련

지역차원의 소수문화 권리보장 제도 마련 조례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

#### 중기과제

### 나. 문화다양성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전라북도 문화다양성(문화권) 선언 소수문화의 일상화 및 생활화 지원

#### 다. 문화다양성 활용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문화다양성박물관 조성, 국립인류학박물관 추진 다민족·다종족 통합문화원 조성, 통합행사 개최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의 비전전략 체계도〉

#### □ 실행과제: 3대 전략 12개 세부과제

-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안)으로 3대 전략, 12개 세 부과제를 제안하며, 소요 예산은 790백만원으로 추정함
- 과제수행기간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로 계획된 과제는 7개이며, 2022년에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된 과제는 5개임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안) 종합〉

중지거라	추진전략 추진과제 -		간	예산	
수신신낙			22	백만원	기존
3대 전략	12개 세부과제			790	
	<ul> <li>가. 전담기관 지정과 문화다양성센터 운영</li> <li>재단 내 전북문화다양성센터 설립·운영</li> <li>문화다양성침해구제위원회(센터) 구성·운영</li> <li>전북문화다양성 포럼 운영</li> </ul>			200	연계
1.광역단위 문화다양성 정책 기반 마련	나. 현황·사례 중심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시와 활용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지표 설정      정책현황(행정통계) 및 도민인식(설문)조사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및 침해·차별사례 조사      주요 통계와 사례조사 주요내용의 정보제공 서비스 : 출판, e북, 동영상 등			100	
	다. 문화다양성 지침·가이드라인 제작·권고와 적용  • 전라북도·시군 공공정책, 기관운영, 홍보, 인력활용, 사업실행 시 문화다양성 적용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 활용 권고  • 전라북도 문화정책 개발과 예산 지원사업 시행시 가이드라인 실행 모니터링 추진			50	
	라. 문화다양성 조례 제·개정과 제도 마련  • 전라북도의회와 협력, 전라북도 조례 개정  •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정 요청  • 행정문서 문화다양성 체크리스트 제도화			-	
2. 접촉면 확대 통한 공존의 문화 형성	7. 문화다양성 교육교재·콘텐츠 개발과 교육 실시			100	연계

	나.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주간 지정, 페스티벌 개최			
	전러북도 문화다양성 주간 지정     전러북도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개최     전러북도 문화다양성 포럼 개최		100	연계
	다. 문화다양성 공공 캠페인과 일반 공모전 추진			
	• 전북 공공캠페인: 기존 공공 캠페인 사업 활용 • 문화다양성 영상콘텐츠 청소년·대학생 공모전		20	
	라. 기관 연계, 외국문화향유·국제교류 사업 확대			
	전북국제교류센터 연계, 국제문화교류사업 확대     대학국제교류센터 연계, 외국인대학생 국가별· 종합 페스티벌 개최 지원     외국문화원 연계, 국가별 문화행사 개최 지원		100	연계
	가. 문화다양성 확장 위한 소수문화 역량강화, 네트워크			
	• 소수문화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자조모임 지원 • 소수문화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시업 지원		20	
	나. 지역 고유의 문화다양성 조사와 DB 구축			
1.전북의 문화다양성	<ul> <li>지역(시군 및 시군연계 생활권)별 문화다양성</li> <li>조사 : 언어, 생활, 사회체계 등</li> <li>정책대상별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소수문화집단 현황, 주요 활동 등) 전수 조사</li> </ul>		100	
고사·정립 및 육성	다. 전시 콘텐츠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 70	<ul> <li>문화다양성 전시콘텐츠, 체험프로그램 개발</li> <li>문화시설 연계, 전시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콘텐츠·프로그램 보급)</li> </ul>		_	연계
	라. 문화다양성 리빙랍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가치 확산			
	• 문화다양성 테마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지원 • 문화다양성 리빙랩 성과 확산		_	연계

# □ 중기과제

전략	추진과제		
소수문화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차원의 소수문화 권리보장 제도 마련		
제도 및 체계 마련	조례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		
문화다양성의 대중적 확산	전라북도 문화다양성(문화권) 선언		
을 위한 환경 조성	소수문화의 일상화 및 생활화 지원		
문화다양성 활용을 위한	전라북도 문화다양성박물관 조성과 국립인류학 박물관 추진		
거점 공간 조성	다민족·다종족 통합문화원 조성과 통합 행사 개최		

# ■ 목차 | Contents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12
Ⅱ. 문화다양성 ブ	개념 검토	19
1. 문화다양성 발	전과정과 개념	19
Ⅲ. 문화다양성정	책 현황	31
1. 정부 정책 현황	당	31
2. 전라북도 정책	현황	41
3. 정책의 한계와	· 과제 ·····	47
Ⅳ. 조사 및 의견	수렴	53
1. 사례 분석		53
2. 델파이 조사 …		72
3. 소수자 및 관계	레자 의견 수렴 ·····	83
4. 분석 종합과 /	시사점	93
V.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	97
1. 정책 방향		97
2. 비전과 목표 …		101
3. 실행 과제		104
4. 중기 과제		128
5. 추진과제 종합	·	133
참고문헌		137
		141

#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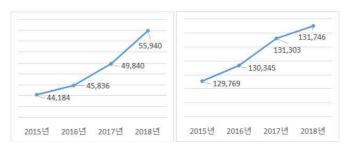
Jeonbuk Institute

# 1.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 배경

- □ 인적 구성의 다원화와 삶의 방식 다양화에 따른 사회적 다양성 증대
  - 외국인주민과 장애인 등 소수자가<sup>1)</sup>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라북도를 비롯한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인적 구성이 다원화되고 삶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면서 사회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전라북도 거주 외국인주민은 55,940명(전체 인구 대비 3.1%)으로 2015년에 비해 7.9%p가 증가하였음
    - 2018년 기준으로 전라북도 내 장애인은 131,746명으로 증가추세임



[그림 1-1]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현황(좌), 전라북도 장애인 현황(우) 자료: 행정안전부 승인통계 및 전라북도 통계 참조

성(性)정체성을 포함한 개인의 정체(正體) 표출, 정치적 의제에 따른 집단 및 계층 간 갈등, 인적 구성의 변화에 따른 욕망의 다원화가 나타나고 있

<sup>1)</sup> 이 연구에서 설정하는 문화다양성정책 대상은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 모두를 포함함. 다만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집중하고자 함. 자세한 설명은 89쪽을 참조하면 됨

- 으나, 사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달라지지 않음
-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규모는 성인인구의 2.7%로 추정되지 만,<sup>2)</sup> 한국 사회의 2001~2014년 동성애 수용도는 10점 만점에 2.8점(OECD 평균 5.1점)으로 OECD 회원국 36개국 중 4번째로 낮음<sup>3)</sup>
- 2018년 기준 한국의 성격차지수(GGI)는 0.657점으로 2017년에 비해 0.03점이 올라 갔으나 국가별 순위에서는 115위로 큰 변화가 없음(2013년 111위, 2014년 117위, 2015년 115위, 2016년 118위)4)

#### □ 다원화 증대에 따른 혐오와 배제, 폭발하는 사회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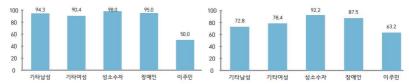
- 『혐오사회』의 저자 카롤린 엠케(2017)는 혐오를 "단순히 실수로 또는 궁지에 몰려서 자기도 모르게 분출하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의해 집단적으로 형성되고, 훈련되고, 양성된 감정"으로 정의함
- 소수자(예: 동성애자, 무슬림)는 주류집단의 어떤 표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타자화 (他者化)되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취급되지만, 소수자들이 집단화(무슬림 '들', 동성애자'들')되면 사회의 위협요인으로 인식됨
- 사회적 공모(共謀)로 만들어지는 혐오는 "동질적이면서 본원적이고 순수한 공동체"(카롤린 엠케, 2017)라는 표상을 추구하는데서 비롯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여성·동성애자·외국인노동자·무슬림 등에 대한 혐오가 폭발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전라북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남
  - 국가인권위원회(2017)의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소수 자(기타남성, 기타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 현<sup>5)</sup> 경험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한국사회도 혐오사회라 불릴 만큼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과 혐오폭력이 만연되어 있음

<sup>2)</sup>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LGBT 규모를 조사한 적이 없음. 성인인구의 2.7%는 OECD 국 가를 대상으로 조사된 국가별 평균 규모임

<sup>3)</sup> OECD(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https://www.hankyung.com)

<sup>4)</sup> 성격차지수(GGI): 경제, 정치, 교육, 건강 지표에 대한 성격차를 측정. 경제참여와 기회 (5개 지표), 교육적 성취(4개 지표), 건강과 생존(4개 지표), 정치권한(4개 지표)

<sup>5)</sup> 혐오표현이란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국가인권위원회, 2017)을 말함



[그림 1-2] 온라인에서 혐오표현 경험 [그림 1-3]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 경험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7 참조

- 2015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입주계획(안)과 2018년 전주 퀴어(Queer)문화축제 개최를 둘러싼 지역종교계의 혐오표현 등 전라북도 에서도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
- 이러한 현상은 전라북도에서도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거나 상대의 문화를 공유하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나타는 것으로, 폭발하는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입주 논쟁

- 2015년 박근혜대통령의 중동순방 이후 국가경제전략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할랄식품 수출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검토되면서 지역에서 할랄단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 대통령 발언만으로 할랄식품단지를 졸속으로 지정하려 했다는 것이 반대여론을 형 성하게 만들었지만, 제기된 반대여론에는 상당부분이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이 담겨 있었음
- 언론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할랄식품을 위한 도축장이 들 어서고 무슬림들이 무차별 유입돼 무슬림거주지가 형성되어 이슬람국가(IS)의 동북 아 테러기지가 될 것이라는 유언비어까지 등장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월 21일 '할랄식품정책 관련 오해에 대한 설명'이라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할랄식품기업의 입주 수요(조사기업 108개 중 입주의향업체 3개소)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 상황에서 당장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별 도 할랄식품 구역을 지정할 계획은 없음"이라고 발표함





[그림 1-4] 할랄식품단지 입주논쟁 당시 TV보도 화면과 반대 집회 모습

자료: 장세길(2018), "혐오사회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과제"

#### 전주퀴어문화축제 논쟁

- 2018년 3월 12일 전주퀴어(Queer)문화축제조직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4월 7일 전주에서 성소수자 축제인 전주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퀴어문화축제 계획이 발표되면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형성되었고, 전주 시기독교연합회는 4월 1일 부활절에 연합예배에 이어 전주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거리행진을 가짐



퀴어축제 반대하는 거리 행진에 등장한 동성애 반대 피켓 (전북중앙신 문 (2018.4.8)에서 인 용)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풍남문은 전주에서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다.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까 무섭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한시민은 "교육의 도시, 양반의 도시라는 전주에서 이런 축제가 열린다니 갈수록말세다. 반대 집회에 꼭 참여하겠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부모는 "이런 문화가 한국 사회에 퍼지게 된다면 제대로 된 성정체성 교육을 가정에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시기독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동성애 등 차별금지법이 한국사회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신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동성애는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이 만나 실아가라고 한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다. 기독교 십계명으로도 금지된 일이기에 전주에서 열리는 퀴어축제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퀴어문화축제 관련 언론보도 내용)6)

자료: 장세길(2018), "혐오사회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과제"

#### □ 국가 비전 2045 : 배제가 아닌 공존의 포용국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종족(민족)·인종·종교·계급·성·신분·성 등에 따른 특정 집단이 사회의 주류에서 차별받고 배제되는 현상을 말하며, 배제된 집단이 누려야할 삶의 기회의 제약이 초래됨

<sup>6)</sup> http://www.missiontoday.co.kr/archives/6398(2018.9.10 검색)에서 재인용

<sup>7)</sup> 장세길(2018), "혐오사회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과제"(전북 연구원 이슈브리핑)의 주요 내용을 전재

- 포용은 배제되어 있는 소수자(집단)가 주류사회로 통합되는 것과 배제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삶의 기회를 보장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다양한 기회로의 접근 보장과 실질적 참여, 혜택의 향유 등을 말함
-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부처별로 혁 신적 포용국가라는 국가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함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포용국가를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 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로 정의함

[표 1-1]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

사회통합 강화	<ul> <li>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li> <li>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li> <li>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li> </ul>	4量
사회적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20172
지속가능성	• 사회서비스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확보	•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2018. 9. 6.
사회혁신 능력 배양	•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PATRICIA DE LA CONTRACTOR DEL CONTRACTOR DE LA CONTRACTOR DE LA CONTRACTOR DE LA CONTRACTOR
	•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CHEONG WA DAE

 포용도시, 포용사회, 포용국가는 사회적 배제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본원리로 '포용성'을 내세우는데, 포용성은 '다름'을 통해 서로의 존재 와 문화를 인식하고 공유하며 공존하는 즉,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적용될 때 실현될 수 있음

#### □ 유네스코협약 체결과 법·조례 제정, 문화다양성 정책 의무화

- 우리나라가 2010년에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맺고,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문화다양성 정책이 국가책무이자 실천과제로 등장함
  - 2010년 유네스코협약의 비준과 발효에 따라 관련 정책(예, 무지개다리사업)이 2012년 부터 추진되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법률 제정 이후라고 할 수 있음

- 2015년부터 법에 명시된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문화다양성 정책평가 및 분석, 201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연구학교 선정 및 직무연수 사업 등이 추진됨
-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며, 문화도시 선정 및 도시재생 사업 등에 문화다양성 측면의 시각과 내용이 적용되어 확장되고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을 중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6년 전라남도 에서 조례제정을 시작, 2019년 기준 전국 14개의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 전라북도에서는 2019년에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문화다양성이 주요 정책분야로 등장함
  - 법률에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책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도 조례에는 2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명시함

[표 1-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내용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표 1-3]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실행계획 수립 내용

#### 제4조(실행계획 수립)

-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다양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문화적 차별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 방향
-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추진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안
-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 4.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 5.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문화다양성 정책

- 사회갈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문제와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 를 실현하는 전략으로서 문화다양성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실제 정책 현장의 실행사업들은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함
- 첫째, 우리나라가 문화다양성협약 위원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졌으며, 정책
   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다양성 정책 국가예산은
   갈수록 줄어들어 2019년 기준으로 25억여원에 불과함
  - 전라북도의 경우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직접 예산은 2019년 무지개다리 사업에 선정 (익산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되어 지원 받은 145백만원이 전부임

[표 1-4]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 (2019년 기준)

사업명	주요사업	예산(백만원)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ul> <li>다양한 문화적 표현 및 문화 간 교류 및 소통 확대 프로그램(무지개다리 사업) 운영</li> <li>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운영</li> </ul>	2,513
문화다양성 교육	<ul><li>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운영 : 40백만원(4개교)</li><li>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120백만</li></ul>	160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		153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ul><li>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운영</li><li>캠페인 홍보</li></ul>	122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개발	<ul><li>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li><li>문화다양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li></ul>	31

자료: 정보람(2019),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보고서

- 둘째, 법률과 조례에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계획 을 수립하지 않고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셋째, 정부와 지자체별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특히 정부가 생각하는 문화다양성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채 '부처 칸막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다양성정 책이 (문화)예술표현(창작)과 (문화)예술향유의 다양화로 귀결됨

- 정부나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사회를 보는 기본원리이자 포용국가를 위한 가치 로서 이해되지 못하고,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단순 지원정책 또는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만 이해되고 있음
- 넷째, 실제 생활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자체에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다문화정책과 문화예술정책을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사업발굴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사업의 전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정책 연차보고서에는 지역별 정책 및 사업이 다양하게 제 시되어 있으나, 실제 지자체의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은 문화다양성과 무관하게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들이며,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조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음

[표 1-5] 문화다양성정책 연차보고서의 전라북도 정책 및 사업 현황

부서		주요사업			
문화체육 관광국	문화 유산과	<ul> <li>종교문화 기반시설 확충</li> <li>산사에서의 깨달음과 행복여행, 템플스테이 운영 : 8개 사찰</li> <li>상생의 보편가치 전파 종교문화 지원: 세계종교문화축제(10월중)</li> </ul>			
	문화 예술과	<ul> <li>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도민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li> <li>소외계층 문화향유기회: 문화이용권, 도립국악원 찾아가는 예술단</li> <li>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도 단위 동호회 페스티벌 개최</li> </ul>			
	국제 협력과	<ul> <li>다문화마을학당 운영 등 맞춤형 한국어교육 강화</li> <li>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li> <li>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다문화어울림 문화교육등</li> </ul>			
대외 협력국	국제 교류 센터	<ul> <li>국제교류 유관기관과 교류협력사업 확대</li> <li>도민 국제화 마인드 제고 사업 추진: 국제정세(정치·경제·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도민 국제교류 이해강좌, 청소년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 추진, 도내 거주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전북 등)</li> <li>민간국제교류 활성화: 민간주도 풀뿌리 교류 활성화를 위한세계 마을간 교류사업 연계지원, 우수 민간국제교류사업 발굴 및 지원</li> <li>도내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 지원</li> <li>외국인 생활기반 지원</li> </ul>			

자료: 장세길(2018), "혐오사회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과제"

#### 나. 연구 목적

#### □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정책의 방향 설정

- '문화다양성'은 인적 구성이 다원화되고 삶의 방식이 다양화되는 현대 사회의 운영원리이자 폭발하는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임
-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사업대부분이 예술·전통문화정책에 국한되어 있어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사회전반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예술·전통문화정책으로 축소되어 있는 문화다
   양성정책의 문제가 이론적 개념과 정책적 개념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는 전제 아래, 포용사회를 위한 문화다양성정책의 방향을 살펴봄
- 유네스코에서 설정한 문화다양성의 개념, 그리고 정부가 협약을 비준할 당시에 설정한 개념은 당시에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 전라 북도가 추진하려는 문화다양성의 환경과 다른 바, 이 연구는 전라북도에 필요한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 조례에 의한 실행계획 수립의 기초정보 제공

- 전라북도조례에는 2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어 의무적으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나, 전라북도 역시 문화다양성이 중요해지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다양성정책을 위한 실행계획이 필요함
- 이 연구는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정책의 비전과 목표, 주요방향, 전략, 추진체계 등을 설계하여 전라북도가 조례에 의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음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가. 연구 범위

#### □ 문화다양성 발전과정과 개념

- 문화다양성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가 처음 등장한 세계인 권선언 이후, 문화다양성이 등장하게 된 국제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맥락 을 검토하여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문화다양성 개념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봄
- 개념의 변화 과정은 첫째, 문화다양성의 이념적 토대인 문화적 권리(문화 권)의 주체 및 내용, 둘째, 문화다양성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으로의 변화, 셋째,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실제 정책에 적용되는 문화의 개념 및 내용의 변화를 살펴봄

#### □ 문화다양성 정책현황과 실태

- 유네스코협약 이후 우리나라에서 문화다양성정책이 어떤 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어떤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봄
-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정책의 변화과정은 크게 유네스코협약부터 비준 이전 (2005~2009)까지, 협약비준과 문화다양성법 제정 이전(2010~2013)까지, 끝으로 법 제정 이후(2014)부터 현재까지를 구분하여 분석하되, 변화과정별 주요특징을 살펴보면서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함

#### □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정책 방안

○ 전문가 자문 및 조사, 선행연구 검토, 정책 분석 등을 종합하여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과 목표, 전략과 과제를 제안함

#### 나. 연구 방법

#### □ 문헌연구와 자료조사

- 문화다양성의 발전과정과 개념을 살펴보기 위하여 첫째,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이 도출되기까지 문화다양성 개념의 발전과정을 다룬 정책·연구보고서 등을 참조하고, 둘째, 이론적 개념과 정책적 개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무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논문을 살펴봄
- 현재 문화다양성정책의 현황과 한계,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협약 당시국 제출 국가보고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함

#### □ 자문회의와 설문조사

-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정책의 방향 및 주요과제를 설정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다양성 전문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1단계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방향과 의제를 설정하고, 2단계 전문가 집단 델파이조사 (delphi survey)를 통해 자문회의에서 설정된 주요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개방형 설문지로 의견을 수렴하고,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내용을 범주화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함

#### □ 사례조사

- 전문가 및 관계자의 자문과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정책방향과 의제별 주
   요과제 등과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검토함
- 사례조사는 관련 정책·연구보고서 등을 1차적으로 참조하여 주요 사례를 검토한 뒤 시사점을 도출하고, 2차적으로 전라북도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전라북도 적용방향을 제안함

## 다. 연구 추진 경과

[표 1-6] 주요 연구 추진 경과

구분	일시/장소	진행내용
전문가 자문회의	20.03.17 전북연구원	<ul> <li>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방안 도출 및 추진과제 협의를 위한 자문회의 실시</li> <li>문화다양성 개념 정의와 인식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사업 제안</li> <li>인식개선 사업, 학교 및 사회교육사업 연계 필요</li> </ul>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20.04.07~05	<ul> <li>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의제 설정 및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li> <li>1단계 조사에서는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 적절성 평가와 분류체계별 정책 소외도 및 시급도 판단을 통한 우선순위 도출</li> <li>2단계에서는 세부 사업 추진 방향 및 집단별 필요 정책 의견 수렴</li> </ul>
전문가 토론회 (해외사례)	20.04.24 전북연구원	문화다양성 관련 시민교육 방향 검토 및 전라북도 문 화다양성 정책과제 적용 시사점 관련 상호토론
1차 심층인터뷰 실시	20.05.04~08	<ul> <li>전라북도 내 소수집단 사례조사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지역 활동가 대상 심층인터뷰 실시</li> <li>대상자 선정의 경우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지역 내 소외도가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관련 집단을 파악하여 진행</li> <li>활동내용, 차별의 경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추진사업 제안 의견 수렴</li> </ul>
전문가 자문회의	20.05.09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조례 내 문화다양성 개념 검토 필요성 제안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및 담론 형성을 위한 교육 사업 검토 필요성 제안
3차 심층인터뷰 실시	20.05.20	<ul> <li>문화다양성 관련 전라북도 학교 교육 사례 분석을 위한 교육 전문가 심층인터뷰 실시</li> <li>교과과정에 제시된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내용 검토 및 교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시업 현황 검토</li> </ul>
전문가 토론회 (전라북도 홍보 방안)	20.05.19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미디어 활용 홍보 방안 관련 상호토론 실시
도 담당부서 실무협의	20.05.26	• 제안된 비전과 목표와 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라 북도 담당부서 담당팀장과 주무관과 실무 협의 진행



[그림 1-5] 전문가 자문회의(20.03.17)



[그림 1-6] 전문가 토론회(20.04.24)



[그림 1-7] 심층인터뷰 실시



[그림 1-8] 심층인터뷰 실시



[그림 1-9] 심층인터뷰 실시



[그림 1-10] 전문가 토론회(20.05.19)

# 문화다양성 개념 검토

1. 문화다양성 발전과정과 개념

# 11. 문화다양성 개념 검토

## 1. 문화다양성 발전과정과 개념

#### 가. 문화적 권리의 개념 변화8)

□ 문화적 권리의 등장 : 참여권 중심의 개인적 권리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자유를 성찰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세계인권선언(1948) 이후에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이 중요해지면서 문화적 권리가 국제사회에 등장함
-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이 성별과 피부색, 신념, 종교적 차이와 관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면서, 구 체적으로 개인이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와 더불어 '개인의 문화적 권리 보호'가 포함됨
  - 세계인권선언에는 문화의 향유와 표현이 특정 계층과 문화예술 생산자들이 한정되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문화적 권리의 보 장이 인권보호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내용이 포함됨
  -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 시기에 제시된 문화적 권리는 보편적인 정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내용적으로도 휴가여가의 권리, 문화와 여가활동의 참여 보장 등 개인적 차원에서 참여권이 논의됨

<sup>8)</sup> 김남국, 2010, 이동연, 2019, 노연순, 2019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 세계인권선언은 "예외적인 권리의 보장을 통해 인권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보편적 권리의 제시를 통해 인권을 향상시키는 자유주의적 접근"을 택하 였고, 특히 문화상대주의 입장에 의해 문화적 권리가 거부되거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보편적 인권이 불러올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은 채 문화적 권리를 "문화적 소수나 원주민의 공동체적 권리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권리로 규정"하는 높은 추상 수준의 정의를 제시함(김남국, 2010: 270~271)
  - "세계인권선언(제27조)에서는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는 개인이 지배적인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가 국가정책으로 나타나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언어·인종적 소수에 속하는 개인이 지배적인 문화체계 아래서 정체 성을 찾지 못할 때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음"(ibid.: 271)

#### □ 권리주체와 권리내용의 변화 : 개인에서 소수집단·국민국가로 확대

- 1966년에 체결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은 민족자결권을 강조하면 서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ICESCR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처럼 개인적 차원의 문화적 권리를 담고 있는 반면, ICCPR은 최초로 집단의 문화적 권리, 즉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제27조)는 내용을 포함시켜 개인을 넘어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규정함
- ICCPR의 문화적 권리 내용을 이어받은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선언'(1992)은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해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며, 사적·공적 장소에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제2조)고 규정함

- 2001년에 채택된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제5조에는 문화적 권리를 정의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언어로 자신의 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있는 권리"로 정의됨
- 2005년에 체결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에서는 문화다양성과 인권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이전의 개인 및 소수집단의 문 화적 권리를 명시하던 것과 달리 협약 체결 당시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 아 문화적 권리의 경제적 측면과 국민국가의 주권적 권리가 강조됨
- 이와 같이 문화적 권리는 개인적 차원의 문화적 향유권에서 출발하여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로, 나아가 문화적 권리의 경제적 측면과 국민국가의 주권적 권리로 대상이 확대되어왔음
- 권리내용 측면에서도 초기(세계인권선언 이후)에는 개인의 휴가·여가의 권리, 문화와 여가활동의 참여보장 중심으로 전개(노영순, 2019: 26~27) 되다가 ICESCR와 ICCPR(1976) 이후에 제3세계 국가의 언어와 문화유 산, 소수민족문화의 보호를 목적으로 논의가 이뤄졌고(이동연, 2019), 문 화다양성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문화다양성선언(2001) 이후에는 문화권 권리가 인간·국가(사회)발전 개념, 즉 경제적 측면이 강조됨
  - "개인차원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적 진보를 향유할 권리, 자신이 저자인 과학, 문학, 예술 활동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물질적 이해의 보호를 얻을 권리 등으로 정의되던 문화적 권리는 소수집단 및 원주민이 공적, 사적 생활에서 고유언어를 사용할 권리, 학교를 세우고 고유언어를 가르칠 권리, 토지와 자원의 전통적 사용과 관련된 특별한 경제 활동을 계속할 권리 등 집단적 문화 권리에 한 강조로 바뀌고 있다."(ibid.: 277)
- 문화적 권리는 여러 논의 과정을 거치며 국민국가 간 정치투쟁 결과로서 개인에서 집단, 국민국가로 권리주체가 확장되는 변화를 겪었으나, 최근 에는 국민국가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소수집단이 등장하고 그들에 대한

정당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뤄지면서 보편적 권리로서 문화적 권리가 인정받고 있음

또한 개인적, 집단적, 국가적 차원의 권리주체와 개인의 참여권 보장, 소수집단의 문화 보호, 경제적 측면의 권리내용에 대한 "해석과 실천은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친 정치투쟁의 결과"(김남국, 2010: 280)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권리주체와 권리내용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함

#### 나. 문화다양성의 개념 변화9)

#### □ 문화다양성과 발전

- 세계문화발전위원회가 채택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보고서(1995년)에서
   서는 과거 문화의 보존에 집착하기보다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증진시키는
   것이 국가와 지역, 인류사회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이 강조됨
  - 이 보고서에서는 생물의 다양성과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됨
-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을 통하여 제기된 '문화다양성과 발전'의제는 '발 전을 위한 문화정책 정부간회의'등을 거치면서 내용이 보다 강화되었고,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강제력을 갖는 국제법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불러 옴

#### □ 문화다양성과 문화산업(상품)

- 유네스코가 1999년에 조직한 심포지엄(문화: 특별한 형태의 상품인가?)에서 문화 상품 문제가 제기되었고, 문화상품의 정의, 전지구화와 문화다양성 증진 문제, 문화 비경제성과 예외규정 등이 제시됨
- 즉 이 심포지엄을 계기로 신자유주의에 따른 문화주권의 수호, 국제무역

<sup>9)</sup> 한건수, 2015173~181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 질서에서의 문화의 예외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임

#### □ 문화다양성의 본격적 논의: 세계문화다양성선언

- 세계문화다양성선언(2001)은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공통유산이며 개별 국가의 총체적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라는 것을 천명하였고, 특히 문화적 권리를 인권의 기본요소로 규정하면서 문화상품은 다른 상품들과 동일하게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화상품 예외규정을 명시함
  - 선언에서는 인권과 불가분한 관계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5조 '문화다양성을 위한 환경으로써의 문화적 권리'를 살펴보면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에 명시된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포함하며 자유로운 문화 표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정체성의 척도로 문화를 이해하고 단순히 상품적 가치로만 인식되는 것을 경계함
  - 선언문의 예비 초안에서는 문화와 함께 문화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며 제시되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일반적 가치로 표현되는 수준에서의 문화정체성을 정리하며 구체적인 권리로서 문화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체성의 개념을 명시할 경우 단어가 갖는 포괄성의 범위가 국민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함
- 문화다양성선언 이후 문화다양성협약의 기초로 4가지 방안이 고려되었는 데 "첫째, 문화적 권리에 관한 새로운 포괄적 규약, 둘째, 예술가 지위에 관한 규약, 셋째, 교육·과학·문화자료에 관한 플로렌스 협정의 새로운 의 정서, 넷째, 문화상품과 예술표현의 다양성 보호에 관한 새로운 규약"임

#### □ 문화다양성협약: '문화다양성'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으로

- 2005년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은 지금까지도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실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문화다양성과 발전, 문화다양성과 문화상품의 내용이 핵심을 이름
  -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하며, 이러한 표현들 은 집단과 사회의 내부에서 그리고 집단과 사회 사이에서 전승된다고 보는데 협약 내

문화다양성의 보호가 상징하는 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보호와 증진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음, 둘째, 인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문화다양성을 중요성 인지, 셋째, 시대 및 국가 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장과 문화적상호작용의 필요성 강조, 넷째, 문화활동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은 중시하되 지나치게 상업적 가치로만 취급되는 것을 경계, 다섯째, 문화의 다양성은 집단과 개인의 정체성과문화적 표현의 다원성에서 구현되며 문화적 표현의 고유함과 다양성 그 자체도 인류의중요한 특성임을 인지함
- 문화다양성 표현의 증진을 위해 당사국은 '1) 소외계층의 문화적 권리, 2) 국가 간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의 접근, 3) 창작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하며 광범위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
- 문화다양성협약은 2001년에 발표된 문화다양성선언과 차이를 보이는데, 첫째, 문화다양성과 인권보다 문화상품성과 표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문화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채택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국민(민족)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강조함
- 문화의 경제적 측면과 국민국가의 주권적 권리가 강조된 이유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에서 문화를 경제논리에 적용하는 미국과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 하는 서유럽 및 개발도상국 간 갈등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채택되 었기 때문임
  -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발전된 방어적 도구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문화적 통합된 유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미국과의 국제통상적 마찰 과정에서 유럽의 문화 및 문화산업의 보호를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문화적 예외 개념이다."(김용섭, 2017: 192,198)
- 문화다양성협약에는 국민국가의 주권적 권리뿐 아니라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소수집단과 원주민의 문화적 권리 역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당시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미국 중심의 문화적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민국가의 문화주권 수호가 강조된 나머지 소수집단의 문화다양성의 보

호와 증진에 대한 관심 대신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이슈가 주목받음

-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다양성선언을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표현 즉 문화산업 혹은 문화상품이라는 구체적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의 사례를 국한"(한건수, 2015: 182)시켰으며, "문화다양성협약을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고 개별 국가가 문화정책 수립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했"는데, 즉 "문화다양성협약이 무역 문제의 틀에 구속되는 바람에 문화다양성의 구현과 실천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문제의식과 전망이 약화된 것이다."(Obulgen, 2006: 20; 한건수, 2015: 182에서 재인용)
- 이와 같이 유네스코 중심의 문화다양성협약은 그 출발이 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층위에서 요구하거나 활성화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제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들의 문화들을 옹호하는 '문화적 권리 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 권리로서 문화의 개념 변화

#### □ 예술·문학에서 포괄적 문화로

-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 권리로서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중요
   한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초기 등장한 문화적 권리에서는 문학·예술 중심
   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와 물질문화 중심의 보호가 주요 권리로 등장함
  - 당시 문화적 권리는 다른 기본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후순위로 인식되며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문화적 권리의 바탕이 되는 문화의 개념이 정밀하게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짐
  - 특권층의 전유물로서 이해되었던 문화의 향유가 전시 상황들을 지나오면서 각국의 중 요한 문화유산에 대해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이슈: 검토 및 전략, 1946~2007' 보고서가 분류한 문화다양성 개념의 발전 단계를 보면 세계인권선언 이후 문화다양성에서의 문화개념이 변화하게 됨

○ 문화다양성의 발전단계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문화의 개념은 예술작품 과 그 생산과정으로 이해되었으나 점차 포괄적 문화개념으로 확장되었고,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선언에서는 인간의 생활양식과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질들의 복합체로서 문화가 이해되고 있음

단계	주요 내용
문화와 지식의 단계	문화를 국민국가 단위로 이해. 문화의 차이는 국가 단위 문화
(1950년대 이전)	의 차이로 인지. 문화는 예술작품과 그 생산과정으로 이해
문화와 정치의 단계	문화는 국가별 정체성의 상징으로 표현. 국가별 독립성과 고
(1950~1966)	유성을 나나태기 위한 문화정체성의 강조
문화와 발전의 단계	내생적 발전 개념과 연계되면서 새로운 의미 부여. 예술 중심
(1966~1998)	의 개념에서 포괄적 문화 개념(생활양식, 가치관 등)으로 전환
문화와 민주주의 단계 (1980~2000)	국가 간 뿐 아니라 국가 내으 문화적 관계에 관심. 이민자 공 동체의 차별과 배제에 대한 문제제기, 원주민의 권리에 대해 이론적 실천적 논의의 필요성,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개인과 집 단이 상호 공존에 대한 의제 등 제기
문화와 전지구화 단계	문화다양성이 지속가능발전, 안보, 평화, 사회통합에 대한 공
(2000~2007)	헌과 연계되어 논의되기 시작. 문화 간 대화의 중요성 강조

자료: 한건수, 2015: 167~170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 □ 문화적 표현 : 예술과 문학으로 한정하여 문화를 이해

- 문화다양성협약 전문에서도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양식을 가지며, 그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 현의 독특성과 다원성에서 구현된다는 점"이 강조됨
- 하지만 문화다양성협약에 문화적 표현을 통한 문화 창작물의 시장 예외성이 강조됨으로써 문화를 예술(대중문화)과 문학에 한정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실제 스크린쿼터가 문화다양성의 대표 이슈로 부상되면서이런 경향이 더 견고해짐
- 문화다양성의 문화 개념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국가 간의 다양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임

- 앞에서 설명했듯이 문화다양성협약은 소수집단 및 원주민의 문화를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문화산업의 위협에서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려는 유럽국가들의 대항논리로서 문화다양성의 경제적 측면과 국민국가의 주권적 권리가 강조되면서 협약 전문의 내용과달리 실제 협약의 실천과정에서는 특정 사회 내부의 다양성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 종합하면, 문화적 권리 및 문화다양성에서의 문화의 개념은 초기 예술과 문학의 결과물과 생산과정에서 극히 제한적인 개념에서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생활양식 전반에 대한 이해와 창조적 활동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가 문화주권의 수호가 강조된 다양성협약에 이르러 다시 예술(대중문화 포함) 중심 문화의 생산, 매개, 수용에 따른 결과물로 축소되었음
-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문화다양성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그대로 반영됨

# 문화다양성정책 현황

- 1. 정부 정책 현황
- 2. 전라북도 정책 현황
- 3. 정책의 한계와 과제

# Ⅲ. 문화다양성정책 현황

## 1. 정부 정책 현황

#### 가. 문화다양성정책 변화 과정10)

□ 제1단계(2005-2009년) : 문화주권 수호와 스크린쿼터제

- 2005년 전후의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과정에서 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의 영화계 및 시민단체가 문화산업은 국제 무역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면서 문화다양성 논의가 본격화됨
  -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를 경제논리에 적용시켜 세계화를 하려는 미국에 대항하여 문화의 특수성을 지키려는 유럽 및 개발도상국의 문화주권 지키기의 산물임<sup>11)</sup>
-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 흐름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주권과 관련된 문화다양성 논의가 힘을 얻지 못하였으며, 결 국 스크린쿼터가 축소(146일→73일)된 채 문화산업의 국가 간 갈등이 국 내 갈등으로 불거지면서 문화다양성 논의가 이어지지 못함
- 이와 같이 한국에서 도입된 문화다양성 개념은 문화산업이라는 한정적인
   영역에서만 관심을 가졌고, 문화계의 표준화 및 획일화에 대항하는 논리로 접근됨으로써 스크리쿼터 축소 반대 관련 정책만 두드러짐

<sup>10)</sup> 김면(2017,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보고서, 73~81쪽)의 단계구분을 참조하되, 주요 내용은 연구진이 재작성함

<sup>11) &</sup>quot;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가 자유주의 시장개방의 주요 대상으로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WTO 출범 이후 각국의 문화주권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며, "스크린쿼터제도 사수운동은 미국의 일방적인 문화개방 논리에 맞춰 자국의 문화주권을 지키려는 … 반세계화 문화운동"(이동연, 2006: 9).

#### □ 제2단계(2010-2013년) : 협약 비준과 다문화정책으로서 문화다양성

- 외국인주민(노동이주, 결혼이주)이 급증하면서 외국인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다문화정책이 도입되었으나, 당시 정책은 내국인과의 조화(한국사회로의 동화 또는 통합)을 위한 이주민의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는데 집중하여 내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하지 못함
  - 이 시기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등이 제정되는 등 다문화정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음
- "자국민 중심으로 특정 대상과 분야별 지원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의식을 개선하는 다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김면, 2017: 75)되었고, 특히 2010년에 문화다양 성협약 비준과<sup>12)</sup> 함께 문화다양성 측면의 정책이 필요해짐
  -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과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비교해보면 다문화 정책에 문화다양성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1]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교

구분	제1차 기본계획 2010~2012	제2차 기본계획 2013~2017
목표	<ul> <li>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li> <li>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육성</li> </ul>	<ul> <li>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li> <li>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li> </ul>
추진 과제	<ul> <li>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li> <li>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검증시스템 강화</li> <li>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li> <li>다문화가족 자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li> <li>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li> </ul>	• <u>다양한 문화가 있는</u> 다문화가족 구현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정책추진체계 정비

자료 :김면, 2017: 76

<sup>12)</sup> 한국은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되면서 협약 당사국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의 이행과 함께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함. 국가보고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연차보고서를 발행 중에 있으며 보고서 내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현황 및 평가결과,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등이 포함됨

-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담론이 정책적, 사회적 쟁점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축소되었고, 문화다양성은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정착에서 공존으로 바꾸고 다양한 계 층(특히 외국인주민)의 문화(향유)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침13)
  - 다문화담론이 문화, 인권, 복지, 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었지만, 다문화정 책으로는 문화다양성 선언과 협약이 강조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나타나 면서 문화다양성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됨

#### □ 제3단계(2014년-현재): 문화다양성의 '독립'과 문화예술정책으로 '귀환'

- 다문화정책의 새로운 적용방향(또는 철학적 개념)에 불과했던 문화다양성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이행을 위해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면서부터임
  - 한국은 중국·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그룹 유네스코위원국(2017~2021년)으로 선출되면서 국제사회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선도적 역할이 필요해졌고, 국내 에서의 문화다양성정책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됨
- 법률 제정 이후에 이주민을 지원하는 다문화정책에 국한되었던 문화다양성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전환되었고, 특히 '문화적 권리'를 강조하면서 누구나 문화(예술)를 향유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확대되었으며, 정책대상 또한 외국인주민에서 탈북자, 장애인 및 노인, 청소년 등 사회 내에서 차별받을 수 있는 소수자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삼음
  - 2015년부터 매년 5월에 '문화다양성 주간'을 실시하여 국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 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주민 대상으로 진행되던 무지개다리사업을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하여 문화예술교류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이 시기에 들어 문화다양성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독립'하였으며, 정

<sup>13)</sup> 이 시기에 문화다양성을 적용한 (다문화)정책은 "문화다양성의 보존 또는 증진보다는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한편, 이들이 우리 사회에 쉽게 적용해 살아가 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을 하고 있다"(라도삼. 2018: 14).

책대상이 사회 내 모든 소수집단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큰 전환점을 맞았다고 할 수 있으나, 문화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 지고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정책방향, 정책대상, 세부사업에서 한계를 드러냄

- 문화다양성법에 따르면 문화다양성정책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런데 문화정책에서 일반적으로 '문화적 삶의 질'이란 '예술 중심의 문화향유(활동: 관람-교육-창작) 증진'과 관련되어 있으며, 법률에 따르면 문화다양성의 최종적인 내용은 '표현'인데 예술적 창작·생산·보급·유통·향유가 강조됨으로써 결국 문화다양성은 '예술적 표현'과 관련되어지고, 문화 창조 역시 예술을 통한 창조로 귀결됨14)
- 또한 문화다양성협약의 배경인 '문화주권 수호'와 관련된 문화산업(문화상품) 측면에서의 문화(예술문화) 개념을 도입(예술적 창작·생산·보급·유통의 다양성)한 반면,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의 대상을 '개인'으로 설정함으로써 '문화주권 수호'의 대상인 '국민국가'가 배제되어 있음
  - 전통문화 및 방언 보존·계승 사업 등이 '국민국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으나, 문화다 양성협약의 배경이 되었던 '문화주권 수호'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없음

#### [표 3-2] 「문화다양성법」개요

- 정책목표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행을 통한 **개인** 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
- 기본원칙 :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정책영역 :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기반(지원 사업, 인력, 시설) 지원과 국제 협력 및 조사·연구 활동이 포함됨

<sup>14)</sup> 문화다양성협약이 '예술적 표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문화다양성정책이 수립되고 실천되는 과정을 보면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뜻하며, 한편으로 문화다양성협약 자체가 이러한 제한적 정책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종합하면, 현재 문화다양성정책은 다문화정책에 철학적 가치를 제공하며 이주민 대상의 지원 정책에 국한되던 역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책영역
   으로 '독립'하게 되었음
- 하지만 문화다양성협약을 준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영역이 강조되면서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뿐 아니라(문화복지) △ 국민 모두의 문화(예술)적 삶의 질을 높이고(생활문화) △ 예술의 다양한 표현과 창작을 통하여(예술지원) △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문화산업) 데 지원하는 이른바 '예술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축소됨
- 이주민(결혼이주, 노동이주)만을 대상으로 삼고 한국사회로의 통합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문화정책으로서 문화다양성이 비판받았으나, 다문화정책에서는 (예술이 아닌) 소수자집단의 문화(삶)를 대상으로 삼은 것에 비해 '독립한' 문화다양성정책은 정책대상자(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만 확대되었을 뿐 오히려 문화다양성의 본원적 가치가축소된 채 예술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귀환'됨

[표 3-3] 한국 문화다양성정책의 단계별 변화 과정

정책 단계	주요 특징
2005년-2009년	문화주권 수호와 스크린쿼터제
	한국에 도입된 문화다양성은 문화산업이라는 한정적인 영역에서 만 관심을 가졌고, 문화계의 표준화 및 획일화에 대항 논리로 접 근됨으로써 스크린쿼터제 반대 외에 정책이 구상되지 않았음
	협약 비준과 다문화정책으로서 문화다양성
2010년-2013년	다문화 담론이 정책적, 사회적 쟁점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축소되었고, 문화다양성은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정착에서 공존으로 바꾸고 다양한 계층(특히 외국인주민)의 문화(향유)활동을 지원하는데 역할에 그침
	문화다양성의 '독립'과 문화예술정책으로 '귀환'
2014년-현재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삼고 통합(동화)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문화정책으로서 문화다양성이 비판받았으나, 다문화정책에서는 (예술이 아닌) 소수자집단의 문화(삶)를 대상으로 삼은 것에 비해 '독립한' 문화다양성정책은 정책대상자(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만 확대되었을 뿐 오히려 문화다양성의본원적 가치가 축소된 채 예술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축소됨

#### 나. 주요 사업 현황

- □ 문화다양성기본계획(안)15)
  -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의 정책비전은 '차이가 인정되고 다름이 존중받는 상생적 문화국가 실현'으로 설정하였고, 국민들의 정책적 공감대와 수용도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둠

정책비전 차이가 인정되고 다름이 존중받는 상생적 문화국가 실현

정책목표

-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 ㆍ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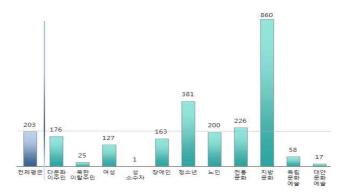
	4대 추진전략		12개 정책과제
	1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1) 문화다양성 홍보 강화
			2)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3) 문화다양성 정보접근성 제고
		소수자문화의 영향력 중대	4) 소수계층의 문화권 보장
추진전략	2		5) 소수계층의 사회문화 활동여건 개선
및			6) 다수자와 소수자 간 교류 확대
정책과제	3 정책 추진여: 조성	정책 추진여건 조선	7)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8) 분야별 전문인력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8	9) 문화다양성 정책 예산 확보
	4 평가체계 및 4 거버넌스 구축		10) 문화다양성 평가 실시
		11) 문화다양성 분야 R&D 확대	
	//		12) 국가 간 교류·협력 체계 구축

[그림 3-1]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추진계획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문화다양성 보포 및 증진 기본계획」 참조

- 첫 번째 추진전략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임
  - 소수자에 대한 국민적 포용이 낮은 수준이며 문화다양성의 예산이 다문화정책사업 중 심으로 투입됨에 따라 국민의 인식 변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 선하기 위한 것을 첫 번째 전략으로 수립함
- 두 번째 전략은 소수자문화의 영향력 증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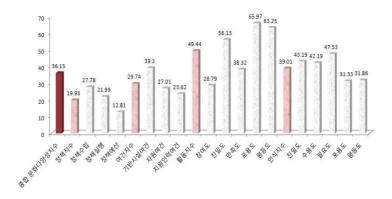
<sup>15)</sup> 법률에 의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를 참조함

- 소수자들이 겪는 참여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도 모하고 다양한 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켜 사회적 갈등과 차 별적인 환경을 개선하여 집단 내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핵심임
- 세 번째 전략은 정책추진여건 조성임
- 부처 간 문화다양성정책의 중복성을 피하고 효율적 예산집행를 위한 협력 증진과 총괄 관리의 제도적 장치 마련, 정책의 실행과 관리를 담당할 지원인력의 확보, 해당인력에 대한 확충과 지원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 제안됨



[그림 3-2]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인력 수 (단위 : 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134p

- 네 번째 전략은 평가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설정임
  - 문화다양성정책의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의 체계적 평가와 지속적 연구를 제안함



[그림 3-3] 중분류 지표별 문화다양성지수 비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180p

#### □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와 협약 당사국 제출 국가보고서

-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에 제시된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정책의 체계는 기본 계획(안)의 추진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추진된 문화다양성정책사 업은 정부부처가 250개 사업에 461,953.3백만원을 투입하였고, 지자체 는 2.812개 사업에 594.402.9백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남

번호	유형	예시
1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사업	문화다양성 가치확산 캠페인,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홍보체계 구축, 토론회 등
2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기회확대 및 소수문화 기본권 신장 사업	소수문화 활동지원*, 다양성 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대상별 맞춤형 사업 운영, 다양한 계층의 이용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지역고 유문화 사업 등
3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	문화예술 상호교류 방안 및 프로그램 운영, 문화 간 협력 네트워크 기반 마련 등
4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법적 제정과 제도적 기반마련, 정책예산 확보, 기구 설치, 전문인력 양성, 정책 협의체계 구축 등
5	문화다양성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사업	소수문화계층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정기적 평가제도 도입,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등
6	국제 문화교류 및 국외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민간차원의 국제 문화 교류 활동 지원 등

<sup>\*</sup> 결혼이주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여성,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소수문화활동 및 독립문화예술, 대안 문화예술, 전통문화(예술), 지역문화 등 소수장르 활동 지원 등

[그림 3-4] 문화다양성정책 연차보고서의 사업유형

- 유네스코 협약 당사국이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보면, 기본계획(안)과 연 차보고서의 체계와 달리 소수집단별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사업이 정리되어 있음
  - 외국인주민과 탈북자들의 이주민, 장애인,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을 증진시 키는 정책과 함께 소외된 예술의 보호와 활성화, 소수자집단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예술교육 등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됨
- 연차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전략적 사업보다는 기존에 추진되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 사업과 예술진흥을 위한 창작 및 활동 지원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sup>\*\*</sup> 독립문화예술: 상업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작품제작이 이루어지는 문화예술분야 ex) 독립영화제 지원사업, 프린지페스티벌(독립문화) 축제지원, 인디음악 등

<sup>\*\*\*</sup> 대안문화예술: 연극, 영상, 미술, 문학 등 여러 가지 예술 분야가 혼합 및 융합된 탈장르적·실험적 예술분야 ex) 거리예술, 행위예술 등



[그림 3-5] 국가 이행 보고서의 주요 내용

#### □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지원 사업16)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서 상에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이라는 내역사 업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3개 분야 4개 사업임
  - 창의적 문화행정구현(프로그램)-문화·인문진흥(단위사업)-문화정책개발 및 진흥(세부사업)-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내역사업)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이라는 내역사업 내 내내역사업은 "문화 간 상호 교류 및 소통 활성화",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개발"임
- 첫째,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의 대표사업은 '무지개다리사업'으로, 지역 내 소수문화, 세대문화, 지역문화 등 다양한 문화 주체들의 문화

<sup>16)</sup> 정보람, 2019: 21~39쪽 참조하여 재구성함

#### 예술 교류 및 소통활동의 증진이 목적임

- '문화다양성 아카이브'는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음
- 둘째, 문화다양성 교육사업은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운영과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구분되는데,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유·초등 교육기관 중에서 연구학교를 선정함
- 문화다양성 교육연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다양성 연수기관을 선 정하고, 이 기관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 셋째,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사업은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와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개발로 구분됨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으로, 문화다양성 정책 및 문화다양성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 무지개다리사업 을 주관하는 지역문 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주간 기념행사(축제, 공연, 전시, 영상상영, 포럼, 캠페인 등)를 추진함

[표 3-4]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

주요내용(2019년)
서 '문화다양성 기반 형성', '문화다양성 가치 성 가치 확산' 등 3개 정책 추진전략, 7개 세 프로그램으로 진행
교육, 주간행사 활동을 통한 콘텐츠, 한국문 1원 사업 결과물, 문화다양성 관련 언론보도 양성 이거이브 자료 수집
관의 교육과정과 연계, 문체부와 교육부 협업
고 선정(4개 학교 지정)
보회에서 문화다양성 연수기관을 선정, 문화다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6개 기관에서 기념행사를 추진, 2018년 주간
개 지역, 7만여 명 참여(내부 평가자료 참조)
F다양성 협약이행사항과 국내 「문화다양성의 관한 법률」에 의한 조사 및 정책 연구 수행

자료 : 정보람, 2019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 2. 전라북도 정책 현황

#### 가. 정책 추진 현황

#### □ 전라북도 조례 제정

#### ○ 조례 제정 과정

- 전북연구원에서 지난 2018년 '혐오사회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과제'이슈브리핑을 발간(2018.09) - 이후 도의회에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2018.10) -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다양성 조례가 발의 (2019.03) 되었으며 2019년 4월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이하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조례)가 제정됨

#### ○ 조례의 주요 내용과 특징

- 「문화다양성법」에 따라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을 정하고,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및 문화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다양성법」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시책 수립 및 실행에 우 선시되어야 하며 조례의 주요 개념인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은 「문화다양성법」 의 개념을 따름

[표 3-5]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정책영역	내용
실행계획 수립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시책수립, 교육·홍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방안, 전문인력양성 및 재원방안이 포함된 실행계획 2년마다 수립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구성	실행계획 및 문화다양성 관련 실태조사 및 교육사업 등 정책 수립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전라북도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구성 정책의 특성상 문화채육관광국장과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고 지역별, 연령별,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 공모위원, 도내 거주외국인, 다문화 가족 등이 필수적으로 참여
실태조사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정책 및 제도, 문화다양성 관련 일반적인 인식 조사 등을 포함된 내용을 조사
문화다양성교육	국내외사례, 일상 속 문화적 다양성 존중 및 실천방안 관련 교육 실시
전문인력 양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 □ 문화다양성정책 체계 및 사업

- 전라북도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곳은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무화예술과임
- 주무부서를 포함한 문화예술관광국의 전체 업무 내용을 살펴 본 결과 문 화다양성과 관련한 직접사업이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신규사업으로 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하려 했으나. 예산 반영이 안됨

○ 사 업 명 :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확산 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사업위치 : 도내 14개 시·군○ 사 업 비 : 170백만원(도비)

○ 사업규모 : 14개 시군별 각 1개 사업 발굴 지원

○ 사업내용

-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저변확대를 위한 도민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운영

- (문화다양성 포럼) 전북형 문화다양성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참여형 전문가포럼(2회)

- (지역현장발굴·지원) 민간 주도적 문화다양성 현장 발굴 및 육성

- 문화다양성정책 연차보고서(2018) 내 나타나는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들을 보면 문화예술지원사업과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음
  - 다문화가족 중심의 한정된 다문화 지원, 지역축제 및 행사, 생활문화관련 지원, 문화예술공간조성 등 문화다양성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 연구를 통해 전라북도 환경에 맞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과제 발굴을 진행할 예정임

# 나. 사업 추진 현황

# □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내 시업 현황

[표 3-6] 연차보고서 내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현황

구분	시업명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36)	글로벌마을학당/장애인예술제 및 장애인 날 기념행사/한마음체육대회/조선황조실록 포쇄/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장애인인식개선교육/노인학대 예방 홍보사업/다문화이해교육/노인건강체조 경로당 지원/지평선다누리봉사단 봉사활동/다문화인형극공연활동/장애인권사업/청소년 선도·보호캠페인/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지역 문화예술단체지원/임실군작은별영화관 운영/문화교육을 통한 행복공동체/주민자치프로그램지 및 경연대회 지원/결혼이민자직업훈련/장애인식개선 백일장 대회/다문화어울림문화교육/다문화 어울림 행복나눔이/전통문화보존사업/지역문화발전/꿈다락토요문화학교예술 감상교육/완주 문화다양성 알아가기/문화다양성과 문화재생포럼/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강연/완주문화다양성발굴단 '소수다'/달라도 우린 친구/문화다양성주간행사/군정소식지발행/전라북도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문화표현 기획 확대 및 문화기본 권 신장 (87)	전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및 지도자 배치/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배치/터미널 아트공간조성사업/청춘마이크/전북관광콘텐츠 크리에이터 발굴/전라도 천년 청소년 문화대탐험/문화관광 대표축제 특성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청년문화예술대학/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전라도 방문의 해 아트&버스킹/군산근대역사문화상설공연 지원/전라북도거리극축제/ 다문화어울림축제/통합문화이용권지원사업/문화의집 운영/청소년문화활동지원/다문화어울림문화지원사업/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전주국제영화제 일상성프로젝트'/청소년문화예술활동 지원/꿈의 오케스트라 익산/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지원 및 양로시설운영비지원/노인대학 관리 및 운영지원/지평선어울림합창단/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북한이탈주민 안정적정착지원사업/다문화서비스지원 프로그램 운영/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책 읽기/무주반딧불축제/청소년공연문화체험프로그램/다문화화합한마당/주민시네마스쿨운영/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임실문화원 운영지원/역사 속에서 찾은 임실이야기 강의/임실향교일요학교운영/청소년 문화축제/청소년어울림마당/이주민한국어교육 프로그램운영/진로직업체험지원/청소년축제/청소년메스티벌/노인문화예술활동지원/결혼이무여성 문화교육지원사업/결혼이민자지원/장애인 문화지원/so fun, so good, so with/다름을 인정하는 '다인정' 책 만들기/문화가 있는 날/완주풍류학교 운영/삼례문화예술촌 추석맞이 어울한마당 행사/삼례문화예술촌문화예술프로그램(5)/통합문화이용권지원사업/나비채 음악회/고산향교 석전대제/완주인문학당 운영/놀토피아 개장/평창패렬림픽 경기관람/농악전승학교지원/주요관광지공용와이파이 설치/노인의날 행사/보훈가족 한마음사업/독서문화행사(2)/아동청소년권리주간행사(2)/성인문해지원(3)/체육센터 시설 건립및 개선/아파트르네상스사업/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인문학강좌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32)	인생나눔교실/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주여성 소통한마당/무지개다리사업/이 색쿠킹클래스/다문화어울림문화지원사업(3)/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지원/어울림장터/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지역축제다문화부스운영/장애인날 행사/다문화기족역사탐방/문화다양성거점공간 시범운영/완주문화다양성 라운드테이블/호남권문화다양성정책포럼/문화예술단체 네트워킹/전수교육관활성화사업/장애인기족 한마음사업/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핑한마당/다문화 전통문화체험/문화다양성사업'소통식탁'/완주생활가이드북 발간/마을공방육성사업/어울렁더울렁한마당/윈터푸드패스티벌/농촌축제/청년귀촌캠프운영/전북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3)
정책	시설운영지원(5)/문화다양성자문회의/완주문화다양성정책준비위/찾아가는 문
추진체계   구축	화다양성 연수 및 워크샵/행복콜버스 및 장애인희망 콜택시 운영/청년정책네  트워크단 운영/관련조례제정/결혼이민자지원/문화다양성라운드테이블/완주군
(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7)	익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발간/성인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순창다문화가족 정책설문조사/다문화이주여성 실태조사/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귀농귀촌 포 럼/완주사회적경제한마당
국제 문화교류 (18)	문화교류사업(15)/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관리시스템/국제시미나 및 포럼(2)

[표 3-7] 전라북도 시군의 주요 문화다양성 사업

지역	사업명	사업내용
	완주문화다양성 발굴단(소수다(少 守多)〉	일반주민의 문화다양성 이해도 증진 및 사회적 소수와 다수간 관점 변화를 위한 지원 완주군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완주문화다양성 사업의 핵심그룹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아동권리영화제〉	아동권리의 인식확산을 위해 아동권리를 주제로 기획부터 시 나리오, 촬영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작품을 완성 하고 상영회를 진행
완주공	문화다양성 거점 공간 시범 프로그 램 운영 및 지원	완주지역 다양한 계층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단체 육성 및 공간 구축을 목적으로 완주군민 대상 '옥상페스티벌 누에'를 실 시하여 문화다양성 교육 및 체험, 창의프로그램을 진행
	문화다양성 정책 준비위	군의원, 군청, 문화재단, 지역언론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을 위한 지역문화 주체들의 역할', '익산시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과정과 향후 과제' 논의 진행
	완주군 집중워크 숍	타 지역 문화다양성 사례를 통한 실행방안 모색 및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워크숍 진행 문화다양성 관련 타 지역 사례지 방문, 참여자간 문화다양성 간담회 실시
익산	「익산시 문화다양 성 실태조사」 연 구보고서 발간	익산에서는 문화다양성 수용 수준과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데 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을 바 탕으로 정책과제를 도출

####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의 전라북도 현황

- 문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요사업인 '무지개다리사 업'은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됨
- 무지개다리사업은 '문화여가 정책개발 및 진흥'의 하부 내역 사업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해당되며 2019년 기준 본 사업의 지원 규모는 2.513백만원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내 내역 사업인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무지개다리사업, 아카이빙)'는 2,200백만원, '문화다양성 교육'은 160백만원,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은 153백만원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정책의 대표 사업인 무지개다리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역문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내다양한 문화 주체들의 문화예술 교류 및 소통활성화가 목표임
  -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2017년부터 3년간 다년 지원 사업으로 개편했으며, 매년 사업성과 심의를 통해 지원범위와 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지역규모와 사업 내용에 따라 1개 주관기관 당 4천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와 '완주군'이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임
  - 익산문화관광재단은 '문화로 소통하는 다다익산(多多익산)' 프로그램으로 100백만 원의 지원을, 완주문화재단은 '다름의 가치'로 45,000천 원을 지원받음
- 익산의 경우 시범사업기간을 제외하고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무지개다리사업에 참여하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국에서 진행된 무지개다리사업 중 가장 높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사 업 명 : 문화로 소통하는 다다익산(多多익산)
- 사업목적 : 문화주체들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 치와 문화를 창출하고자 함
- 사업내용
- (다가치협의체 총 4회) : 문화다양성 정책 논의
- (다가치 페스티벌 1회) :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캠페인
- (다가치 포럼 1회) :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과제공유
- (다가치 집중워크숍 1회) : 문화인력 매개자의 문화다양성 이해도 제고
- (호남권문화다양성포럼 1회) : 호남권 무지개다리 시업 추진 재단 간 네트워크 포럼 실시
- (다가치 희망모아 행복모아 총 48회) : 장애인·비장애인 예술체험
- (여성영화제 및 장애인영화제 각 1회)
- (무지개라디오 총 13회) : 지역민과 이주민의 라디오 소통
- (세대공감 인생받아쓰기 총 10회) : 청년과 노인 세대 공감 프로그램 진행
- (무지개복덕방 특강 총 10회 진행) : 문화주체 간 소통 공간 운영



## 3. 정책의 한계와 과제

#### 가. 정부 및 전라북도 사업의 한계

-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강조된 사업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에는 개인 및 소수집단 및 국민국가 문화의 보호
     와 문화적 예외성을 함께 명시하고 있지만,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강조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문화정책과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전라 북도 정책 역시 문화적 '표현'이 강조되는 예술 중심이 두드러짐
    - 문화다양성정책 연차보고서와 협약 당사국 국가보고서에서 소외 받는 예술의 지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소수자집단의 예술향유 지원, 전통문화(문화유산)의 보호·계승등이 문화다양성정책으로 제시됨

#### □ 개념과 정책대상의 부조화와 대상자 중심의 사업

- 문화적 권리와 인간·사회발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대상은 소수자(집단)
   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정책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정책대상임
  - 기존 문화다양성 정책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취약계층이 주요 정책대상이나,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집단은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수혜자 역시 소수자 또는 사회적 취약 계층이 예술을 향유하는 것에 모아져 있는데, 전문가들은 "소수자가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여야 하는 다수자를 대상으로"(라도삼, 2018: 54)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 수혜의 대상이 아닌 공존하는 사람으로서 소수자의 이해 부족

 소수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조건으로 살아가는 타자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의 정책이나 사업들은 소수자를 복 지의 대상처럼 약자의 산물로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함 ○ 이러한 이유에서 소수자를 위한 독자적인 시설(예, 장애전용시설, 다문화 전용시설 등)을 조성하지만 오히려 소수자와 다수자의 사회적 접촉면을 늘려 다름을 상호 인식하고 공존이 가능함을 깨우쳐주는 것이 필요함

#### □ 전라북도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미흡

-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정부 공모사업 대응의 일환으로) 문화(관광)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수록 정책이 체계화되고 있으나, 전라북도에서는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이후 전담부서가 지정되었을 뿐 아직까지 문화다양성정책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정책을 진행하는 시군(예, 익산시, 완주군)이 나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는 시군(예, 전주시)별로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고, 시군별 사업을 총괄해야 하는 전라북도 역시 문화다양성 에 대한 이해가 정립되어 있지 않음

#### 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

- □ 전라북도에 맞는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정책대상 설정
  - 문화다양성협약 체결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우리나라 정 책방향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 에서는 지역에 맞는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정책대상이 설정되어야 함
  - 정책은 주민의 욕구나 수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되어야한다고 가정할 때, 전라북도에서 문화다양성정책이 필요한 이유와 주민의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방향이 설정되어야함
  - 예를 들어, 외국인주민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다 양성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책방향은 소수집단의 예술향유가 아니라 소수집단 고유 의 문화가 보호되거나 전라북도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방향 제시가 중요함

특히 국가 간 무역 분쟁에 초점을 맞추어져 체결된 문화다양성협약과 달리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정책은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 소수자의 문화보호와 사회적 접촉면 확대 병행 필요

- 소수자의 사회적 배려 외에 소수자의 문화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다수자와
   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접촉면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소수자를 위한 전용 시설을 조성하기보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소수자와 다수자가 각각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상호 문화를 인식하는 계기를 넓혀 주는 사업이 필요함
- 대상을 설정할 때 사람이 아니라 활동을 중심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소수자는 고정된 것이 아닌 상대적 개념으로, 처한 위치-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유네스코에서도 문화다양성을 대상이 아니라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함"(라도삼, 2018: 55)

#### □ 공통된 인식 정립 및 확산을 위한 상징사업과 제도 필요

-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때 기존 정책과 다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통
   된 인식이 정립되어야 하고 이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서울 문화권' 선언과 같은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선언 또는 전라북도 문화적 권리 선언 등이 검토될 수 있음
- 문화다양성의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제도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일본 오사카의 헤이트 스피치 처리 조례, 또는 전라북도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문화다양성을 체크하는 절차 등의 제도가 있음

# Jeonbuk Institut

# 조사 및 의견 수렴

- 1. 사례 분석
- 2. 델파이 조사
- 3. 수소자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4. 분석 종합과 시사점

# Ⅳ. 조사 및 의견 수렴

# 1. 사례 분석

#### 가. 정책과 사업 사례

#### □ 조례

○ 2014년 11월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됨

[표 1-7]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구 지역 제외)

지역	조례 주요 내용	제정일자	
전라남도	실행계획, 문화다양성위원회, 문화다양성센터, 실태조사, 교육, 문화다양성기금, 전문인력	2016.1	
경기도	실행계획, 실태조사, 전문인력	2017.3	
부산시	실행계획,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센터, 문화다양성위원회,	2017.3	
서울시	실행계획, 문화다양성위원회, 실태조사, 교육, 전문인력, 지역협력체	2017.5	
제주도	실행계획, 문화다양성위원회, 문화다양성센터, 실태조사, 주간행사	2017.6	
충청북도	실행계획, 문화다양성위원회, 실태조사, 교육, 전문인력, 지역협력체	2017.11	
광주시	실행계획, 문화다양성위원회, 문화다양성센터, 실태조사, 교육, 문화다양성기금, 전문인력, 지역협력체	2018.7	
전라북도	실행계획, 문화다양성위원회, 실태조사, 교육, 전문인력	2019.4	
충청남도	실행계획, 홍보 및 교육,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위원회,	2019.7	
세종시	실행계획, 문화다양성위원회, 실태조사, 주간행사, 교육. 전문인력	2019.12	
전북 익산시	실행계획, 문화다양성위원회, 실태조사, 교육, 전문인력	2019.6	
경남 김해시	실행계획, 문화다양성위원회, 실태조사, 교육, 전문인력	2019.10	
전남 신안군	실행계획, 문화다양성위원회, 문화다양성센터, 실태조사, 교육, 전문	2019.12	
	인력, 국제협력	2019.12	
전남 목포시	실행계획, 문화다양성위원회, 문화다양성센터, 실태조사, 교육,	2019.12	
경기교육청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계획·교육사업·협력사업, 협력체계	2017.6	
경남교육청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계획·교육사업, 협력체계	2017.12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자 : 2020.05.18. 기준)

○ 14개 지역(구 지역 제외)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경기도와 경상남

도에서는 교육청에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 내에서 문화적 차별이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됨

- 지자체별 조례의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문화다양성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으로는 광주광역시(2016), 부산광역시(2018), 전북 익산시(2018)가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심의·조정과 계획수립의 평가를 담당하는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경기도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경기도와 충남 조례에는 관내 문화 및 민속, 차이에 대한 문화적 이해,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및 타민족 문화에 대한 홍보 등 문화다양성 홍보와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의 전담기관으로 문화다양성센터 설치가 6개 지역 조례(전남, 부산, 제주, 광주, 전남 신안 군, 전남 목포시)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센터를 설치한 지역은 없음

#### □ 정부·지자체 사업<sup>17)</sup>

 문화다양성 정책의 사업 유형은 ①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사업, ②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기회확대 및 소수문화 기본권 신장 사업, ③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 ④ 문화다양성 정 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⑤ 문화다양성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사업, ⑥ 국 제 문화교류 및 국외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등 총 6가지 사업 유형으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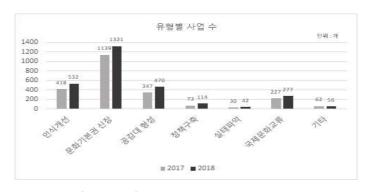
<sup>17)</sup>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 발행하여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17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년 동안 진행된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문체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의 현황을 분석함

[표 1-8]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유형

구분	주요 내용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캠페인,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사업	홍보체계 구축 등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소수문화 활동지원, 다양성 관련 문화예술프로그램 운
기회확대 및 소수문화기본권	영 및 대상별 맞춤형 사업 운영 다양한 계층의 이용을
신장사업	위한 문화시설 조성, 지역고유문화 사업 등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문화예술 상호교류 방안 및 프로그램 운영, 문화 간 협
갈등해소 사업	력 네트워크 기반 마련 등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법적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예산 확보, 기구
구축 사업	설치, 전문인력 양성, 정책 협의체계 구축 등
문화다양성 실태파악 및	소수문화계층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정기적 평가제도
정책개발 사업	도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국제 문화교류 및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민간차원
국외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지원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8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54p 참고

- 2016년 이후에는 다양한 계층 및 대상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이 추가됨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기본권 신장사업이 전체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소수문화계층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제도적 장치마련, 기반구축 사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그림 1-11] 문화다양성 유형벌 정책사업 수

○ 문화다양성 사업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타 영역과 중복되는(예: 다문화 사

- 업, 문화예술교육, 문예진흥 등) 사업이 많고 독자적인 문화다양성 사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
- 정책구축과 실태파악과 관련한 사업이 저조하다는 것은 실제로 지자체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말하며, 정책대상에 대한 욕구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사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함
- 전체예산 대비 문화다양성 예산비율을 비교해보면 서울이 가장 높으며,
   전라북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예산증가율(432% 증가)이 가장 높고 전체 예산대비 문화다양성 예산비율도 서울 다음으로 높음18)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연차보고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에 제시된 수치를 비교한 것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사업예산은 7,761.9백 만원이며 2018년도 문화다양성 사업예산은 41,360.6백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1-12] 지자체별 전체예산 대비 문화다양성 사업예산

○ 문화 간 교류와 소통 활성화가 목적인 '무지개다리사업'은 문화예술을 기 반으로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2년에 시작되었음

<sup>18)</sup> 문화부에 제출하는 지자체 사업현황이 연차별로 체계적이지 않아 매년 지자체에서 현황을 제출할 때 관련 사업을 어느 정도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사업예산이 달라짐. 즉전라북도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실제 문화다양성 사업이 증가했다기보다 현황보고 시 전년 대비 관련 사업을 대폭 늘여 보고했기 때문으로 보임

- 외국인, 다문화가족, 탈북민, 노인,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소수문화계층을 중심으로 문화표현 기회의 확대와 문화주체들 간 소통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지역사회-단체-개인 간 네트워크 형성이 주요 목적임
- 2019년 기준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은 총 26개이며, 전라북도에서는 익산문화관광 재단과 완주문화재단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정부의 문화다양성 관련 대표사업으로 자리 잡은 '무지개다리사업'은 양 적·질적인 차원에서의 성장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평가됨
  - 양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참여자 수 증가와 운영기관의 확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며, 질적인 측면으로는 기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수행 중심의 목적지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사업의 본질적인 고민과 함께 방향성 대한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표 1-9] 무지개다리 사업 우수사례

구분	주요 내용
문화 다양성 기반 형성	문화다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와 담론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주체의 문화다양성 인식확산 및 사업 계획 반영을 위한 근거 마련과 관련한 활동들을 포함함
	사례: 광주문화재단_〈문화행정 생태계 전환 사업〉  ● 운영기관 내부부터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단의 비전, 전략, 경영평가지표, 사업계획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문화다양성 토대 위해 사업체계들이 마련 될 수 있는 있도록 함
	사례: 김해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영화토크쇼 "영화 잇수다"〉  •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화다양성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함. 이에 지역에 위치함 거점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영화감상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사례: 김포문화재단 〈문화다양성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너와 나 그리고 우리"〉 •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다양성 커리큘럼을 개발 계획하여 교육사업을 추진하며 이동청소년 대상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에 기여함
문화 다양성 가치 발굴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고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과 가치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로 사회에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에 기여함

#### 사례: 광주문화재단〈광주 난민영화제 "마주하다 맞이하다"〉

'인권의 도시'라는 정체성과 연결시켜 광주에서는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난민영화제와 연계하여 영화제를 추진함. 이를 통해 난민 관련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내 소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

#### 사례: 부산문화재단 〈문화다양성 마을 운영〉

• 협동조합 및 마을 기업과 연계하여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시함. 마을 내 교육-캠페인-네트워크가 연계된 활동들이 이 루어지는데 기존 마을 사업에 문화다양성 가치를 포함하여 재설계함으 로서 마을 내 문화다양성 의제 확산에 기여함

##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

축제 및 행사 추진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공유 및 관련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성 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목적을 둠

#### 사례: 인천영상위원회 (디아스소포라영화제)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타자화 되는 소수자들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담론을 성찰할 수 있는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공유하며 다양한 관계와 존재에 대한 탐색을 시도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8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참고

-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모든 문화에는 우열이 없고 모든 인간과 집 단은 문화의 산물이며 생산자임)과 함께 UN총회에서는 5월 21일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을 지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문화 다양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문화다양성 주간을 실시함
  - 다양한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이해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 난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세계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함
- 문화정책에 해당하는 정부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소수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여국가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개인과 집단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창의 및 생산-배포 및 보급-참여 및 향유 단계를 넘어 국가, 지역, 집단, 개인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 고 정보의 공유와 가치 확산을 목표로 실시함
  -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제도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며 법률적 사업의 경우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사업이 추 진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별도의 이행 평가를 받지 않음

- 유네스코 협약 이행의 추진에 따른 가장 큰 성과로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으로, 법적 근거 마련은 제도를 통한 문화다양성 실현에 기여함으로서 생활속 문화다양성실천이 중요한 과제로 드러날수 있게함
  - 문화영향평가에서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평가로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어 있어 계획 및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문화다양성의 이해와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의 자율성 확보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음

[표 1-10] 문화정책 분야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및 사업(2014-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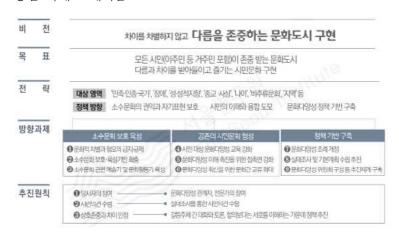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사업성격	협약이행	
도시의 문화산업				
및 표현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제도적	이행평가	
다양성 지원	다양성 지원			
법적기반마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적	_	
	지자체별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			
교류 및 소통	무지개다리사업	제도적	이행평가	
활성화	세계문화다양성의 날	법률적	_	
	북한이탈주민 남북한주민어울림한마당 개최	제도적	_	
이주와 통합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제도적	-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의 주간	법률적	_	
장애인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조성	TUT IT I / TUE T I	이행평가	
문화접근성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재정적/제도적	_	
소외된 문화,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법률적/제도적	_	
교기된 문화, 예술 지원	지역인력양성사업	    재정적/제도적		
에돌 시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세성식/세포식	_	
	미디어 다양성 모니터링	제도적	이행평가	
חבוטו בוטוא	독립영화지원			
미디어 다양성	문화다양성 소재 웹툰개발 사업	재정적/제도적	-	
	인디음악 지원사업			
MI스크O	예술꽃씨앗학교	ᅰᄃᅑ	이행평가	
예술교육	국립국악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제도적	_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제도적		
성평등 인식제고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사업	법률적/제도적	_	
및 확장	성인지 관점의 대중매체 모니터링 및 환류체	규제적	이행평가	
계구축				
노인의 문화적 이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제도적	이행평가	
표현 확대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2017) '2019 무화되었던 전해 여러나고나'로 참고		이행평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8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를 참고하여 재구성

### 나. 정책 연구 사례

### □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sup>19)</sup>

- 서울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개별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사업보다 기본적 권익보호와 시민사회 내 이해를 위한 교육 중심의 인식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다툼
- '차별금지'와 '다름의 존중'을 주요 비전으로 설정하고, 다양성을 포괄하는 시민문화 형성을 통해 모든 사회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수립함
- 정책방향으로 '소수문화 보호 육성', '공존의 시민문화 형성', '정책기반 구축'을 제안하고, 소수문화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문화다양성 이해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조례개정 및 실태조사 추진 등의 정책 사업을 중점 과제로 제시함



[그림 1-13]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비전 체계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에서는 소수자의 권익보호가 가장 시급 한 과제로 도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수문화 보호 육성을 위한 전제

<sup>19)</sup> 서울연구원(2018),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참고

로 문화적 차별과 혐오의 금지, 소수문화의 보호와 육성, 소수문화 관련 예술가 및 활동가의 육성을 제시함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조례에는 문화적 차별과 혐오 관련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기관부터 차별행위 규제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서울시 공공문서 작성시 사전에 검토할 사항들을 제안함

. of 9	사항	이 있는 부분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 #	요시 검토	내용 기자
7	世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0.000	비고
I I	민	<ul> <li>시민 의견 반영 및 시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li> <li>예〉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li> </ul>			
#	가문	<ul> <li>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li> <li>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li> </ul>			
2		<ul> <li>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li> <li>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li> </ul>	0		
	日下西	<ul> <li>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li> <li>예) 아동, 잠애인, 한부모 가정 등</li> </ul>		0	

[그림 3-6] 공공문서 작성 시 사전 검토항목

- 또한 다수 시민들의 문화와 예술활동 지원의 기반 마련을 위해 연령별
   관련 이용시설 확충 및 장애 극복을 위한 도시디자인 적용, 시설의 접근성
   제고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됨
- 소수집단의 예술가 및 문화활동가 지원과 소수집단 대상 및 주제 관련 활동 지원을 위한 소수문화 관련 예술가 및 활동가 육성 사업도 제안됨
- 서울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 개정을 주요하게 다뤘
   는데, 이는 문화다양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조례의 정합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임
-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제안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을 분석해보면 서울 시가 향후 추진하려는 문화다양성 사업의 성격을 파악해볼 수 있음

- 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적 관용"이라는 표현은 문화 간 격차를 전제로 주류 문화의 비주류 문화 이해로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문화다양성이 강조하는 차이에 의한 차별 금지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표현으로 지적됨
-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려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으며 차별 방지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 위원회 구성에 성비율을 고려하거나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정책 집행에 있어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됨

[표 1-11]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 개정(안)

해당 조항	개정방향	관련내용
		• "문화적 관용"이란 표현의 사용을 지향하고 "문화
제2조(정의)	부정적 표현의 수정	적 차이 존중"으로 제안
		•인권의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 추가
제7조(문화	당사자 중심위원 구성,	•소수집단에 속하는 당사자 참여 확대와 특정
다양성위원회)	특정 성 비율 제한	성비율 60%초과 제한
제9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대상 확대	•전문위원 수와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확대
제10조(문화		•실태조사 조사내용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
	조사내용 변경	항 명시
		1)문화다양성 침해 사례
다양성		2)문화다양성 우수사례
실태조사)		3)문화예술, 문화산업 생태계 문화다양성 실태
		4)미디어,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댜양성 실태
제12조(문화	교육대상확대,	•공무원 문화다양성 교육 추가
다양성 보호와	교육내용강화,	•공감대 형성, 인간 존엄성 존중, 예술과의 접목
증진 교육)	교육방식 보완	을 강조한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자료 : 서울연구원(2018).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을 참고하여 재구성

- 연구에서는 조례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문화다양성 법정교육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시함
  - 현재 직장 내 4대 법정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 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의 교육 콘텐츠를 살펴보면 교육의 내용의 전반적으로 직장 내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집단의 경우 여성과 장애인에 한정 되어 있어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문화정책의 중장기적 관점을 제시한 2016년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에 포함된 문화의제와 더불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통합적 해결방안을 제시함

- 민선 5기에 수립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은 문화예술, 역사문화유산, 문화콘텐츠, 관 광산업과 관련 기존 계획을 문화의제로 새롭게 재편하여 "분야 간 칸막이를 없앤" 문 화의제 통합형 계획임
- 문화다양성의 가치 실현과 관련하여 토대가 되고 있는 "서울 시민문화권 선언"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문화적 권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개인의 권리 강화를 통해 이를 보장하려는 시도임
- 「문화기본법」에서 제시한 〈문화권〉은 "문화창조, 활동참여, 문화향유"를 강조하며 모든 국민이 차이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는 권리로 규정했다면 〈시민 문화권〉은 "서울에 모든 사람(관광객 포함)"을 대상으로 예술, 스포츠, 관광 등 구체적 인 문화활동 전반에 걸쳐 관람과 향유, 참여와 활동,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포함함

### □ 강원도(강원연구원)20)

- 강원도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을 보면 지역문화재단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 대부분이 중앙에서 공모한 무지개다리사업으로 중앙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연구보고서에서는 문화다양성 사업의 정부 공모사업 의존도가 높아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바, 정부 공모사업 외에 지역특화 사업의 발굴을 제안함
- 연구에서는 다른 지자체 사업과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도 문화다양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문화지원과 문화예 술지원사업이 혼동되어 정책사업으로 제안되고 있다고 지적함
  - 다문화,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분야의 사업과 혼동되어 문화다양성 사업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정책수립 및 실행주체들의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과 더불어 현재 고민해볼 수 있는 사회적 이슈의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sup>20)</sup> 강원연구원(2018). "강원도 문화다양성, 따뜻한 공동체를 위하여", "강원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참고하여 작성함

[표 1-12] 2018 강원도 문화다양성 사업

주요사업	세부사업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농악보존회 운영, 춘천, 원주, 강릉등 기초문화재단 컨소시엄(무지개다리사업), DMZ접경지역문화다양성 인식개선사업(무지개다리사업), 원주시 문화다양성 지도 작성, 플랫폼 제시(무지개다리사업), 영월문화살롱(무지개다리사업)
문화기본권 신장사업	실버예술단 활동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예술꽃씨 앗학교, 인제군 무지개어울림 예술난장(무지개다리사업)
공감대 형성, 갈등해소	인생나눔교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지원
정책추진체계 구축 사업	화천군 여성합창단 창단 및 운영조례 제정
국제문화교류 사업	강릉국제청소년 예출축전, 토지문화관 예술창작활동

자료 : 강원연구원(2018). "강원도 문화다양성, 따뜻한 공동체를 위하여" 참고

- 강원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원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의 검토와 함께 정부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방향 수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함
  - 연구보고서에는 문화다양성 사업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이 시급하지만 강원도에는 기본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함
-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추진 방향은 첫째,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도민 문화 형성, 둘째, 문화다양성 추진 인프라 구축, 셋째, 강원문화의 다양성 자원의 역량 강화이며, 이와 관련하여 3대 전략 9개 세부사업을 제시함

[표 1-13] 강원연구원의 강원도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제안

추진방향	추진전략	세부사업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도민문화 형성	문화다양성 교육	학교 및 공무원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 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				
	및 소통증진	고령화·공동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 해소				
		예술을 통한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확대				
문화다양성 추진 인프라 구축	문화다양성 관련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법률 및 추진체계 구축	문화다양성 정책의 일원화 및 체계화				
		문화다양성 추진 네트워크 지원				
강원문화의	가이드 트스서오	영동과 영서의 이해와 강원 정체성찾기				
다양성 자원의	강원도 특수성을	세계유일분단도와 DMZ				
역량 강화	반영한 사업발굴	한국석탄산업 보고의 문화창작특구지정				

자료 : 강원연구원(2018). "강원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참고

- 보고서에서는 강원도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다양성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첫째, 고령화 및 공동화 현상확대, 둘째, 외국인 유입에 따른 다문화가구 증가. 셋째, 도내 거주 문화예술인수 저조, 넷째, 도내 시군별 문화시설 격차 해소 필요, 다섯째,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관련 문화다양성 사업 발굴을 과제로 제안함
- 구체적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와 지역공동화에 다른 인구 소멸이 지역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노인 세대의 배려와 세대 간 문화 이해를 위한 세대공감 통합 프로 그램이 제안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다문화가구 인구의 증가로 인해 선 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제안함
- 지역문화예술생태계 마련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간 확충 및 네트워크마련을 위한 창 작공간마련을 제안하고 있으며 강원문화재단과의 연계를 통한 예술인지원센터 건립 추 진, 문화다양성의 감수성을 가진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제시함
- 강원도 시군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생활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화다양성 마을선정' 사업을 제안하며, 세부사업으로 지역 생활문화공동 체 활동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역문화자원 연계 문화예술교육 확대 등이 포함됨
- 강원도는 해양문화적 요소, 산간문화, 농경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이며 영동과 영서지역의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강원 방언의 보호와 이해를 위해 '강원의 언어를 찾아서' 캠페인 진행, 방언 연구 관련 지역별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의 세부사업을 제시함
- 세계유일 분단 도의 특성을 살려 접경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에 대한 고민과 남북교류 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정립 관련 사업을 제안함

## 다. 국외 사례: 문화적 시민권과 상호문화이해주의

### □ 문화적 시민권의 개념

- 정치학적 관점에서 시민권(citizenship)은 특정 커뮤니티에 속할 수 있는
   "완전한 멤버쉽(full membership)을 의미하며(Marshall 1950/1970:
   87), 기존의 시민권 논의는 법적 멤버십의 문제와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시민활동에 국한되었고, 문화 영역은 제외되어 있었음
- 1990년대 이후 세계의 시민들은 정치적 의미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많은 권리를 얻기 위해 주장하고 투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정치적·경제적 권리는 물론이고, 미디어 시민권(Miller, 2007), 기술적 시민권 (Stevenson, 2006), 생태적 시민권(Sáiz, 2005), 문화적 시민권, 성적 시민권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민권의 개념이 등장함
- 세계화의 확산은 경계선에 따라 작용하는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 보다 활동으로서 시민권에 집중하게 되는데, 인구·자본의 활발한 이동은 수많 은 사람이 시민권의 영역 바깥에서 살게 하고 한 국가 내에서도 이주민들 의 인권과 국민국가의 시민권이 충돌하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임
  - "시민권을 현실적 제도와 실천의 과정으로 보고 정치적 범주를 고민하는 관점과, 시민 권을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이상적인 응답으로 보며 정체성 논의로 확장하는 견해가 양립했음. 정치적인 시민권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법적인 멤버십의 문제와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문제를 고민하고, 문화적인 시민권의 문제에서는 불안을 제거하고 규범을 설정하는 시민권의 이데올로기적인 기능과 문화적 재현에 눈을 돌린 셈(이희은 2010: 48)."
- 오늘날 시민권은 키비스토와 파이스트가 정리한 것을 토대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글로벌 시민권, 코즈모폴리턴 시민권, 초국적 시민권, 이중 시민권, 다층적 시민권, 문화적 시민권, 다문화 시민권, 사이버 시민권, 환경 시민권, 여성주의 시민권, 유연한 시민권, 전통적 시민권, 기술시민권, 서브알턴(subaltern) 시민권, 미디어 시민권, 생태적 시민권 등 다양함(Kivisto & Faist, 2007, p.2).

#### □ 문화적 시민권 개념의 등장

- 인류학자 로살도(Rosaldo)가 1994년 쓴 연구에서 등장, 로살도는 '정치적' 영역과 '문화적' 영역이 '국가'와 '일상생활'이라는 범주로 나뉘어 서로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함(이희은 2010: 49)
  - 로살도는 이러한 문화적 시민권 사례로 미국 내의 라티노들을 들었는데, 라티노들의 문화적 권리가 물리적 장소를 직접 점유하면서가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 어지는데 주목함. 그러나 라티노들이 고유의 문화공간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화적 시 민권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속한 물리적 공간이 미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을 그들에게 제공(강제)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성립됨
- 공간과 장소의 압축과 균열이 흔하게 벌어지는 현대사회에서 디아스포라, 소수집단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시민권에 대한 정치적·법적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 공간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문화적 시민권은 의미가 있음
- 문화적 시민권을 주장한 스티븐슨은 "권리에 대한 투쟁은 문화적 측면의 인정과 연결되어야 한다며, 법적 규제보다 규범이나 실천 그리고 의미화 과정과 정체성 등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함(이희은 2010: 50)
- 문화를 정책적 대상으로 대하는 순간 문화를 관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문화 자체가 손상을 입게 되는 반면, 제도적 지원 없이는 문화가 순식간에 주변화 되어 버리기 때문에 법적 규제보다는 규범이나 실천 그리고 의미 화 과정과 정체성 등을 더 강조해야 함(스티븐슨 2001; 2003)

## □ 네덜란드의 'I amsterdam' 사례<sup>21)</sup>

-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다양성과 포용을 상징하는 도시로서 다양
   한 문화공존 속에서 서로의 다양성 인정을 추구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2009년 문화다양성 협약에 비준하였고, 인구 중 22%가 이주민(약 1700

<sup>21)</sup> https://www.amsterdam.nl/en/policy/policy-diversity/

- 만명)인 대표적 다문화 국가임. 암스테르담은 50% 이상이 이주민이며, 국민 90% 이상이 동성결혼찬성 및 성소수자친화성을 보임(문화체육관광부 2018: 27).
- 암스테르담의 정책은 자유와 관용, 다양성이 큰 힘이 되는 것을 알지만,
   차이점보다 연합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함께 연결되는 지향점을 가짐
- 암스테르담의 정책은 다양성(diversity)보다 '포용성(inclusion)'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모든 암스테르담 사람들은 도시에 참여할 수 있고, 배제되지 않음
  - 암스테르담의 4가지 정책으로 만드는 문화다양성

공유기록 (Shared History)	<ul> <li>다양한 배경과 민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나눔</li> <li>개인이력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운영</li> <li>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 이야기 공유</li> </ul>
차별금지 (Anti- discrimination)	<ul> <li>인종, 종교, 성적지향으로 인한 찹ㄹ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li> <li>암스테르담지역 차별불만사무소를 운영해 불만을 등록하고 처리하는 역할</li> <li>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참여로 편견과 소외에 대한 인식 개선</li> </ul>
LGBTI 권리 (LGBTI right)	LGBTI 커뮤니티 평등권 투쟁을 위한 노력 지원     암스테르담의 '핑크 아젠다'는 LGBTI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이들 커뮤니티의 이니셔티브를 효과적으로 지원     LGBTI의 가시성을 높여 사회에서 친숙하게 만드는 지원을 통해 사회의 수용능력을 증진시킴
여성 역량 강화 (Empowering women)	<ul> <li>여성과 소녀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정책적으로 지원</li> <li>취약한 어린 소녀의 성적 자주성을 위해 'sexting'에 대한 교육을 하고, 여성의 일과 가족의 의무 사이에서의 균형을 위해 여성을 위한 재정적 독립을 지원</li> <li>여성 기업가를 발굴해 영감을 주는 등의 활동 지원</li> </ul>

- 암스테르담의 정책은 하나의 도시의 시민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서로간의 다양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호이해를 넓이고 있음
- 이는 50% 이상의 이주민 구성, 다양한 하위문화 공동체 등으로 이루어진

다양성이 각각 존재한다기보다 함께 상호작용하며 문화적 시민권인 새로 운 '암스테르담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임.



[그림 3-7] 레이크스 박물관(Rijksmuseum)앞의 I Amsterdam



[그림 4-1] 다양성과 포용성의 아름다움, AMSTERDAM RAINBOW DRESS

## □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의미

-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타자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존중하지만, 다문화주의가 인정하는 다양한 문화의 공 존은 자칫 문화적 위계관계를 만들고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 는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듬
- 말(Ram A. Mall)은 상호문화주의를 "어떤 문화도 전체 인류를 위한 유일

한 문화가 될 수 없다는 통찰,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박종대 2017: 118)하며, 김태원은 파레크(Bhikhu C. Parekh)가 주장한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며, 다른 문화와 서로 간섭함으로써 주류 문화와비주류 문화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상호문화주의라고 보았음(김태원 2012:201-202)

	ルーローエハ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병존 하거나 공존하는 사회구조의 현상을 가리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회구 성원들이 상호관계 속에서 쌍방향적으로 역동적인 문화교류와 대화하는 현 상을 가리킴				
•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와 존중 그리고 차이의 인정	• 문화와 문화의 만남 속에서 문화상호 간의 대화와 교류 강조				
• 한 지리적 공간에 둘 이상의 복수문화 공존 내지 병존, 문화의 경계 존재	• 한 지리적 공간에 둘 이상의 복수문화 가 서로 접촉하여 경계를 허물고, 상 호접촉·상호대화·상호융합을 통해 혼 종문화 탄생시키는 역동적 과정				
문화적 타자성에 대해 암묵적인 무간섭과 방치에 가깝게 되면서 주류문화권 구성원들과의 지역적 분리와 비주류문화권 구성원들의 사회적 주변화란 한계 노출됨	주류사회와 비주류사회 구성원이 상호 접촉과 상호대화 그리고 상호작용을 장려하여 공통의 문화적 기반을 마련 하는데 주안점				

박종대(2017), "한국 다문화교육정책 시례 및 발전 방안 연구: 상호문화주의를 대안으로", 115쪽 재구성

- 다문화주의는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상호문화(interculturel)'라는 용어는 대표적으로 '소극적인 공존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집단들 간의 이해, 존중, 대화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게 할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방 법을 찾아내게 하는 교육'<sup>22</sup>)으로 정의되는 유네스코의 상호문화교육과 관 련되어 있음
  - "마르티노(Martineau)는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각 자에게서 인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타인을 온전한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자기 고유의 문화를 알고, 자신이 자기 문화의 산물임을 알고 스스로가 여러 개의 정체성을 지닌 복수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과정, 세 번째는 차이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며, 네 번째는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섭이나 교만이 아니라 환대하는 개방정신 속에서 나와 타인을 연관지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sup>22)</sup> UNESSCO, Guidlines on intercultural education, UNESCO, 2006, 18쪽.

다섯 번째는 자신의 판단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먼저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 여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비판하 는 것이며 일곱 번째는 협상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임(박종대 2017: 118).

#### □ 문화다양상교육과 상호문화이해주의

- 상호문화주의와 교육이 결합된 것은 1970년대 이후 독일과 프랑스에서 '특수교육'으로 시작되었고, 이민 배경의 학생의 교육(특히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
  - 특수교육은 이민배경 학생을 범주화하고 소외감을 일으킨다는 비판에 1970년 모든 학생에게 문화다양성을 가르치는 '일반교육'으로 발전(장한업 2016: 36).
- 홀츠브레허(Alfred Holzbrecher)는 상호문화학습을 위한 4가지 기본 주 제를 이야기 하였는데, ① 낯선 것에 대한 이해 또는 교제 ② 다른 것에 대한 인정, ③"모든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같다"와 같이 차이를 평가하지 않는 교류 ④ 지구적 경계를 뛰어넘는 이해임<sup>23)</sup>
-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은 각 문화의 다양한 특징, 상징체계, 가치관, 현 상들에 대한 고유성과 차이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며, 인류 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이자 인간의 기본 문화 권리로 받아들이는 공동체 가치를 기초로 함
- '상호문화이해주의'식 문화다양성교육의 핵심목표는 첫째, 인류의 보편적 가치 공유와 인정을 시작으로 공존가능성을 발견하여 관용 및 포용 역량 을 기르고, 둘째, 관용과 포용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 간 소통 및 교류를 실행하는 개인의 문화역량을 기르는 것임
  - 친숙함을 시작으로 한 상호문화이해력은 문화이해력·문화적응력을 길러 관심과 개방적 태도를 기초로 한 수용력(고정관념, 무의식적 자민족중심적태도 제거된)을 기를 수 있 을 것임

<sup>23)</sup> Alfred Holzbrecher, 정기섭·오영훈·김영순·이문기·변경원 역, 2014, 『상호문화 교육 의 이해』. 북코리아.

# 2. 델파이 조사

#### 가. 조사개요

#### □ 조사목적

- 전라북도 여건에 적합한 문화다양성 개념을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 1단계 조사에서는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 파악을 위한 정책 적절성 평가와 분류체계별 정책의 소외도, 시급도 등을 판단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전라북 도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 2단계 조사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의제를 도출하여 사업 추진 방향 및 집단별 정책 방안 수립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 조사 설계

○ 본 조사는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사업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30명을 대상 으로 2차에 걸쳐 비대면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1차 조사 : 2020년 04월 13일(월) ~ 2020년 04월 17일(금) 2차 조사 : 2020년 04월 20일(월) ~ 2020년 24월 17일(금)
조사대상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사업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30명
조사방법	비대면 델파이조사 실시 (조사표 이메일 발송)

## □ 조사 내용

○ 델파이조시표는 [1]응답자 특성, [2]문화다양성(이하 동일) 이해도, [3]전북수 용도, [4]정책적절성, [5]정의적절성, [6]조례 권고사항, [7]소수집단 보호, [8]정 책빙향 문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

[표 4-1] 델파이조사 항목 및 내용

하모	조사내용					
항목 1차		2차				
이해도	문화다양성 이해도					
전북수용도	문화디양성 전북수용도					
정책적절성	문화디양성 정책적절성					
정의적절성	문화다양성 정의적절성	문화다양성(정의) 정책활용 여부 문화다양성(정의)보완/수정고려사항				
조례 권고사항	문화다양성 조례 권고사항 중요도 문화다양성조례권고사항사급도	문화다양성 조례 권교사항 중으도 순위 적절여부 문화다양성 조례 권교사항 중으도 우선순위 문화다양성 조례 권교사항 시급도 순위 적절여부 문화다양성 조례 권교사항 시급도 우선순위				
소수집단 보호	소수합인 문화망성 보호 소와도 소수합인 문화양성 보호 정책(급도	사합의 문화성 보호 소도 위 적절부 소수합인 문화양성 보호 소의도 우선위 소약한의 문화왕성 보호 정째 E도 삼절화부 소수합의 문화양성 보호 정째 E도 우선위				
정책 방향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중요도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시급도	문화다양성 정책빙향 중요도 순위 적절여부 문화다양성 정책빙향 중요도 우선순위 문화다양성 정책빙향 시급도 순위 적절여부 문화다양성 정책빙향 시급도 순위 적절여부 문화다양성 정책빙향 시급도 우선순위				

## □ 조사 대상

-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30명을 추천·섭외하여 델파이조사를 수행함
  - 응답자 직업별 분포: 공공기관 관리자가 14명(48.3%), 활동가가 8명(27.6%), 연구 원·행정공무원이 각각 3명(10.3%), 교수가 각각 1명(3.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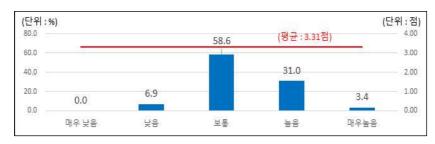


[그림 4-2] 직업별 응답자 분포

## 나. 조사 결과

### □ 문화다양성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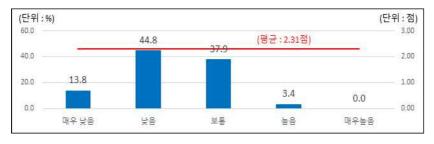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를 조시한 결과, 응답자의 34.5%(10명)가 이해도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에 6.9%(2명)는 이해도가 낮다고 응답하고 있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는 '보통 이상(3.31점)'으로 평가됨



[그림 4-3]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 □ 문화다양성 전북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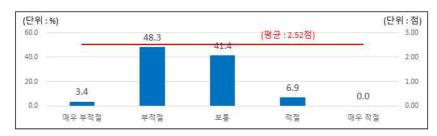
○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라북도의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1명)가 수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58.6%(17명)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함



[그림 4-4]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라북도의 수용도

## □ 문화다양성 정책적절성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는 6.9%(2명)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51.7%(15명)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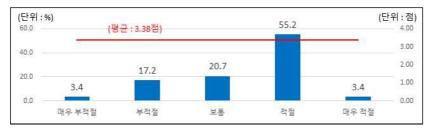
[그림 4-5]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적절도

### □ 전북조례의 문화다양성 정의에 대한 적절성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다양성 정의에 대하여 적절성을 물어본 결과, 1차 조사에서는 58.6%(17명)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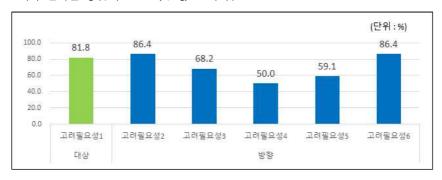
- 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 혹은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문화다양성" 과 "문화적 표현"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 문화다양성: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문화적 표현 :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 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 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그림 4-6] 문화다양성(정의)에 대한 적절도

현재 조례의 문화다양성 정의를 정책에 그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2
 차 조사), 응답자의 75.9%(22명)가 보완 수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조례의 문화다양성 정의를 개정할 때 고려할 내용에 대해 2차 조시한 결과, 「현재의 정의는 예술·문화유산 중심이기 때문에 문화로 개념 확장」과「(문화)예술표현(창작)을 넘어 사회문화적 현상에서 문화다양성 가치 주목」에 대한 항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6.4%(19명)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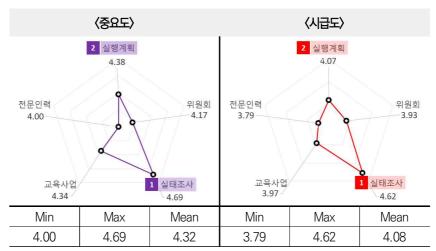


[그림 4-7]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보완·수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주1. 고려필요성① 집단과 사회 중심 영역에서 개인과 소수자를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정책적 범위 확대 필요
  - 2. 고려필요성② 현재의 정의는 예술·문화유산 중심이기 때문에 문화로 개념 확장
  - 3. 고려필요성③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 구체화 필요 (예: 국적, 민족, 계층, 인종, 언어, 성적지향, 혼인여부, 연령, 학력, 출신지역, 신체적 능력의 차이)
  - 4. 고려필요성④ 차별(차이)의 강조보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강조(시각의 전환 강조)
  - 5. 고려필요성⑤ 일상문화(생활문화)를 포함한 문화 범위 확대
  - 6. 고려필요성⑥ (문화)예술표현(창작)을 넘어 사회문화적 현상에서 문화다양성 가치 주목(예 : 다름과 차이, 차별과 혐오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활용

## □ 문화다양성 조례 권고사항

- 전라북도 조례에 나와 있는 주요 사업(권고사항)의 중요도를 1차 조사한 결과, 평균 4.32점으로 중요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가 4.69점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문화다양성 실행계획 수립(4.38점)', '문화다양성 교육사업 실시(4.34점)',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4.17점)', '전문인력 양성(4.00점)'이 뒤를 이음
- 사업의 시급도에서는 1차 조사에서 평균 4.08점이 조사되었고, 가장 시급 한 사업으로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4.62점)로 나타남
  - 실태조사 외의 사업은 '문화다양성 실행계획 수립(4.07점)', '문화다양성 교육사업 실시 (3.97점)',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3.93점)', '전문인력 양성(3.79점)' 순임



[표 4-2]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조례 권고사항에 대한 중요도 및 시급도

주1. 중요도 - 5점 척도 사용 〈 매우 낮음(1점) ~ 매우 높음(5점) 〉 2. 시급도 - 5점 척도 사용 〈 매우 낮음(1점) ~ 매우 높음(5점) 〉

- 2차 조사에서 1차 조사에 나타난 사업의 중요도 순위가 적절한 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7.9%(11명)가 순위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시급도 순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8%(13명)가 순위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종합하면, 조례 사업의 중요도 우선순위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1순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 수립'(2순위),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3순위), '문화다양성 교육사업 실시'(4순위), '전문인력 양성'(5순위) 순으로 나타남
- 시급도 우선순위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1순위), '문화다양성 위원회설치 및 기능'(2순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 수립'(3순위), '문화다양성 교육사업 실시'(4순위), '전문인력 양성'(5순위) 순으로 나타남
- 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다섯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가 꼽혔고, 실행계획수립과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등의 뒤를 이음



[그림 4-8] 문화다양성 조례 권고사항에 대한 중요도 및 시급도 사분면 분석 1차 조사 결과(좌), 2차 조사결과(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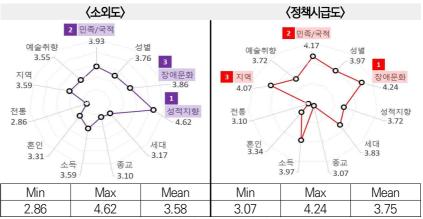
[표 4-3]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조례 권고사항에 대한 중요도 및 시급도 우선순위 (단위: 점, 순위)

지게 귀그녀하	평균점수		중요도 순위		시급도 순위	
조례 권고사항	중요도	시급도	기존	수정	기존	수정
1) 문화다양성 실행계획 수립(2년마다)	3.18	3.08	2	2	2	3
2)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2.91	3.31	4	3	4	2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	4.82	4.54	1	1	1	1
4) 문화다양성교육사업 실시	2.82	2.46	3	4	3	4
5) 전문인력 양성	1.27	1.62	5	5	5	5

주. 순위계산은 순위별 응답수×순위요율(순위요율의 경우 1순위는 5점, 5순위는 1점으로 각 순위마다 1점 차)의 합으로 계산하여 순위를 매김

## □ 소수집단의 문화다양성 보호

- 정책대상으로 분류한 11개 소수집단에 대한 소외도를 물어본 결과, 1차 조사에서 소외도가 높은 편인 평균 3.58점(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음
  - 정책대상별 소외도는 '성적지향'집단이 4.62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 정책시급도 또한 높은 편에 해당되는 평균 3.75점(평균 이상)으로 조사됨
  - 정책대상별 정책시급도는 '장애문화'집단이 4.24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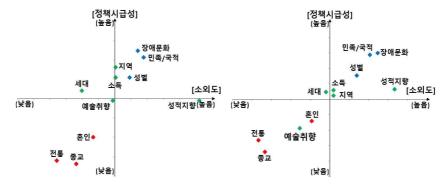


주1. 소외도 - 5점 척도 사용 〈 매우 낮음(1점) ~ 매우 높음(5점) 〉

2. 정책시급도 - 5점 척도 사용 〈 매우 낮음(1점) ~ 매우 높음(5점) 〉

[그림 4-9] 전라북도 소수집단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소외도 및 정책시급도

- 1차 조사에 나타난 정책대상별 소외도와 정책시급도가 적절한 지를 2차 조사를 통해 물어본 결과, 소외도에서는 51.7%(15명)가 정책시급도에서는 58.6%(17명)가 순위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정책대상별 소외도는 '성적지향', '장애문화', '민족 /국적', '성별', '소득', '지역', '세대', '혼인', '예술취향', '종교', '전통' 순으로 나타났고, 정책시급도는 '장애문화', '민족/국적', '성별', '성적지 향', '소득', '세대', '지역', '혼인', '예술취향', '전통', '종교)' 순임



[그림 4-10] 소수집단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소외도 및 정책시급도 사분면 분석 1차 조사 결과(좌), 2차 조사결과(우)

[표 4-4] 전라북도 소수집단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소외도 및 정책시급도 우선순위 (단위: 점,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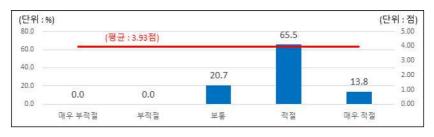
소수집단	평균점수			
	소외도	정책시급도		
1) 민족/국적	8.07	8.88		
2) 성별	7.40	7.53		
3) 장애문화	8.47	9.00		
4) 성적지향	9.33	6.65		
5) 세대	5.80	6.47		
6) 종교	2.67	2.59		
7) 소득	6.20	6.59		
8) 혼인	5.07	4.59		
9) 전통	2.33	3.35		
10) 지역	6.20	6.24		
11) 예술취향	4.47	4.12		

소외도 순위 기존 수정		정책시급도 순위			
기존	수정	기존	수정		
2	3	2	2		
4	4	4	3		
3	2	1	1		
1	1	8	4		
9	7	6	6		
10	10 5	11	11		
5		4	5		
8	8	9	8		
11	11	10	10		
5	6	3	7		
7	9	7	9		

주. 순위계산은 순위별 응답수x순위요율(순위요율의 경우 1순위는 11점, 11순위는 1점으로 각 순위마다 1 점차)의 합으로 계산하여 순위를 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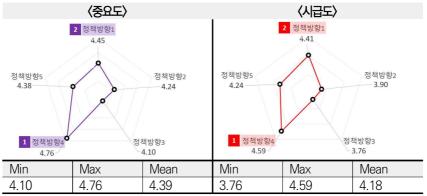
## □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방향의 적절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3%(23명)가 적절하고 있다고 응답함



[그림 4-11]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에 대한 적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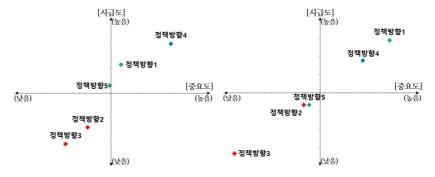
-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방향을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중요도를 물어본 결과, 1차 조사에서 '집단 간 상호 이해 및 갈등 해결(4.76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정책방향의 시급도에서는 '집단 간 상호 이해 및 갈등 해결(4.59점)'에 대한 정책방향이 1순위로 조사됨



- 주1. 정책방향1. 소수집단의 기본권 신장 및 권리보호
  - 2. 정책방향2.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의 자유
  - 3. 정책방향3. 소수집단의 예술표현 및 창작, 생산의 자유
  - 4. 정책방향4. 집단 간 상호 이해 및 갈등 해결
  - 5. 정책방향5.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역 환경 개선

[그림 4-12]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도 및 시급도

-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물어본 2차 조사에서는 정책방향의 중요도의 순위가 '소수집단의 기본권 신장 및 권리보호', '집단 간 상호 이해 및 갈등 해결',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역 환경 개선',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의 자유', '소수집단의 예술표현 및 창작, 생산의 자유' 순으로 조사됨
- 시급도 순위는 '소수집단의 기본권 신장 및 권리보호', '집단 간 상호 이해 및 갈등 해결',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역 환경 개선', '소수집단의 문 화적 표현의 자유', '소수집단의 예술표현 및 창작, 생산의 자유'임



[그림 4-13]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도 및 시급도 사분면 분석 1차 조사결과(좌), 2차 조사결과(우)

[표 4-5]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도 및 시급도 우선순위

(단위: 점, 순위)

포레 리그니죠!	평균점수		중요도	- 순위	시급도 순위	
조례 권고사항		시급도	기존	수정	기존	수정
1) 소수집단의 기본권 신장 및 권리보호	4.44	4.44	2	1	2	1
2)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의 자유		2.67	4	4	4	4
3) 소수집단의 예술표현 및 창작, 생산의 자유		1.33	5	5	5	5
4) 집단 간 상호 이해 및 갈등 해결		3.89	1	2	1	2
5)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역 환경 개선	2.78	2.67	3	3	3	3

주. 순위계산은 순위별 응답수×순위요율(순위요율의 경우 1순위는 5점, 5순위는 1점으로 각 순위마다 1점 차의 합으로 계산하여 순위를 매김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에 대한 보완·수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2차 조시한 결과, 응답자 전체가 「문화(예술)정책 중심의 지원이 아닌 젠더감수성 증진, 혐 오문화 성찰,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하는 사회 통합적 접근이 필요」에 대한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함



[그림 4-14]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에 대한 보완·수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주1. 정책방향(1) 정책방향의 대상을 개인과 소수집단으로 변경
  - 2. 정책방향② 사업 대상의 세분화 필요(예: 세대, 지역 등)
  - 3. 정책방향③ 소수집단 중심의 정책 대상화 지양
  - 4. 정책방향④ 갈등 해결이 아닌 갈등의 공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새로운 가치 전환 지향
  - 5. 정책방향⑤ 소수집단의 기본권 신장 및 권리보호는 인권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므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 방향에서는 제외
  - 6. 정책방향⑥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전 시민 대상 교육 및 교류활동 실시
  - 7. 정책방향⑦ 문화(예술)정책 중심의 지원이 아닌 젠더감수성 증진, 혐오문화 성찰,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하는 사회통합적 접근이 필요
  - 8. 정책방향® 제도적 선정을 통한 지원보다는 활동 기반 마련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우선
  - 9. 정책방향의 특정 소수성만을 위한 지원은 해당 소수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로 전략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 발굴은 지양
  - 10. 정책방향⑩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의제를 포함하는 축제 또는 사업 발굴을 통해 전 시민의 문화다양성 접촉면확

# 3. 소수자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가. 심층인터뷰 개요

#### □ 목적과 대상

- 전라북도 내 소수집단의 권리보호와 문화적 표현의 확대를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만나 심층인터뷰를 진행함
  - 사전 질문지를 작성했으며, 질문내용은 각자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 내용, 차별 의 경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필요한 사업과 정책방향을 논의함
  - 활동가들의 활동 현장이나 주변 공간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음을 한 뒤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함
- 인터뷰 대상자들은 기존에 차별의 대상으로서 인지되며 정책적인 지원 대 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장애나, 민족·국적의 대상보다는 존재 자 체만으로 혐오와 갈등의 표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소수집단이나 정책 의 영역에서 소외받는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보는 것에 의미를 두었음
- 자체적으로 진행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에서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11개 소수집단의 소외도를 조사한 결과 '성적지항' 집단에 대한 소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와 민족·국적을 제외하면 성별, 지역, 예술취향, 혼인 등에서도 정책적 소외 현상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성적지향'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내 퀴어문화의 상징적인 활동 중에 하나인 전주퀴어문 화축제의 운영진과 지역의 유일한 성소수자 모임의 활동가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 는데, 성격이 다른 단체이다 보니 성 정체성의 이해와 관련하여 공통된 생각도 있었지 만 정책지원에 있어 다른 성격의 사업을 제안함
  - '성별', '혼인'과 관련해서는 여성비혼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활동가를 만나 혼(婚)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가치와 여성 1인 가구로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겪는 차별적인 경험이나 정책 대상으로서의 소외 경험들을 공유함
  - '지역'의 경우 완주 귀농·귀촌 청년들의 거점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공간 플래닛 2호점을 운영하는 귀농귀촌 청년 이주민을 인터뷰하였으며, 귀농귀촌 청년이 생각하는

문화다양성의 지역 내 인식과 제안 사업에 대해 논의함

- '예술취향'은 비주류에 해당되면서도 연령의 제한(청년이 아닌 세대)으로 인해 지원 대 상에서 소외를 겪는 중년세대 예술가를 만남. 지역 내 인디음악 활동지원과 연대를 위 한 음악인협회 운영진이기도 함

## 나.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경험

### □ 활동 분야에 따른 다양한 인식

- 문화다양성에 있어 차별과 차이를 배제해야한다는 공통된 생각들을 공유 하지만, 개별적인 경험에 따라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다루어지는 '문화'를 이해하는 정도가 서로 달랐음
- 문화다양성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활동가들 역시 문화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는 경향이 높았음
  - 예를 들어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 "차별 없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집중하고 있 었음
-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정책대상(활동분야)에 따라 이해하는 내용에 차이가 나타나지만, 차별과 혐오와 관련된 표현은 어떤 내용이던 상관없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통되는 특징을 보이며, 대체로 문화다양성을 인권 문제와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었음
  - '예술', '생활문화의 영역', '다양한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행동양식' 등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문화에 대한 인식이 다름

다문화와 같이 내가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한 타자화는 정말 없애야하는 문제이며 단어 인 것 같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은 사실 인권감수성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면 해결될 문제인데 우리는 그게 부족한 것 같다. 너무 한민족, 하나에 집착을 하며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삶을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다.

(비혼 공동체 관계자)

#### □ 차별적 경험 사례

## \* [사례 1] 개인 혹은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 개인 혹은 집단이 겪은 차별적인 경험들은 다수의 집단으로부터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데서 기인하는데, 특히 성소수자의 집단에서 이러한 차별 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남
- 성소수자의 집단의 경우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소수집단의 차별과는 다른 성격을 가짐

동성에에 대해서만 일단 이야기를 하면 이성에지라고 해서 놀라지 않잖아요. 동성에라고 하면 성적인 부분에만 집착을 하는 게 굉장히 많다. 사람의 존재 자체를 찬성과반대로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가장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이 사용되는 슬로건 주 하나가 "우리는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우리에는 어디에도 없다"이다. 실제로 성소수자를 연구하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국내 성소수자 인구를 추산한 결과를 보면 대략 4%에서 많게는 10% 정도까지도 보는데 이는 대한민국에서 강씨 성을 가진 사람들, 왼손잡이, AB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도 비유된다. 한번 쯤 성소수자를 마주치거나 우리 주변 사람들 중 밝히지는 못했지만 성소수자가 있을 수 있다. 같은 사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전주퀴어문화축제 관계자)

병리적인 현상으로서 개인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차별적인 행동들로 인해 성소수자들은 보통의 존재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가로서 내몰리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됨

활동가로서 고민하는 지점은 모든 성소수자들이 투쟁가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그냥 존재 할 뿐인데…사회에서 존재하지 못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저희 같은 경우 커뮤니티 단체일 뿐인데 운동을 하게 된다. 사회운동을 하고자 만든 게 아닌데 그렇게 하게 된다. 왜 이렇게 많은 품이 들어야 할까. 이렇게까지 많은 품이 들면 안 되는 건데 생각을 하게 된다.

(성소수자모임 '열린문' 관계자)

○ 소수집단의 경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경

험하거나 사례를 접하면서 본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격하는데, 이는 본인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개인의 안전을 위협받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임

주변에 알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했을 때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다…학생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모든 지원이 끊기는 것이 두려워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회사 직장인 분들은 실제로 성수자임을 밝혀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다.

관계단절에 대해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은데 가족들이 아반도주 하듯이 이사를 하거나 관계단절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폭력적인 부분들도 일어난다. 예를들면 때린다든가 반동성에 캠프를 보내거나 여성으로 패싱되는 퀴어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교정강간을 당한다든지…

(성소수자모임 '열린문' 관계자)

#### \* [사례 2] 차별적 프레임을 통해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

 사회가 만들어 높은 고정된 성역할과 생애주기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과 혐오 표현이 힘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시선에서는 이들의 주체적 삶의 방식이 미성숙하거나 불쌍한 삶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음

부정적인 시선이나 말들이 많았다. 여자들 모임이냐 하면서 선배 남성이 우리 남자들 모아서 집단 미팅하자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고 노년에 쓸쓸해서 어떻게 할거냐, 그 렇게 몰려다니니깐 결혼을 못하는 거다 라고 말도 들었다.

(비혼 공동체 관계자)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이나 자유로운 표현 행위들이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생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자극적인 언어나 사진들을 선별하여 집단을 상징하는 문화로 전달되고 있음

퀴어문화축제를 흔히 동성애의 논쟁으로만 이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으며 보수 개신교 집단에서 흔히 문란하다는 식의 프레임을 내세우는데 속옷을 안입거나 노출이 심한 자극적인 사진들을 올린다. 사실 축제라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어렵고 축제 자체에서 의도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작년에 축제를 진행했을 당시 그런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지역 맘카페나 기독교 블로그 등에서 현장을 가봤는데 다들 벗고 있다는 식의 글들이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퀴어문화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만들어가는 것 같다.

(전주퀴어문화축제 관계자)

예술활동에 있어서 장르별 고정관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으며,
 지역의 특성상 선호하는 장르가 있어 지원사업이나 활동 참여에 있어 배제를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함

지원 사업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헤비한 느낌의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듣기 거북하다며 배제되는 경우들이 있다. 사실 본인들이 거북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북한 것도 아니고 장르의 다양한 경험을 대중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상 국악으로 지원이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역의 인디음악을 하는 친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도 대부분 국악을 하는 친구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인디밴드 예술인)

#### \* [사례 3] 지원사업의 참여나 자발적 활동에서의 경험

지원사업이 청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지역 내 나타나고 있는데, 청년 지원 사업의 경우 단발성 위주의 사업이 많을 뿐이며 세대별로 지원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만을 고조시키며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할 뿐임

어디가나 '청년들만 너무 퍼준다'라는 식의 말들이 이제는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나오고 있다. 그거는 의미 없는 파이론 논쟁인 것 같다. 나한테 올 파이가 너한테만 쏠려있고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원사업을 통 해 어떤 부분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야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다보면 끝 도 없는 논쟁이 될 것이다. 그럼 지금 나도 예를 들어 무상급식이 약올라야하는 건 가. 그렇지 않다.

(귀촌 청년-완주 청년공간 플래닛운영)

- 위 사례와는 다른 관점으로 예술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예술의 영역에서 세대를 나누는 것은 작품의 다양성을 오히려 저해할 뿐이며 세대를 나누어 정책을 진행하기보다 세대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의 진행이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함
- 지원사업의 참여를 위한 심사를 담당하거나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활동
   을 지원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인사들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과 이해관계

에 대한 형평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실제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양성을 침해받을 수 있는 위험을 제기함

국악이 들어가야 지역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심사나 평가에 있어 심 사위원 배정이 너무 특정 장르의 관계자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인디밴드 예술인)

제2회 전주퀴어문화축제를 개최했을 당시 도 인권위원 중에 축제 관련 반대집회를 진행한 보수기독교 단체 관련자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정보를 접했다. 현재 교체는 진행되었지만 사실 도 인권위원 차원에서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행정기관에서 축제나 관련 행사에 지원을 적극 참여한다면 시민들의 인식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전주퀴어문화축제 관계자)

## \* [사례 4] 소수집단 내 분절된 차별의 경험

- 소수집단 내에서도 정책 지원에 있어 세대 간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례들
   이 제시되었는데, 이처럼 집단 간 차별뿐 만 아니라 집단 내 분절된 차별
   의 경험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수집단과 소수집단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소수집단과 소수집단, 소수집 단 내 개별적 갈등 등이 존재하는데 이처럼 소수집단 내 분화되어 나타나 는 갈등들은 집단의 와해와 극단적 대립구도를 형성할 수 있음
- 즉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소수집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인권과 젠더 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인권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할까요? 같은 페미니스트 집단 내에서도 여성의 범주에 대해 기본에 알고 있던 본질적인 범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여성만 챙기겠다'라는 의견도 있고…'젠더는 허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그런데 성소수자들한테는 이게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 같은 인권 존중을 외치면서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이러니다.

퀴어 집단 중에서 안티페미니스트들이 많다. 물론 스테레오 타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시스젠더 게이 분들 중에 안티페미니스트인 경우들이 많으며 혐오적인 발언들을 드러 내는 경우가 있다.

(성소수자모임 '열린문'관계자)

## 다.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제안

- □ 보편적 권리 이해와 인식 개선 사업 추진
  -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는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함
  - 문화다양성의 이슈들과 관련해서 삶의 다양한 형태와 가치를 반영한 인식 개선 사업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활동 지원에 있어 지자체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며, 지원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소수집단의 활동들에 대한 공적인 지지와 연대 가 요구됨

전주시의 경우 어느 정도 저희(전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소통을 하고 있고 면담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보는 자리를 갖기도 하지만 전라북도와는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다.…성소수자 부분에 대해 정책을 이야기하고 면담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축제 참여에 있어 행정기관들이 부스참여라도 한다면 저희입장에도 좋을 것 같다. 참가자들이 봤을 때 이 지역은 행정기관에서도 참여를 하고인식개선에 있어 많은 노력을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주퀴어문화축제 관계자)

- 소수집단을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과 거리두기는 개인의 무지와 잘못된 정보로부터 기인하며 활동가들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며 특별한 것 이 아닌 일상의 존재로서 익숙해지기 위한 시도와 표현의 창구들이 활성 화될 필요가 있음을 말함
  -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퀴어문화축제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산업으로써가 아닌 참여 구성원들의 결속력 강화와 더불어 해방된 주체로서 개인과 집단을 드러내기 위한 문화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거나 관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비혼의 경우 적절한 이해 없이 집단의 활동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 1인가구의 특성상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활동연대뿐 만 아니라 생활연대가 필요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사회적 낙인에 의해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우리끼리만 하면 어려우니깐 그리고 40대에 진입하기 시작한 때였고 이 이후의 삶은 조금 더 협력 관계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처음 그래서 공간을 구할 때 건물주인이 여자들만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한다니깐 이상한 종교모임 아니냐고…주변에서 왜 비혼을 이야기 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하나는 이야기도 들었고,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다. 당시 비혼이라는 낙인이 훨씬 더 컸고 무조건 결혼을 안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만 오는 곳으로…공개적으로 비혼이라는 것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담론을 만드는 장을 만들었다.

(비혼공동체 관계자)

#### □ 자발적 네트워크 조성 및 상시적 의견 수렴 필요

- 초기 정착 기반 마련을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단발성 지원 정책은 오히려 자생력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정책 행위자와 수혜대상 간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의견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 이 과정에서도 서로간의 견해차이가 나타남. 관련 시군 지역에서는 청년세대의 인구유 입과 영구적인 정착을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실시하지만 정작 청년들의 경 우 정착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무조건 여기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운 상태임. 지역에 대한 매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이주를 했지만 언제든지 새로운 환경과 활동들을 찾아 이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실제 지역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주민과 관계자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지만, 참여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거나 면식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있음

고충을 파악하고 사업에 이를 녹여내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불려 다니는 생각도 많이 한다. 같은자리에 있는 느낌. 그런 부분에 있어 지속적인 연결이 필요한 것 같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1년 단위인데 네트워크 모임들이 그렇다. 첫 주는 소개하고 익숙해지려고 하면 사업이 끝나는…그리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결국에는 지속적인 커뮤니티 유지가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또 이걸 억지로 묶는 것은 오히려 유지하기 어렵다.

(귀촌 청년-완주 청년공간 플래닛운영)

#### □ 활동가 역량강화 및 연대 사업 추진

- 단체와 집단을 대표하는 활동가의 역량강화는 활동지속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활동가들은 참여주체들의 연결고리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모색하는데 특히 상호 이해를 위해 끊임없이 담론의 장 으로 관련 주제들을 드러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갈등과 혐오가 개인의 무지와 잘못된 정보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에서 지속 적으로 관련 주제들을 노출시키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외부적으로 활동가들이 문화다양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 전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활동가 간의 연대 사업이 중요한데 이는 차별의 대상이 소수집단 내에서도 교차적으로 일어난다는 점과 단순히 집단이 속한 커뮤니티의 인식 개선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임
-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 이익만이
   아닌 사회 전체에 문화다양성에 대한 수용도가 제고되어야 하며 활동가들
   의 연대를 통해 다양한 삶의 가치가 보호되고 제시될 수 있어야 함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살아가면서 힘든 점을 공유하고 같이 고민해주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요즘에는 비혼여성 부모돌봄을 주제로 진행을 한다. 부모돌봄이 (형제, 자매 중)비혼 여성 개인에게 전가되는 문제, 더 나아가 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문제점들도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상황을 공유하면서 해결방법을 같이 고민하면서 돈독해지고 있다.

비혼여성아카데미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페미학이나 비혼 여성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대중강좌를 진행하는데…다음세대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세대별 고민 나눔을 통해 연대를 하고 대중적인 조직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비혼공동체 관계자)

#### □ 사회안전망 구축

- 혐오와 갈등의 대상으로서 그려지는 소수집단의 사회적 낙인을 없애는 것 도 커뮤니티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일 수 있음
- 정보제공자들은 국가·지자체에게 집단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사업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대우받고 외부 의 지나친 갈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이야기함

1인 가구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특히 주거와 관련 해서 평수를 제한하거나 대상의 범주를 한정 짓는…가족을 중심으로 기본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한다고 했을 대 비혼이라는 것도 사회 안에 공식적인 기준으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

(비혼공동체 관계자)

저희는 특혜를 바라지 않는다…예를들어 외부의 호모포빅한 활동이나 플랜카드가 걸려 있을 때 민원을 넣으면 좀 들어주고…사실 성평등 교육에 있어서도 복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사람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데 복잡한 것들은 빼버리고 그냥 양성에 치중된 교육을 하고 제3의 성이나 다른 젠더를 인정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미 사회가 갈등을 만들고 있는게 아닐까

(성소수자모임 '열린문'관계자)

## □ 정체성 표현과 이해의 창구로서 다양한 교류의 장 마련

- 문화의 공존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접촉 면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용공간의 확대와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 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의 마련이 필요함
-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며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소수집단의 모습을 자연스 럽게 알리기 위해서는 문화적 요소와 결합하는 사업 구상이 필요함

직접지원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대중 역시 공모사업으로 선택된 공연이나 장르중심으로 문화를 경 험할 수밖에 없다.

(인디밴드 예술인)

청년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마을공간이다. 많이 어우러지고 섞이면서 충돌도 하고 화해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과정인 것 같다.

(귀촌 청년-완주 청년공간 플래닛운영)

## 4. 분석 종합과 시사점

## □ 사업사례, 의견조사를 종합, 계획수립 방향 설정

- 다른 지역 사업과 정책연구 사례, 델파이조사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정책대상별 관계자의 심층인터뷰를 통한 실태와 과제 제안을 종합하여 전 라북도 제1차 문화다양성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정리함
- 구체적으로 △ 조례의 개정과 교육청 조례 제정, △ 선도과제로서 실태조사의 중요성, △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등 정책기반의 필요성, △ 문화다양성의 독자적인 사업 구상, △ 기존 사업의 개선, △ 광역 차원의 정책기반 마련과 사업 발굴, △ 소수자 대상 직접 사업보다 시민사회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중심의 사업 추진, △ 공공정책 추진 시 지침과 가이드라인 적용, △ 문화다양성의 상징적 선언, △ 예술 위주의 정책에서 문화로 확장, △ 전라북도 지역별 고요의 문화다양성 정립의 필요성, △ 정책대상별 소외도와 시급도, △ 정책방향의 우선순위, △ 혐오 표현의 금지에 대한 제도, △ 정책적 지원의 불균등 해소와 집단 내 분절적 차별의 해소 고려, △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가 역량 강화 필요성, △ 문화다양성 장소와 시설의 조성 등이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됨

[표 1-14] 사례·의견수렴·조사 분석의 주요내용과 전북정책 수립의 시사점

지역	주요 내용	전북정책 수립 시사점
	경기도와 경남에서는 교육청 조례 제정	전북교육청 조례 제정 추진
조례	실태조사를 최우선 과제로 실행	실태조사 선도과제로 추진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없음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필요(조례개 정-조항포함 검토)
	소수자 현황 파악 실태조사 사업이 가장 미흡, 정책기반(법·제도, 예산, 기구 등) 마련 부족	정책기반 마련, 선도전략 추진
사업   사례	다문화사업 중심, 문화다양성 독자 사업이 부족	독자적 문화다양성 사업 발굴
거네	대표 사업: 무지개다리사업, 문화다양성 날(주간)	무지개다리사업의 확대(개선)과 광역단위 문화다양성 주간 추진
연구 사례	소수자 대상의 직접 시업보다 시민사회 이해증 진을 위한 교육 중심의 인식개선 시업 강조	소수자 직접 사업에 앞서 시민사 회의 인식 개선을 우선 추진

	(정책방향) 공통적으로 소수문화 보호, 공존의 시민문화, 정책기반 구축 등 제시하고, 지역 특 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정립·활용방향 제시	
	행정·공공기관 정책개발 시, 문화다양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를 제안(서울연구원)	
	문화다양성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상징적 선언 이자 도시의 비전과 지자체의 의지를 담은 선언	
	다문화사업과 문화예술지원사업의 혼동, 문화다 양성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발굴 필요	다문화, 생활문화, 문화예술 지원 사업과 독립된 사업 발굴
	지역의 독특한 문화정체성과 지역 고유의 문화 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정립, 활용 시업 제안	
	전라북도 조례의 문화다양성 정의 개선 필요	예술 중심으로 문화로 확장되고, 예술표현을 넘어 문화다양성의 가 치에 주목하는 정의
	시업의 중요도와 시급도의 1순위: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우선과제로 설정
델파이 조사	정책대상별 소외도·시급도 조시결과, 장애문화, 성적지향, 민족·국적, 성별 등이 높은 순위	세부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으로 우선 고려하여 사업 구상
754	정책빙향 순위: 소수집단의 기본권 신장 및 권리 보호→집단 간 상호 이해 및 갈등 해결 등	소수집단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상호이해 교육 중요
	정책방향 수립 시 1순위 고려사항: 예술정책 중 심이 이닌, 사회 통합적 접근이 필요	예술에서 문화로 개념을 확장, 문 화다양성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책과제 발굴
	정책대상 관계자별 문화다양성에서의 문화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다름	도 정책에서 문화다양성의 '문화' 개념의 사회적 공유 필요
	혐오와 차별에 대한 표현의 금지 강조	혐오표현의 금지에 대한 제도
	시민들의 선호와 이에 기반 한 정책지원에 영향 을 받아 특정 장르에 활동 집중되는 현상 발생	예술활동 지원에 있어 다양한 장 르가 지원받도록 지침 필요
인터뷰 조사	정책적 지원의 불균등에 대한 정책대상 간 갈등	청년-기성세대 간 사업지원에 대 한 불평등 논쟁 해소책 필요
	정책지원 심의위원 중 문화다양성 이해가 부족 하거나 갈등이 있는 정책대상 관계자가 참여	정책지원 사업의 문화다양성 지침 과 가이드라인 제작, 권고
	집단 간 치별만이 아니라, 집단 내 분절된 치별	집단 내 분절적 차별에 대한 사 례 수집과 다양성 이해 사업
	자발적 네트워크 조성과 상시적 의견수렴, 활동 가 역량강회와 연대(교류)시업 필요	소수집단 역량강화와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 사업 구상
	다양한 문화 간 교류 및 공존의 문화가 형성되 기 위한 문화다양성 관련 장소·시설이 필요	다양한 문화를 통합하여 체험하는 다문화통합 공간·문화원 구상

#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

- 1. 정책 방향
- 2. 비전과 모표
- 3. 실행 과제
- 4. 중기 과제
- 5. 추진과제 종합

## V.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

## 1. 정책 방향

## 가. 계획수립의 방향

- □ '문화적 권리'로서 문화다양성 정책과제 발굴
  - 한국에서 실천되고 있는 문화다양성정책은 첫째, 사회 통합적 접근과 둘째. 무화적 예외차워의 접근으로 나누어짐
    - "사회 통합적 접근법이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접근방법. ··· 문화적 예외차원의 접근법이란 국가사화문화 간의 소외에서 문화독재를 견제하고 다양한 기초예술, 순수예술, 독립예술 등을 시장의 경제논리에서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접근방법"(문화체육관광부, 2018: 27)
  - 문화적 예외차원의 접근은 예술지원정책이나 문화향유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실행계획과 관련하여 기존의 다문화 정책이나 문화다양성정책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사회 통합적 접근법' 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함
  - 사회 통합적 접근법은 소수자 인권 보호와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문화적 권리의 개인(소수집단)적 보장이 중요함<sup>24)</sup>
  - 문화적 권리는 개인적, 집단적,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기존 문화향유정책과 유사한 개인적 차원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주권 수호가 핵심인 국가적 차원의 문화적 권리는 제외하고 소수집단적

<sup>24)</sup> 문화적 권리(문화적 권리)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세계인권선언부터 유네스코협약에 이 르는 과정에서 국가 간 이해가 대립하면서 축소되거나, 협약에 정의된 내용에 대해서 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음(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임)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사회 통합적 접근방법을 적용하고자 함

- 문화다양성정책은 관내 거주주민의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술 중심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적 권리로서 문화다양성정책을 구상함
- 문화적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세계인권선언 이후 유네스코에서 정리된 내용을 일차적으로 준용하되. 세부 권리와 영역은 전라북도 여건에 맞춰 재구성함



[그림 3-8]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의미변화

자료: 김남국, 2010: 277 참조

## □ '소수문화 권리', '공존의 문화', '정책 기반을 핵심영역으로 설정

- 정책현황과 국내·외 사업사례, 전문가조사와 관계자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지역에서의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은 소수문화의 권리, 공존의 문화, 정책기반이라는 키워드가 도출됨
- 전라북도 실행계획 또한 세 가지 방향을 중심을 정책과제를 발굴하되, 첫 번째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소수문화 권리증진과 공존의 문화 형성을 위 한 정책기반 마련을 우선 추진할 정책방향으로 설정함
- 또한 소수(개인·집단)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은 직접적이고 즉각
   적인 정책영역인 반면, 공존의 시민문화 형성은 간접적이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임
- 소수문화의 보호와 권리 증진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 증진과 인식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행계획 기간에 공존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사업을 집중시키고자 하며, 소수문화의 권리증진에 관한 정책은 제도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함

#### □ 광역 단위의 통합적이면서 단계적인 과제 발굴

- 문화다양성은 일부 특정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해당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 부서가 전담하지 않고 전라북도 모든 부서가 문화 다양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통합적인 체계와 부서 융합적 통합 과제를 발굴함
- 계획기간(2년: 2021~2022) 내에 실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거나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예, 시설 조성)은 다음 실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중기과제로 설정함

## 나. 정책대상

## □ 사회적 소수자 중심, 사회적 약자 포함

-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정책에서 다루는 정책대상은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를 모두 포함하지만, 특히 사회적인 차별 관행을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 집중하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사회적 소수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른다 해도 사회적 소수자 위치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반복적인 차별 관행을 받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에 집단의식이 높으나 교류가 집단 내에 그치는 이들을 말함
  - "소수자는 민족,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세대, 장애와 같은 선천적 요인에 의한, 즉 태생적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약자는 종교, 혼인, 소득, 전통, 지역, 예술취향 등 특성이 후천적 요인에 의해 스스로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뉜다."(김면, 2017: 33~34)

[표 4-6]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특징

항목	성격과 특징	사회적 범주 유형
소수자	영구성/특수성/집단의식/선천성	민족/국적/성별/성적지향/세대/장애
사회적 약자	한시성/환경요인/이탈가능성/선택성	종교/소득/혼인/지역/전통/예술

• 소수자(minority)는 "사회에서 권력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단순히 '소수의 사람'처럼 구성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아니라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는 이들을 말함(이경희, 2015: 26)

전라북도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소수자는 개별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라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는 집단을 의미하며,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집단을 뜻함

## □ 문화다양성 정책대상 설정과 분류

다른 지역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정책대상
 과 범주를 재설정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정부정책과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대상의 분류를 준용함

[표 4-7] 문화다양성 분류체계(Dimensions of Cultural Diversity) 및 내용

분류영역	내용구성
민족(Ethnicity; Race)	한국사회에 이주한 타민족, 타인종 집단으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귀화자 및 결혼 이주자 등
국적(Nationality)	국내 이주한 집단으로 타국적 소지자로, 외국인 外 외국적 동포, 북한에서 이탈한 새터민 포함
성별(Gender)	성별에 따라 집단별로 공유되고, 창조되는 문화
장애문화(Disability)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활동에 결함이 있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적 정체성이 다른 집단으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등 포함
세대(Age)	연령에 따라 세대별로 형성하는 집단문화로, 아동문화, 청소년문화, 노인문화 등
종교(Religion)	다양한 신앙, 교리 및 영적 생활을 수행하는 집단들 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원불교 등 포함
소득(Income)	가계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상대적 소득수준의 격치와 분포에 따라 형성된 생활문화양식
혼인(Marital Status)	남녀 간 혼인을 이루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독립기구 를 이루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임
전통(Tradition)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민족의 고유문화
지역(Geographic Location)	각 지역이 가진 특색 있는 고유성을 가진 문화
예술취향(Arts)	기존 문화예술 장르 및 주류예술을 벗어나 다양한 예술 형태와 취항을 표현하며, 순수문화, 대안문화, 독립문화, 인디문화 등 포함

참조: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75쪽

## 2. 비전과 목표

#### 가. 비전

- □ 공존의 문화로 공생사회 창의전북 실현
  - 공존(共存)의 문화: 다름을 차별하지 않고, 차이를 즐기고 향유하며, 모든 문화가 존중 받으며 공존하는 시민문화를 의미함
  - 공생사회(共生社會): 전라북도 중장기 미래비전(혁신하는 경제, 더불어 사는 전북)의 핵심전략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과 환경파괴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두가 사람다운 삶을 더불어 누리는 사회



[그림 4-15] 전라북도 중장기 미래비전 : 공생사회

○ 창의전북(創意社會): 기존과 다른 새로운 생각·개념을 발굴하거나 기존의 생각·개념을 새롭게 조합하는 정신·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문화의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는 전라북도를 구현함

## 나. 목표

- □ 첫째, 공생사회의 원리로서 문화다양성의 확산
  -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기본원리로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정립하고, 문화다양성 정책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시킴
  - 다수문화와 소수문화의 접촉면을 늘려 다른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임
     으로써 모든 문화가 존중 받는 공존의 문화를 확산시킴

## □ 둘째, 다름을 즐기고 활용하는 창의전북 구현

- 문화 간 다름을 이해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다름이 곧 문화임을 인식하고, 다름(차이)을 향유하는 정책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함
- 전북 내 지역·계층·집단의 문화다양성을 조사·정립하고, 전북의 다양한 문화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환경을 조성함
- 제2차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핵심가치인 '창의혁신'과 연계 하여 지역의 고유한 문화다양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혁신함

## 다. 전략

#### □ 첫째, 광역 단위 문화다양성 정책 기반 마련

- 전라북도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다양성 정책은 일부시군 문화재단에서 정부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도 조례에 근거하여 광역 단위의 문화다양성 정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문화다양성 정책을 위한 제도와 전담기관을 마련하고, 소수문화 간 협력 체계와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 □ 둘째, 접촉면 확대를 통한 공존의 문화 형성

- 2년이라는 실행계획의 짧은 기간을 감안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정책대상별로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시민사회 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학습과 접촉기회 확대에 집중함
-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교육교재·콘텐츠 개발을 비롯하여 학교 및 사회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추진함

## □ 셋째, 전북의 문화다양성 조사·정립 및 육성

 역사적으로 전북 지역별로 형성된 다양한 문화를 조사 정립하여 지역의 창의혁신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구상·추진함 ○ 전북에 존재하는 정책대상별 문화를 교육·체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콘텐 츠를 개발하고, 이를 지역의 특화 콘텐츠로 발전시킴

비전

## 공존의 문화로 공생사회 창의전북 실현

목표

- \* 공생사회 원리로서 문화다양성의 확산
- \* 다름을 즐기고 활용하는 창의전북 구현

## 전략 1 광역 단위 문화다양성 정책 기반 마련

- 가. 전담기관 지정과 문화다양성센터 운영
- 나. 현황·사례 중심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와 활용
- 다. 문화다양성 지침·가이드라인 제작·권고와 적용
- 라. 문화다양성 조례 제·개정과 제도 마련

## 전략 2 접촉면 확대를 통한 공존의 문화 형성

- 가. 문화다양성 교육교재·콘텐츠 개발과 교육 실시
- 나.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주간 지정, 페스티벌 개최
- 다. 문화다양성 공공 캠페인과 일반 공모전 추진
- 라. 기관 연계, 외국문화향유·국제교류 사업 확대

## 전략 및 과제

## 전략 3 전북의 문화다양성 조사·정립 및 육성

- 가. 문화다양성 확장 위한 소수문화 역량강화, 네트워크
- 나. 지역 고유의 문화다양성 조사와 DB 구축
- 다. 전시 콘텐츠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라. 문화다양성 리빙랩: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가치 확산

## 가. 소수문화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및 체계 마련

지역차원의 소수문화 권리보장 제도 마련 조례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

## 중기과제

## 나. 문화다양성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전라북도 문화다양성(문화권) 선언 소수문화의 일상화 및 생활화 지원

## 다. 문화다양성 활용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문화다양성박물관 조성, 국립인류학박물관 추진 다민족·다종족 통합문화원 조성, 통합행사 개최

[그림 4-16]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의 비전전략 체계도

## 3. 실행 과제

## 전략 1

## 광역 단위 문화다양성 정책 기반 마련

## 가. 전담기관 지정과 '문화다양성센터' 운영

## □ 사업목적

- 전문적인 문화다양성정책을 추진하고, 시행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정 책과제를 총괄하여 전담하는 구심체가 필요함
  -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담기관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집단 간 교류·연대를 강화함
- 침해 또는 차별을 받는 소수자·집단의 권리 보호와 침해구제부터 공존의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문화다양성 자원의 활용 등 전담기관이 중심이 되어 현장 친화적 사업이 추진되도록 실무 전담부서가 필요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2022년

○ 전담기관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 사업예산 : 200백만원 (지방비 100%) \*무지개다리사업 연계 검토

- 전북문화다양성센터와 문화다양성 포럼 운영 : 연 100백만원×2개년=200백만원

- 사업내용
  - 재단 내 전북문화다양성센터 설립·운영
  - 문화다양성침해구제위원회(센터) 구성·운영
  - 전북문화다양성 포럼 운영

#### □ 추진방안

-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전라북도조례에는 문화다양성위원회 조항만 있고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조항은 없는 바. 조례 개정을 추진 : 전담기관 지정과 주요 업무, 재정 지원 조항 신설
- 전담기관의 주요 업무 (예시)
  - 문화다양성 실태와 현황 조사 사업,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과 행정·공공기관 관계 자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사업, 문화다양성 협의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문화다양성 성 정책연구과 연구지원 사업, 문화다양성 교육 및 홍보 사업, 문화다양성 침해구제 사업,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행·재정 서비스 지원 사업 등
- 자문기구이자 침해대책기구로서 (가칭)'문화다양성침해구제위원회'설립
  - 재단 내 독립부서 또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센터'를 설립하고, 센터 내 문화다양성침해구제위원회(또는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 문화다양성 권리침해 및 차별 피해자 상담 지원, 구제조치·처리와 사전 예방 정책 수립 등을 목적으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대책위원회를 구성
  - 기능 : 문화다양성 권리침해 및 차별 관련 대책 마련과 정책 제안, 상담 처리 건, 문화다양성 침해와 차별에 대한 공적 제재(또는 제재에 준하는) 방안 마련 등
- 문화다양성 '포럼' 운영
  - 조례에 의한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예비단계 성격으로 소수자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 하는 문화다양성 포럼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주제별 행사를 개최
  - 연 4회 개최 : 분기별 주제를 정해 외부전문가 참여, 정책토론 형식으로 진행

#### ○ 연차별 추진일정

연도	주요내용
2020	•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계획 수립 : 지원 예산 확보
2020	• 전담기관, 문화다양성센터, 포럼 등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2021	• 전담기관 지정, 전담기관 내 문화다양성센터 설립
2021	• 문화다양성 포럼 구성 : 분기별 개최 (12월 종합토론회 진행)
2022	• 문화다양성침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2	• 제2차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실행계획(2023~2024) 수립

#### □ 참고자료

- (시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가칭) 구성(안)
  - (운영기간) 2021년 1월~12월
  - (사 업 비) 3,000천원
  - (주요내용)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구제조치·처리와 사전예방 정책 수립 등을 목적으로 민간전문가 참여의 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수립
    - 구성 : 성희롱·성폭력 등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 위원 : 총 10명 내외(외부 8명, 내부 2명 ※사무처장, 예술인복지증진센터장
    - 역할 :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대책 마련 및 정책제안, 상담센터 처리 건. 수사기관·처리사건에 대한 공적제재 방안 심의
  - (담당부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내 문화사업팀(예술인복지증진센터)
- (사례)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 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현황·사례 중심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와 활용

#### □ 사업목적

- 델파이 조사결과, 문화다양성 주요 사업 중에서 중요도와 시급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실태조사가 나타났으며, 실제 실증적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의 현황과 실태가 파악되어야 함
- 실태조사가 지속되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현황이 조사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바, 정책현황과 주민인식 조사 외에 문화다양성 침해 및 피해사례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례를 병행함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를 통하여 문화다양성이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소수문화가 어떻게 차별 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임
- 실행계획기간(2년) 단위로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현황(지원정책, 기반 여건)과 주민인식을 조사하고, 수시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및 침해·차 별사례를 파악·정리하여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추진기관 :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2022년 신규사업화,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의한 연구용역 추진

○ 사업예산 : 100백만원 (지방비 100%)

○ 사업내용

-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지표 설정 : 문화체육관광부 지표 활용

- 정책현황(행정통계) 및 도민인식(설문)조사

-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및 침해·차별사례 조사

- 주요 통계와 사례조사 주요내용의 정보제공 서비스 : 출판, e북, 동영상 등

#### □ 추진방안

-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지표(안)
  - 문화체육관광부 실태조사 지표와 지자체 실태조사 지표를 참조하되, 도민의 문화다양 성 인식제고를 위한 사례조사 내용을 주요 지표에 반영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의 4대 지표(정책, 여건, 활동, 인식) 중 활동 영역을 사례 조사와 관련된 지표로 변경, 보호와 증진, 침해와 차별 지표를 포함

[표 4-8]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실태·사례조사 지표

구분		주요 지표
	정책	전라북도 관련정책 수립, 실행, 예산 현황
전라북도	여건	문화다양성 범주별 시설, 자원, 인력 여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인식	문화다양성 인지도, 수용도, 참여도, 평등도
	사례	문화다양성 범주별 보호, 증진, 침해, 차별 사례

- 정책과 여건은 행정통계, 인식은 조사통계, 사례는 질적 조사를 병행
  - 정책·여건지표 세부내용은 전라북도와 시군별 행정망을 활용하고, 인식지표 세부내용 은 인구비례에 의한 양적 조사를 통하여 정리
  - 사례조사 세부내용은 문화다양성센터의 침해 구제 상담 내용, 문화다양성 범주별 단체 및 관계자의 심층 인터뷰, 언론 등의 보도내용 등을 활용하여 수집, 정리
- 실태조사를 위안 분류 체계(안)
  - 문화체육관광부 실태조사 분류체계 준용 : 민족(Ethnicity; Race), 국적(Nationality), 성별(Gender), 장애문화 (Disability),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세대(Age), 종교 (Religion), 소득(Income), 혼인(Marital Status), 전통(Tradition), 지역(Geographic Location), 예술취향(Arts)

## ○ 연차별 추진일정

연도	주요내용
2021	• 실태조사 및 사례조사 계획 수립(전담기관)과 예산 확보 • 전담기관 주관, 문화다양성 피해·차별, 보호·증진사례 일상 수집
2022	• 실태조사 및 시례조사 진행 : 연구용역 • 실태조사 및 시례조사 결과물 출판, 배포, 서비스 제공 (결과 정책 반영)

## □ 참고자료

○ 전라북도 조례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 4. 주요 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타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사례

구분	주요 지표	
	인식지표	인지도, 관심도, 필요도, 수용도, 포용도
무취레이기가난 되표	활동지표	인지도, 친밀도, 포용도, 수용도, 만족도
문화체육관광부 지표 	정책지표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여건지표	기반시설여건, 자원여건, 지원인력여건
	정책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인천시(인천연구원)	여건	시설여건, 지원여건, 인력여건
[ 건전시(건언건구편)	활동(소수자)	인지도, 수용도, 참여도, 평등도
	인식(일반)	인지도, 수용도, 참여도, 평등도, 찬반여부
	지원정책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고양시(고양시정연구원)	기반여건	기반시설 여건
	인식(일반)	인식수준, 문화예술적 참여와 표현, 수용도 등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8집, 2019)
  - ○○단 예술감독의 성희롱, 직장상사의 여성 직원 성희롱, 컨설팅업체 팀장의 직원 성희롱, ○○○업체 대표의 소속직원 성희롱, ○○○업체 본부장의 직원 성희롱, ○○○ 부품 제조업체 직원의 성희롱, 초등학교 교감의 여성 교사 성희롱, ○○ 개발회사 팀장의 직원 성희롱, 요양원 사회복지사의 성희롱, ○○○회사 지점장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 공직유관단체장의 성희롱, 현장소장의 주차정산원에 대한 성희롱, 도의회 공무원의 하급직원에 대한 성희롱, 상사 및 동료직원의 성희롱 등

## 다. 문화다양성 지침·가이드라인 제작·권고와 적용(시범시업)

## □ 사업목적

- 지자체,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사회적 파급력이 큰 방송·영화·인터넷·미디 어 등에서 타문화와 소수문화에 대한 폄하·비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 다양성 존중을 위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함
- 폄하·비하 방지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정책을 개발하거나 홍보자료를 제작하거나 행사를 기획할 때 문화다양성 가치가 담겨지도록 지침과 가이 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권고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2022년

○ 추진기관 :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2021년 신규사업화, 전문조사·연구기관에 의한 연구용역 추진

사업예산: 50백만원 (지방비 100%)

○ 사업내용

- 전라북도·시군 공공정책, 기관운영, 홍보, 인력활용, 사업실행 시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사업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지자체·기관 등에 배포, 활용 권고
- 전라북도 문화정책 개발과 예산 지원사업 시행 시 가이드라인 실행 모니터링 추진

- 문화다양성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작 분야(예시)
  - 지자체 공보·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예, 가족·집단 이미지가 포함된 포스터 제작 시, 다양한 인종과 종족이 포함시키고, 가족 구성원과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배제)
  - 신규 정책(사업) 발굴, 문화 분야 예산 지원 사업의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인력 구성, 문화시설의 문화다양성 기준. 배리어프리 환경. 소수문화를 위한 복리후생 등

- 문화다양성 지침·가이드라인의 적용 모니터링 : 시범사업 추진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지원 사업의 문화다양성 적용 지침 마련, 시행 : 재단의 지원 지침과 사업 참여자·단체의 사업시행 시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 적용 모니터링(자체 체크리스트 개발하여 제공, 자가진단과 전문가에 의한 종합진단 실시)
- 연차별 추진일정

연도	주요내용
2020	• 지침·가이드라인 계획 수립과 2021년 신규 사업 예산 확보 • 지침·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기초 연구(전담기관, TF팀 구성)
2021	<ul> <li>문화다양성 지침·가이드라인 제작 연구용역 실시(또는 전담기관 대행)</li> <li>지침·가이드라인 책자·e북 제작, 지자체·공공기관·문화단체 배포</li> <li>지침·가이드라인 적용 시범사업 계획 수립(전담기관)</li> </ul>
2022	• 지침·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선정, 적용, 모니터링, 종합평가 실시

## □ 참고자료

- 성소수자 친화적 직장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북(SOGI법정책연구회)<sup>25)</sup>
  - 구글과 인권재단 사람의 '무지개인권프로젝트-온' 사업의 일부, 다양한 사례와 리서치를 기반으로 왜 '다양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함과 동시에 중요한지를 상세하게 설명



2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3694

## 라. 문화다양성 조례 제·개정과 제도 마련

#### □ 사업목적

- 2019년에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개념정의와 정책기
   반 등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필요함
  - 전라북도 조례의 '문화다양성 정의'에 대한 내용을 정책 활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5.9%(22명)가 보완·수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문화다양성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정규 교과정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대상의 문화다양성 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함
  - 경상남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지자체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 대상의 문화 다양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자체·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육 사업을 구상함
- 전라북도 정책을 개발할 때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이 적 용되고 있는지를 행정이 자체 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체계) 이 필요함
  - (사례) 서울시는 행정문서 작성 시 사전에 검토할 사항을 규정: 시민 참여, 전문가 참여, 갈등, 사회적



[그림 4-17] 서울시 공공문서 사전 검토항목 서울연구원(2017),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109쪽

약자 배려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자체 검토하도록 제도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2022년

추진기관: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전라북도교육청

○ 사업예산 : 비(非)예산 사업

○ 사업내용

- 전라북도의회와 협력, 전라북도 조례 개정
-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정 요청
- 전라북도 행정문서 문화다양성 체크리스트 제도화

- 조례 개정 주요 내용
  - 문화다양성 정의 : 예술에서 문화로 범위 확장, 예술표현에서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가 치를 강조, 집단과 사회 중심에서 개인과 소수자까지 정책적 범위 확대 등
    - 조례 개정 시 고려 사항 : 델파이조사 결과
    - 1순위 고려사항(86.4%) : '현재의 정의는 예술·문화유산 중심이기 때문에 문화로 개념 확장', '예술표현(창작)을 넘어 사회문화적 현상에서 문화다양성 가치 주목'
    - 2순위 고려사항(81.8%): '집단과 사회 중심 영역에서 개인과 소수자를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정책적 범위 확대 필요'
    - 3순위 고려사항(68.2%):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 구체화 필요'
    - 4순위 고려사항(59.1%): '일상문화(생활문화)를 포함한 문화 범위 확대'
    - 5순위 고려사항(50.0%): '차이의 강조보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강조'
  -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개정 : 실행계획 수립(현재 권고),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현재 권고), 실태조사(현재 권고), 문화다양성 교육(현재 권고), 전문인력 양성(현재 권고) 중 실행계획 수립,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실태조사에 대해 의무화
  - (신규 포함)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관련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
-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정과 문화다양성 체크리스트 제도화
  - 도교육청과 업무회의(2020년 하반기) 추진, 조례 개정과 공동사업 협력(2021년)
  - 도 문화체육관광국,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상의 체크리스트 시범사업 추진(2022년)
- 연차별 추진일정

연도	주요내용
2021	전라북도 조례 개정 추진 : 전라북도의회 협력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정 추진 : 도교육청-문화예술과 협의
2022	• 정책개발 및 공공문서 작성 시 문화다양성 체크리스트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후 전라북도 전 부서 확대 여부 검토

## 전략 2 접촉면 확대를 통한 공존의 문화 형성

## 가. 문화다양성 교육교재·콘텐츠 개발과 교육 실시

#### □ 사업목적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소수문화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사회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

000

-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중요도·시급도)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소수집단의 기본권 신장 및 권리보호(1순위), 집단 간 상호 이해 및 갈등 해결(2순위) 순으로 나타났음
- 집단 간 상호이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수자가 아닌 다수자를 대상으로 소수문화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공통적으로 활용될 교재와 교육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 학교와 사회, 세대·계층별로 구분된 교육교재와 교육콘텐츠(프로그램)를 개발하여 지자체·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2022년

○ 추진기관 :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전라북도교육청 협력)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문화예술교육사업 예산, 기관별 교육사업 예산 활용

- 교육교재 개발 연구용역 50백만원(2021년), 교육 전문인력 양성 30백만원(2022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20백만원(2022년, 도교육청 매칭비 제외)

## ○ 사업내용

- 문화다양성 교육교재 개발 연구용역
- 기존 사업(문화예술교육) 활용, 문화다양성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인력 양성
- 전라북도교육청·지자체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 추진방안

- 문화다양성 교육교재와 교육콘텐츠 개발
  -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거나, 전담기관 주관으로 TFT를 구성, 개발
  - 한국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한 연구결과와 시범실시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참조하되, 학교 와 사회, 세대와 계층 등을 세분화하여 특화형 교육교재와 콘텐츠를 개발
  - (콘텐츠 예시) 도교육청 '놀이밥 50+'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다양성 놀이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활동(연극, 미술, 영화 등)과 연계한 예술형 문화다양성 교육콘텐츠 등
- 문화다양성 교육 인력 양성(교육 전문성 함양)
  - 학교교원, 문화예술강사, 학교예술강사, 인문학강사, 평생교육사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 양성 이해, 문화다양성 교육 방법, 문화다양성 교육 내용 등에 대한 (의무)연수 실시
- 개발된 교재·콘텐츠 활용. 교육사업 확대
  - (공공기관 구성원 교육) 공공기관(지자체·출연기관) 교육,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연계 문화다양성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자체 청원교육(특강) 등 추진
  - (문화시설 연계 도민 교육) 문화시설 활용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사업 추진단체 관계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기존 시민대학·인문학강좌 활용 교육
  - (교육청 연계 학생·교사 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과 학교예술강사 교육 프로그램 활용, 초·중·고 정규교과과정화 추진

## ○ 연차별 추진일정

연도	주요내용
2020	• 교육교재와 교육콘텐츠 개발 관련 2021년 신규 사업 예산 확보
2020	•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 관련 공동사업 발굴 협의 (공동추진단 구성)
2021	• 대상별 교육교재 및 교육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추진(또는 전담기관 대행)
2021	•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 시범 교육 추진 (교사·학생·공공기관 대상)
2022	• 기존 교육기관 활용 교육 사업 확대, 도교육청 연계 학교 내 교육 추진

#### □ 참고자료

○ 전라북도 조례: 문화다양성 교육(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제9조)

제8조(문화다양성 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약, 법령·정책의 내용 및 국내외 사례
- 2.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내용
- 3.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실천방안
-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하여 표준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 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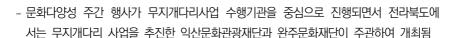
- 일반인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사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 '일반인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시범연수 운영' 참조

	초급단계	중급단계	고급 단계
	(개인 영역)	(공통체 영역)	(국가와 세계 영역)
주제 1. 생활문화	생활 속 낯설음과의 만남	생활문화의 이해와 소통	삶의 질과 문화다양성
주제 2. 세 대 세대문화 이해		세대문화 간 소통	세대 간 공존과 사회통합
<sup>주제 3,</sup>	지역문화 다양성의 발견	다양한 지역, 다양한	글로벌시대
<b>지 역</b>		문화공동체	지역문화공동체
주제 4.	여성성·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성역할과	성평등과
<b>젠 더</b>	인식의 전환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시대
주제 5. 예 술	예술표현의 다양성	예술과 문화정체성	예술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의 증진
주제 6.	다른 민족문화에 대한	다문화간 소통과 수용	다문화사회.
<b>인종(민족)</b>	이해		공존을 위한 지혜
주제 7, 전 통	전통을 바라보는 시각	전통의 가치와 문화다양성	전통과 현대, 문화적 교류
주제 8.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	소수자에 대한 공감과	다양성의 공존과
<b>소수자</b>		포용	평등사회

## 나.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주간 지정과 페스티벌 개최

#### □ 사업목적

- 문화다양성법(제11조)에서 문화다양성의 날과 문화 다양성 주간을 명시(제1항)하고 있으며, 2015년부 터 매년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월21일)로부터 1주 일 간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현재 일부 지역 주관으로 추진되는 행사를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환하여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주간'을 지정하고, 14개 시군이 모두가 참여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함



##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2년 (시범사업)

○ 추진기관 :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전담기관 연계)

○ 사업예산 : 100백만원(국비 50%, 도·시군비 50%) \* 무지개다리 사업 활용

○ 사업내용

-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주간 지정

-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개최

-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포럼 개최

- 문화다양성 주간 지정과 페스티벌 개최
  - 전라북도 조례에 문화다양성의 날과 주간 지정, 페스티벌 개최 조항 포함(개정)
  - 조례 개정과 무관하게 시범사업으로 문화다양성 주간 지정과 페스티벌 개최: 전라북도

#### 대표행사와 시군별 자체 행사를 기획

- (가칭)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추진위원회 구성 : 전담기관, 소수문화단체, 시군 문화재 단(무지개다리사업 추진기관), 기타 문화단체가 공동으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실무진을 구성
- 페스티벌 기간에 문화다양성 포럼 개최
- 전라북도 내 문화다양성 이슈에 대한 종합 논의의 장을 마련

## ○ 연차별 추진일정

연도	주요내용	
2021	• 문화다양성 주간 지정과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준비위 구성 (문화재단 관계	
2021	자, 소수문화단체 관계, 문화단체 관계자 등 참여)	
2022	• 문화다양성 주간 지정 및 페스티벌 시범 개최	
2022	•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추진위 구성 (전담기관 연계)	

## □ 참고자료

○ 2019년 문화다양성 주간의 전라북도 행사내용

기 관 명	프로그램명	세 부 내 용
공동	호남권 문화다양성 포럼	* (포럼) 호남권 문화다양성 포럼  ○ 일시 : 2019.5.21.(화) 14:00~18:00  ○ 장소 :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  ○ 내용 : 문화다양성 기반 문화도시와 도시재생(익산·완주·광주·전남 문화재단 네트워크)
익산문화 관광재단	다가치 페스티벌	* (축제) 다가치 페스티벌  ○ 일시: 2019.5.25.(토) 15:00~19:00  ○ 장소: 익산 영등시민공원  ○ 내용: '인연의 끈' 521 한가지약속 캠페인, 어울림 축제(세계의 다양한 놀이·먹거리·의상체험, 문화다양성 도서·영상전시 및 블라인드 북, 다가치협의체 기관들의 편견·차이를 깨는 체험 프로그램, 세계 전통 공연과 플래시몹)
완주 문화재단	2019완주 문화다양성 영화제 '되어보는 영화제'	* (영화제) 2019 완주문화다양성영화제 '되어보는 영화제'  ○ 일시: 2019.5.23(목)~5.24(금)  ○ 장소: 완주 휴 시네마  ○ 내용: 영화프로그램(한국단편 8편, 한국장편 2편, 애니메이 션 7편 상영), 감독과의 대화(메리크리스마스 미스터모 임대 형 감독, 언프리티 영미 이영미 감독), 체험부스 등

자료: 정보람(2019),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보고서

## 다. 문화다양성 공공 캠페인과 일반 공모전 추진

#### □ 사업목적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에서 모든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
   가 다름을 향유하는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공캠페인을 진행함
- 일반인의 문화다양성 관심을 높이면서, 대중적인 홍보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다양성 인식제고에 활용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2022년

○ 추진기관 : 전라북도 문화예술과(홍보기획과), 문화다양성 전담기관

○ 사업예산 : 20백만원 (지방비 100%)

- 문화다양성 홍보콘텐츠 일반 공모전 10백만원 × 2년 = 20백만원

○ 사업내용

- 전라북도 공공 캠페인 추진 : 기존 공공 캠페인 사업 활용

- 청소년·대학생 대상 문화다양성 영상콘텐츠 공모전 추진

- 전라북도 기존 공공 캠페인 사업을 활용, 문화다양성 캠페인 추진
- 전담기관 주관으로 동영상 콘텐츠 전국 공모전 진행
-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 연계 콘텐츠 공모
- 연차별 추진일정

연도	주요내용	
2021~	• 상반기 공모전 개최, 문화다양성 주간(페스티벌)에 심사 및 전시 • 전라북도 공공 캠페인 추진 (연 1회 실시 : 실무부서와 협의)	

## 라. 국제교류기관·외국문화원 연계. 외국문화향유·국제교류 사업 확대

#### □ 사업목적

-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와 대학별 국제교류센터를 연계하여 지역 내 국제 문화교류사업과 행사를 확대 추진함
- 외국문화원의 지역 내 사업을 유치하고, 지역 문화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한 국가별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지원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추진기관 : 전라북도 문화예술과(홍보기획과), 문화다양성 전담기관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국가별 문화행사 개최 지원 100백만원 (행사별 차등 지원, 최소 3권 이상 지원)

- 국제교류센터와 대학국제교류센터 연계 사업 : 기존 사업(예산) 활용

#### ○ 사업내용

-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연계, 국제문화교류 사업 확대 추진
- 대학국제교류센터 연계, 외국인대학생 국가별·종합 페스티벌 개최 지원
- 외국문화원 연계, 국가별 문화행사 개최 지원

- 대학국제교류센터 연계, 국제문화교류 사업 활성화
  - 전담기관이 대학국제교류센터와 공동 사업을 협의, 지원 계획을 수립
  - 전라북도 문화 관련 지원 사업을 활용, 대학교류센터의 지역문화교류사업 연계 추진
- 전라북도 국제문화교류센터 연계, 국제문화교류 확대
-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와 전담기관 협의, 공동 추진사업 발굴, 문화단체 연계 추진
- 외국문화원 및 국가별 대학생모임과 문화단체 연게, 외국문화향유 지원

- 전담기관이 전라북도 문화단체와 외국문화원과의 공동사업 혹은 협력사업에 대한 매개 역할을 담당 : 전라북도 외국문화향유를 위한 외국문화행사 개최 지원
- 외국문화원과 연계하여 내국인의 외국문화 향유모임(동호회) 및 행사, 축제 등 지원: 내국인의 국가별 문화향유모임 및 동호회 지원(공모 방식), 내국인의 외국문화 향유모 임에 대한 국제교류 지원, 국내 개최 외국문화축제 및 해당 축제의 국제교류 지원

## ○ 연차별 추진일정

연도	주요내용	
2021	• 관련 국제교류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공동사업 발굴, 계획 수립	
2021	• 외국문화원 연계, 외국문화 향유행사 계획 구상 (문화단체 협의)	
2022	• 국제교류센터 연계 공동 사업 추진	
2022	• 외국문화원 연계, 외국문화향유 행사 개최 (공모방식, 시범사업 추진)	

#### □ 참고자료

○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와 연계 가능 사업 예시

연도	주요내용
	<ul> <li>사업대상: 국제교류 관계자, 도민, 도내 외국인 등</li> <li>사업내용: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외국인 글로벌 가요 제, K-POP 공연, 태권도 시범, 골든벨 퀴즈 등</li> </ul>

○ 전북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주요 사업



## 연략 3 전북의 문화다양성 조사·정립 및 육성

## 가. 문화다양성 확장을 위한 소수문화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 □ 사업목적

 정책대상별 소수문화 집단·단체·공동체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수문화 관계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소수문화 집단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소수문화의 활동 영역이 확장될 필요가 있음

000

전북의 문화다양성 확장을 위한 기반으로서 소수문화 집단 및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소수문화 연대가 강화되는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2022년

○ 추진기관 : 문화다양성 전담기관

○ 사업예산 : 20백만원 (지방비 100%)

- 자조모임 지원, 네트워크 사업 지원 등 20백만원

○ 사업내용

- 새로운 소수문화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자조모임 지원
- 소수문화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사업 지원

- 소수문화 활동 및 소수문화 관련 자조모임 지원
  -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조직 외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소수자·집단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조모임을 공모 방식을 통하여 지원함
  - (예시) 1인 가구(독신) 모임, 난민 지원 모임, 비혼 모임, 세대 간 모임 등

- 소수문화 관계자·단체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파티 개최
  - 문화다양성 포럼, 문화다양성 주간 등과 연계하여 소수문화 중에서도 소외받는 새로운 집단 간 연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과 공동 사업을 지원함
- 소수집단 관련 정보 구축과 제공
  - 성적 지향, 비혼가구, 1인가구, 이주민 등 소수집단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시 구축하고, 필요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함(전담기관 담당)
  - (예시) 성소수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비혼·1인가구를 위한 정책정보 등
- 연차별 추진일정

연도	주요내용
2021	• 전담기관 주관, 소수문화 활동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2022	• 소수문화 자조모임 및 문화다양성 활동(역량강화·네트워크) 공모사업 추진

#### □ 참고자료

- 관계자 심층인터뷰 중 관련 정책제안 내용
  - 소수문화 간 연대를 위한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축 필요

고충을 파악하고 사업에 이를 녹여내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불려 다니는 생각도 많이 한다. 같은 자리에 있는 느낌. 그런 부분에 있어 지속적인 연결이 필요한 것 같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1년 단위인데 네트워크 모임들이 그렇다. 첫 주는 소개하고 익숙해지려고 하면 사업이 끝나는…내년에 다시 시작하는…지속적인 커뮤니티 유지가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또 이걸 억지로 묶는 것은 오히려 유지하기 어렵다.

- 소수문화 활동 강화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필요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살아가면서 힘든 점을 공유하고 같이 고민해주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요즘에는 비혼여성 부모돌봄을 주제로 진행을 한다. 부모돌봄이 (형제, 자매 중) 비혼여성 개인에게 전가되는 문제, 더 나아가 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문제점들도 이야기하고… 개인 상황을 공유하면서 해결방법을 같이 고민하면서 돈독해진다. 바로 여성 아카데미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페미학이나 비혼 여성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대중강좌를 진행하는데…다음세대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세대별고민 나눔을 통해 연대를 하고 대중적인 조직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 나. 지역 고유의 문화다양성 조사와 DB 구축

#### □ 사업목적

 전라북도 역사와 함께 정립된 지역, 계층, 세대에 대한 고유의 문화다양성
 을 조사·DB를 구축하여 전라북도가 문화다양성 지역임을 확산시키는 근 거로 활용하고, 문화다양성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 창의문화를 추진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3개년 사업으로 추진

○ 추진기관 :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2021년 신규사업화, 전문조사·연구기관에 의한 연구용역 추진

○ 사업예산 : 100백만원 (지방비 100%)

- 전체 예산 300백만원 중 2022년 예산 10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시군 및 시군연계 생활권)별 문화다양성 조사 : 언어, 생활, 사회체계 등
- 정책대상별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소수문화집단 현황, 주요 활동 등) 전수 조사

-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역별 문화다양성 자원 조사
  - 전라북도 주요 지역(시군·생활권)의 생활문화 전반을 조사하고, 출판 사업을 추진
- 연차별 추진일정

연도	주요내용	
2021	• 지역별 고유의 문화다양성 전수조사 세부 계획 수립 • 2020년 신규사업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	
2022	• 3개년 사업으로 연구용역 추진 (1년차 사업 진행)	

## 다. 전북문화다양성 전시콘텐츠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 □ 사업목적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와 자원조사 등을 활용하여 타 문화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시콘텐츠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
-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을 활용, 문화다양성 전시콘텐츠·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 문화시설(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요 프로그램으로 활용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2022년

○ 추진기관 :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연계)

○ 사업예산 : 기존 사업 예산 활용

-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 그램,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문화예술교육 0교시' 등

- 사업내용
  - 문화다양성 전시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
  - 문화시설 연계, 전시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콘텐츠·프로그램 보급)

- 지역 특화 문화다양성 전시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전라북도만의 고유한 문화다양성을 반영
- 문화시설 주요 사업으로 문화다양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 박물관, 미술관, 공공·작은도서관,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 영상미디어센터,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에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보급, 주요 프로그램 운영을 권고

## ○ 연차별 추진일정

	연도	주요내용	
	2020	•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연계 계획 수립(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협의	
ľ	2021	• 전시콘텐츠·체험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교육지원 공모사업 연계	
ľ	2022	• 개발된 전시콘텐츠·체험프로그램의 문화시설 프로그램 적용(보급)	

## □ 참고자료

○ 연계 가능한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예시)

연도	주요내용
지역특성화	•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지역문화예술환경 및 인문적 특성이 반영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원	대상자가 문화생산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생활문화
사업	구축의 장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토요문화학교	<ul> <li>(일반프로그램)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li></ul>
지역연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li>(기획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li>
신규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예술가 등 지속적인 연구와 학습, 동기
프로그램 개발지원	를 지원하는 연구 및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신규 문화예술교
'문화예술교육 0교시'	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 ○ 문화다양성 체험프로그램 사례 : Brooklyn Children's Museum<sup>26)</sup>

- 브루클린에 있는 중국 서점, 멕시칸 베이커리, 인터네셔널 상점, 아프리칸 마켓 등을 마련하여 각 문화를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학생들은 특정국가와 민족의 문화다양성 학습을 위하여 의식주 생활, 신화등 탐색과 이해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시, 체험을 통해 몰입을 유도, 관련 국가 이해도를 높임





[그림 4-18] 프로그램 시설 전경(좌), 일본 식문화 체험 모습(우)

<sup>26)</sup> 자료: 이연수 외(2014), "어린이와 문화유산교육 문화다양성교육 형태 및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박물관교육연구, 12: pp.35-60

## 라. 문화다양성 리빙랩 :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가치 확산

## □ 사업목적

- 문화다양성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가치 확산사업
   을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확산시켜 문화다양성의 인식을 제고시킴
- 문화단체와 소수문화를 연계, 문화다양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다양성 리빙랩'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추진기관 : 문화다양성 전담기관

○ 사업예산 : 기존 사업 예산 활용

- 사회혁신 분야, 문화예술 분야, 도시재생 분야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 연계

○ 사업내용

- 문화다양성 테마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지원

- 문화다양성 리빙랩 성과 확산

## □ 추진방안

- 기존 리빙랩 사업 중 연계 가능한 사업을 파악, 공동 사업 추진
- 관내 리빙랩 지원 사업 현황 파악,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 리빙랩 공동사업 진행
- 리빙랩 성과를 사례집으로 제작, 시설·기관에 배포: 교육자료로 활용
- 연차별 추진일정

연도	주요내용
2021	• 리빙랩 사업 현황 파악, 관련 기관과 업무체계 마련
2022	• 기존 사업 활용, 문화다양성 리빙랩 공모사업 추진 • 문화다양성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성과 백서(사례집) 발간, 배포(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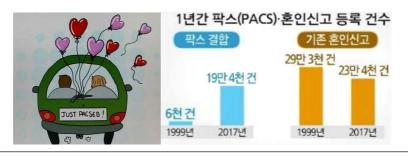
# 4. 중기 과제

## 가. 소수문화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및 체계 마련

- □ 지역차원의 소수문화 권리보장 제도 마련
  - 소극적 측면에서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혐오·차별 금지와 적극적 측면에서 소수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혐오와 차별 금지를 위한 조례를 중장기적으로 제정하고, 소수자의 기본
     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함
    - 혐오범죄 처리 관련「오사카 시에서 헤이트 스피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2016년)
      - (혐오표현) 인종이나 민족에 관하여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개인 또는 해당 개인에 의해 구성되는 집단을 ①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 ②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 ③ 중오 또는 차별의식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것 중의 하나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a) 상당한 정도의 모욕 또는 비방 또는 b) 위협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 불특정 다수의 자가 표현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 시장은 도시 등에서 행해지는 표현활동이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자 등으로 구성되는 '오사카 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표현내용의 확산 방지조치와 행위주체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17: 30~31

-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공동생활약정):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 두 이성이나 두 동성인 성인 간 시민결합제도를 말하는데, 흔히 동성해 결혼 합법화 와 달리 법적으로 인정되는 동거관계라고 볼 수 있음. 결혼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권 리와 의무가 주어짐
  - 동성 커플을 인정하기 위한 법적 장치임에도 실제 이성커플의 수가 더 많음



## □ 조례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

-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서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 유영함
  - 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며, 간사기관(전담기관)을 지정 (조례 개정 필요)
  - 전라북도 조례의 문화다양성위원회 관련 조항(제5조. 제6조)
    - 제5조(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실행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 3.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4.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 5.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6.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7.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

-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지역별, 연령별,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 공모위원 10명 이내
- 2.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5명 이내
- 3.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내외
- 문화다양성 전문가 또는 다수문화 관계자보다 소수문화 관련 직접 당사자 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함
  -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구성(사례): 전체 15명(위촉위원 12, 당연직위원 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기 위촉위원에는 여성,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이주민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계 인사, 인권변호사 등이 참여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대상별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회적약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온 전문가들임

## 나. 문화다양성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 □ 전라북도 문화다양성(문화권) 선언
  - 문화적 권리로서 문화다양성 가치를 담은 (가칭)'전북도민 문화권 선언'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선언추진단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함
  - 연구용역을 통하여 기초자료를 작성, 실무추진단 협의를 통하여 선언함
    - 문화다양성 외 문화향유 평등권, 문화경관, 문화협치 등 권리와 체계 등을 포함 [표 4-9] 서울시민문화권 선언: 2016.12
      - 추진경과
      - 2015.8.25. 문화권선언실무협의회 구성
      - 2015.9~2016.7 시민문화권 선언을 위한 회의
      - 2016.2~6 시민문화원 선언 기초자료 조사용역
      - 2016.7~11 추진계획 수립과 문화권선언추진단 회의 개최
      - 2016.12.20. 서울시민문화권선언식
      - 구성체계 : 전문 및 4장 총 17개 조문
      - 문화 향유권, 문화 접근권, 문화 교육권, 표현의 자유(제1~4조)
      - 서울의 문화다양성, 문화경관, 문화자원, 문화공동체 등(제5~9조)
      - 문화협치, 문화정책 수립·정책의 참여, 평가와 의견수렴(제10~13조)
      - 시민의 의무, 서울시의 의무, 문화권 원탁회의(제14조~17조)

####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문 : 전문〉

시민은 문화의 주인이자 권리의 주체입니다. 문화를 누리는 동시에 창조해 내는 존재입니다.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와 함께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으로서 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문화적 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시민과 서울시는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이 선언을 합니다. 서울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문화를 만들고, 표현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 서울시는 계층이나 연령, 지역, 성차, 인종, 종교, 국적 등의차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민과 서울시는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각종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물론이고축제 등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은 시민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접근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문화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합니다.

## □ 소수문화의 일상화 및 생활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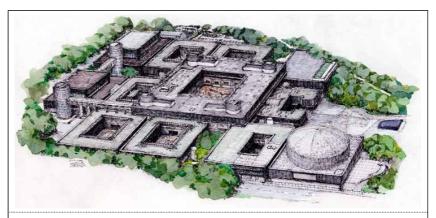
- 소수자(집단, 문화)가 일상에서 다수자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일상적 소수문화가 생활 속에서 차별 없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소수자의 일상적 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 예시
  - 식문화 다양성 확대 : 종교적 식문화(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등의 음식문화), 비건 등
  - 4대 종교(불교·천주교·기독교·원불교) 중심에서 다종교 중심으로 정책지원 전환
  - 한중일 삼국 이상의 다국어 서비스 지원 : 공공정책의 다국어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소수자(문화, 집단)를 차별하는 이미지를 개선, 공존의 문화적 도시디자인 추진



# 다. 문화다양성 활용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 □ 전라북도 문화다양성박물관 조성과 국립인류학 박물관 추진
  - 전라북도 지역별 고유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전시·교육·체험하는, 전라 북도 인류학박물관으로서 문화다양성박물관을 조성함
    - 기존 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은 해당 지역을 동일한 문화를 갖는 공간으로 상상하여, 동일 정체성 기반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지만, 인류학(문화다양성)박물관은 동일 한 행정구역 내에서 생활권별로 다른 문화를 보여주고, 특히 외국인주민을 포함하여 전라북도 주민유형에 따른 문화적 특성과 생활문화를 구분하여 보여줌

- 전라북도 생활권별, 주민별(외국인주민 포함) 문화적 특성과 주요 생활문 화를 보여주는 전시·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 중장기적으로 '국립인류학박물관'을 구상, 국책사업으로 제안함
  - 일본의 국립민족박물관 사례



- 일반적으로 Minpaku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진 국립민족학박물관은 문화인류학 및 민족학을 중심 분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1974년 대학공동연구기관으로 설립
- 51,225m2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이 본 박물관의 연구, 전시, 수집 및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약 60명의 교원이 전 세계의 민족,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류학 및 민족학 연구를 진행
- 인류학과 민족학 전공의 대학원 교육도 실시. 연구기관이자 박물관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민족학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이를 연구와 전시에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연구 결과를 바로 관람객과 공유하는 특징적인 국립 기관

자료: 국립민족박물관 홈페이지 소개 글(https://www.minpaku.ac.jp/english/aboutus/ko)

## □ 다민족·다종족 통합문화원 조성과 통합 행사 개최

- 다국적 다문화를 하나의 장소에서 통합적으로 체험·교육할 수 있는 다민 족·종족 통합문화원(전라북도 국제문화원)을 조성하고, 외국문화원과 연 계하여 민족·종족별 문화를 전시·체험·교육함
- 다민족·다국적 세대공감 페스티벌 개최 등을 구상함

# 5. 추진과제 종합

## □ 3대 전략 12개 세부과제

-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안)으로 3대 전략, 12개 세 부과제를 제안하며, 소요 예산은 790백만원으로 추정함
  - 12개 세부과제 중 사업예산을 신규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은 5개로 구상하였고, 나머지 7개 과제 중 1개 과제(1-라)는 비예산사업이며, 나머지 6개 과제는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과 연계하거나 기존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함
- 과제수행기간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로 계획된 과제는 7개이며, 2022년에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된 과제는 5개임

[표 5-1]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안) 종합

카지저구:	えていて	기	간	예신	<u>+</u>
구선선택	구인피제	21	22	백만원	기존
3대 전략	12개 세부과제			790	
1 과여다이	가. 전담기관 지정과 문화다양성센터 운영			200	연계
추진전략 3대 전략 1.광역단위 - 문화다양성 정책 기반 마련 2. 접촉면 확대 통한 공존의 문화 형성 1.전북의 문화다양성 조사·정립 및 육성	나. 현황·사례 중심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와 활용			100	
	다. 문화다양성 지침·가이드라인 제작·권고와 적용			50	
박년 	라. 문화다양성 조례 제·개정과 제도 마련			_	
2 저초대	가. 문화다양성 교육교재·콘텐츠 개발과 교육 실시			100	연계
	나.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주간 지정, 페스티벌 개최			100	연계
	다. 문화다양성 공공 캠페인과 일반 공모전 추진			20	
문화 영성	대 전략 12개 세부과제 790 가. 전담기관 지정과 문화다양성센터 운영 200 남자다양성 나. 현황·사례 중심의 문화다양성센터 운영 100 라. 문화다양성 지침·가이드라인 제작·권고와 적용 50 라. 문화다양성 조례 제·개정과 제도 마련 - 가. 문화다양성 교육교재·콘텐츠 개발과 교육 실시 100 나.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주간 지정, 페스티벌 개최 100 나.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주간 지정, 페스티벌 개최 100 다. 문화다양성 공공 캠페인과 일반 공모전 추진 20 라. 기관 연계, 외국문화향유·국제교류 사업 확대 100 가. 문화다양성 확장 위한 소수문화 역량강화, 네트워크 20 나. 지역 고유의 문화다양성 조사와 DB 구축 100 당사·정립 다. 전시 콘텐츠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	100	연계		
1 저브이	가. 문화다양성 확장 위한 소수문화 역량강화, 네트워크			20	
	나. 지역 고유의 문화다양성 조사와 DB 구축			100	
	다. 전시 콘텐츠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_	연계
및 <del>학</del> 성	라. 문화다양성 리빙랩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가치 확산			_	연계

주 : '연계'는 기존 추진되던 사업을 활용하여 예산을 확보하거나. 기존 추진사업으로 추진하다는 의미임

# 참고문헌

Jeonbuk msilidie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7,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김남국, 2010,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국제정치논총』 50(1): 261-284
- 김 면, 2017,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
- 김용섭, 2017,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 『행정법연구』 51: 189-213
- 김태원, 2012,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유럽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이론 탐색", 『유럽사회문화연구』 9: 179-213.
- 라도삼. 2018.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향 연구". 연구결과공유회의 발표문
- 라도삼, 2019,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화다양성 정책 실태조사 보고서」(연구책임 김면)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제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연구책임 김면)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8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 박종대, 2017, "한국 다문화교육정책 사례 및 발전 방안 연구: 상호문화주의를 대안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울연구원, 2017,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과 서울시의 포용성」, 정책보고서
- 이경희, 2015,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실천 신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 담론의 극복, '보편적-창조적 소수자'되기-", 『윤리교육연구』 38: 253-279
- 이동연, 2006, "문화다양성과 문화권: 한국사회의 현주소와 정책적 과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포럼」자료집, 7~24
- 이동연, 2018, "개헌과 문화권", 『문화과학』 94: 126-146
- 이희은, 2010, "문화적 시민권과 문화연구의 만남에 대한 모색: 공사 영역의 이분법 극복과 연대의 가능성을 위하여", 『언론과 사회』 18(2): 40-81.
- 장세길, 2018, "혐오사회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과제", 전북 연구원 이슈브리핑.
- 장한업, 2016, 상호문화교육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고찰: 상호문화성을 중심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천 21(2):
- 정보람, 2019,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시과제

보고서.

조규범, 2017, '혐오표현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카롤린 엠케, 2017, 『혐오사회』, 서울: 다산북스

한건수, 2015, "한국 사회의 문화다양성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 『국제이해교육연구』, 10(2): 163~199.

Alfred Holzbrecher, 정기섭·오영훈·김영순·이문기·변경원 역, 2014, 『상호문화 교육의 이해』, 북코리아.

Stevenson, N.(2001). Culture and citizenship. Sage.

\_\_\_\_\_(2003). Cultural citizenship in the 'cultural' society: a cosmopolitan approach. *Citizenship Studies*, 7(3), 331~348

Kivisto, P. and Faist, T.(2007). *Citizenship: Discourse, theory, and trans national prospects.* Blackwell.

Marshall, T. H.(1950/1970).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ng, A.(1998).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ke University Press.

UNESSCO. 2006, Guidlines on intercultural education, UNESCO.

농림축산식품부(2016.1.12.), '할랄식품정책 관련 오해에 대한 설명' 브리핑 자료 미션투데이(2018.3.28.), "전주시민, "전주퀴어축제 반대한다" 목소리 높여" 연합뉴스(2018.3.12.), "전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출범…4월 7일 본행사 개최" 전북중앙신문 (2018.4.8.), "1회 전주퀴어문화축제 성료"

#### 사이트

https://www.amsterdam.nl/en/policy/policy-diversity/http://dutchculturekorea.com/?p=3027

Jeonbuk Institute

# 부록: 델파이조사 설문지 (1~2차)

### 혁신적 포용사회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연구

- 문화다양성 의제 설정 및 정책 추진방향 관련 1차 델파이조사 -

TT	
11)	
11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연구원에서는 '혁신적 포용사회를 위한 전라복도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전라북도 여건에 적합한 문화다양성 개념을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 특성상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1차 결과 분석 후의견 취합을 통해 재질문을 구성하여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쁘시지만 앞으로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 및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 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표에 기재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호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관기관 : (재)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 장세길, 전문연구원 신지원, 063-280-7142)

수행업체 : 통계앤리서치플랫폼 (책임연구원 신동훈, 010-4189-1480)

	응답	자 정보		
성함		휴대폰 번호		
주소				
소속 기관	소속 부서		직급	

1 =	괴충난	이지	업은	무엇	011	771-9
1.07	101-	7 7	HL	TX	H	1.

① 교수 ② 연구원 ③ 행정공무원 ④ 활동가 ⑤ 기타(

2. 귀하는 문화다양성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3.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라북도의 수용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4. 전라북도에서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적절

4. 다음은 전라북도에서 제정한 문화다양성 보호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입니다. 내용을 참고 하여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 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 한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 혹은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문화다양성" 과 "문화적 표현"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 문화다양성: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 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 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 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문화적 표현 :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 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 4.1 조례에 제시된 "문화다양성(정의)"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적절	② <b>부</b>	-적절	③ 보	-통	4	적절	(5)	매우	적절

4.2.	제시된	문화다양성(정의)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써주시
	길 바립	'니다.							

4.3.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조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항목 별 중요도와 시급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중요도				., .	시급도		2.5							
조례 권고사항	매 낮음	=	塘	=	매우 높음	매 낮음	#	뚕	=	매 꾦							
1) 문화다양성 실행계획(2년마다)	1	2	3	4	(5)	1	2	3	4	(5)							
2)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2	3	4	(5)	1	2	3	4	(5)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1	2	3	4	(5)	1	2	3	4	(5)							
4) 문화다양성교육사업 실시	1	2	3	4	(5)	1	2	3	4	(5)							
5) 전문인력 양성	1	2	3	4	(5)	1	2	3	4	(5)							

- 5. 매년 실시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서는 다양성의 영역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에 제시된 분류체계를 보고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 5.1 제시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방식을 보고 귀하가 생각하는 전라북도 소수집단의 소외도 와 정책 시급성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소	외도	1)	Ì	정책 시급성				
구분예시	전혀아님	I	보통	<b>=</b>	배우·높el	전혀아님	=	보통	H	HONAGE (5)
민족/국적	1	2	3	4	(5)	1	2	3	4	(5)
성별 (남성, 여성, 간성)	1	2	3	4	(5)	1	2	3	4	(5)
장애문화 (장애, 비장애)	1	0	3	4	(5)	1	0	3	4	5
성적지향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문화)	1	2	3	4	(5)	1	2	3	4	(5)
세대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1	2	3	4	(5)	1	2	3	4	(5)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	1	2	3	4	(5)	1	0	3	4	(5)
소득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1	2	3	4	(5)	1	2	3	4	(5)
혼인	1	2	3	4	(5)	1	2	3	4	(5)
전통	1	2	3	4	(5)	1	2	3	4	(5)
지역 (도시, 농촌, 시군, 마을)	1	2	3	4	(5)	1	0	3	4	(5)
예술취향 (주류예술, 비주류예술)	1	2	3	4	(5)	1	2	3	4	(5)

5.2 제시된 소수집단의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전라북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시) 관련 시설 건립 및 운영, 관련 밀집지역 보전 및 육성, 집단별 문화활동 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 시민 교육 및 이해 사업, 다수 시민이 소수집단의 문화에 접촉할 수 있는 사업, 관 련 조례 및 지원 지침 마련, 도시시설 개선 및 도시디자인 사업 등 제시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도 자유롭게 서술 바람

<sup>1)</sup>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중 정책적 대상으로서 활용이 미비한 정도를 판단

6. 제시된 표를 참고하여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책방향	정책내용
소수집단의 기본권 신장 및 권리보호	차별적·배제적 환경으로부터 소수집단의 권리 보장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의 자유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및 취향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집단의 예술표현 및 창작, 생산의 자유	예술 활동 및 창작 활동의 자유로운 권리 보장
집단 간 상호 이해 및 갈등 해결	상호 집단 간 이해를 위한 교육 및 교류활동 추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역 환경 개선	문화다양성 관련 밀집지역 보존 및 관련 기반 조성

- 6-1. 6번에 제시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적절

6-2. 전라북도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제시된 정책방향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체크(●)하여 주십시오.

		7	<del>2</del> Ω5		9r		시급도			
정책방향	전혀아님	-	보통	n	매우중요	전혀아님	I	보통	В	마아사여
소수집단의 기본권 신장 및 권리보호	1	2	3	4	(5)	1	2	3	4	(5)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의 자유	1	2	3	4	(5)	1	2	3	4	(5)
소수집단의 예술표현 및 창작, 생산의 자유	1	2	3	4	(5)	1	2	3	4	(5)
집단 간 상호 이해 및 갈등 해결	1	2	3	4	(5)	1	2	3	4	(5)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역 환경 개선	1	2	3	4	(5)	1	2	3	4	(5)

6-3.	6번에	제시된	정책	방향	중	보완·수정·삭제	해야 하는	- 내용이	있으면	<b>작성</b> 해주시길	바랍
	니다.										

	100

## 혁신적 포용사회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연구

- 문화다양성 의제 설정 및 정책 추진방향 관련 2차 델파이조사 -

43 COMMONS   1	-	
TT		
11.0		
117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연구원에서는 '혁신적 포용사회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통해 전라북도 여건에 적합한 문화다양성 개념을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총 30명 중 29명(96.7%)이 응답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 응답자 대상으로 1차에서 수렴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1차 때 주신 의견을 정리하여 결과를 도출했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재질문하는 설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바쁘시지만 앞으로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 및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표에 기재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호되며 연구 목적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관기관 : (재)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 장세길, 전문연구원 신지원, 063-280-7142)

수행업체 : 통계앤리서치플랫폼 (책임연구원 신동훈, 010-4189-1480)

	<u>0</u> 1	답자 정보		
성함		휴대폰 번호		
주소				
소속 기관	소속 부서		직급	

#### 1.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조례 적절성 관련 제안의견 판단

O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조례의 문화다양성 정의와 관련하여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응답에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적절: 56.5%, 매우 적절: 4.3%)과 함께 추가적으로 보완·수 정을 위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니 응답해주시실 바랍니다.

#### < "문화다양성(정의)"의 제안의견 판단>

- 문화다양성: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 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 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 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1.1. 조례에 제시된 "문화다양성(정의)"에 대한 내용을 정책 활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조례 내용 그대로 적용(질문 2로 이동) ②보완·수정 필요(질문 1.2. 답변 후 질문 2로 이동)
- 1.2. 문화다양성 정의와 관련하여 보완·수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안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라북도	. 문화다양성 개념 보완·수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필요	불필요	모르 겠음
대상	① 집단과 사회 중심 영역에서 개인과 소수자를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정책적 범위 확대 필요			
	② 현재의 정의는 예술·문화유산 중심이기 때문에 문화로 개념 확장			
	③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 구체화 필요 (예 : 국적, 민족, 계층, 인종, 언어, 성적지향, 혼인여부, 연령, 학력, 출신지역, 신체적 능력의 차이)			
방향	④ 차별(차이)의 강조보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 양성을 강조(시각의 전환 강조)			
	⑤ 일상문화(생활문화)를 포함한 문화 범위 확대			
	⑥ (문화)예술표현(창작)을 넘어 사회문화적 현상에서 문화다양성 가치 주목 (예: 다름과 차이, 차별과 혐오로 인해 발생하는현상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활용)			

⑦ 그 외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직접 써주시길 바랍니다.

# 2. 문화다양성 조례 권고사항의 중요도 시급도 판단

O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조례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중요도와 시급도를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질문에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	중요도	시급도
조례 권고사항	순위	순위
1) 문화다양성 실행계획(2년마다)	2	2
2)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4	5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1	1
4) 문화다양성교육사업 실시	3	3
5) 전문인력 양성	4	4

#### 2.1. 중요도 순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한 결과 ② 순위조정 필요(귀하가 생각하는 중요도 순위를 다시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조례 권고사항	중요도 순위 (1순위~5순위)
1) 문화다양성 실행계획(2년마다)	
2)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4) 문화다양성교육사업 실시	
5) 전문인력 양성	

#### 2.2. 시급도 순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한 결과 ② 순위조정 필요(귀하가 생각하는 시급도 순위를 다시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조례 권고사항	시급도 순위 (1순위~5순위)
1) 문화다양성 실행계획(2년마다)	
2)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4) 문화다양성교육사업 실시	
5) 전문인력 양성	

## 3. 전라북도 소수집단 소외도·정책 시급성 판단

○ 전라북도 소수집단의 소외도와 정책 시급성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질문에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មសារា	소외도	정책 시급성		
구분예시	순위	순위		
민족/국적	2	1		
성별	3	4		
장애문화	4	2		
성적지향	1	7		
세대	9	6		
종교	10	11		
소득	7	5		
혼인	8	9		
전통	11	10		
지역	5	3		
예술취향	6	8		

#### 3.1. 소외도 순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한 결과 ② 순위조정 필요 (귀하가 생각하는 소외도를 다시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소외도 (1순위~11순위)
민족/국적	
성별	
장애문화	
성적지향	
세대	
종교	
소득	
혼인	
전통	
지역	
예술취향	

#### 3.2. 정책 시급성 순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한 결과 ② 순위조정 필요(귀하가 생각하는 정책 시급성을 다시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정책 시급성 (1순위~11순위)
민족/국적	
성별	
장애문화	
성적지향	
세대	
종교	
소득	
혼인	
전통	
지역	
예술취향	

# 4.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의 중요도·시급도 판단

O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의 중요도와 시급도를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제 시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질문에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거리니라	중요도	시급도
정책방향	순위	순위
소수집단의 기본권 신장 및 권리보호	2	2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의 자유	4	4
소수집단의 예술표현 및 창작, 생산의 자유	5	5
집단 간 상호 이해 및 갈등 해결	1	1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역 환경 개선	3	3

#### 4.1.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의 중요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 ② 순위조정 필요(귀하가 생각하는 중요도를 다시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책방향	중요도 (1순위~5순위)
소수집단의 기본권 신장 및 권리보호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의 자유	
소수집단의 예술표현 및 창작, 생산의 자유	
집단 간 상호 이해 및 갈등 해결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역 환경 개선	

#### 4.2.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의 시급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 ② 순위조정 필요(귀하가 생각하는 시급도를 다시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책방향	시급도 (1순위~5순위)
소수집단의 기본권 신장 및 권리보호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의 자유	
소수집단의 예술표현 및 창작, 생산의 자유	
집단 간 상호 이해 및 갈등 해결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역 환경 개선	

4.3.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수립과 관련하여 보완·수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안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수립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	필요	불필요	모르 겠음
사업대상 반영	① 정책방향의 대상을 개인과 소수집단으로 변경			M G
	② 사업 대상의 세분화 필요(예: 세대, 지역 등)			
	③ 소수집단 중심의 정책 대상화 지양			
정책방향 반영	④ 갈등 해결이 아닌 갈등의 공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새로운 가치 전환 지향			
	⑤ 소수집단의 기본권 신장 및 권리보호는 인권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므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 방향에서는 제외			
	⑥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전 시민 대상 교육 및 교류활동 실시			
	⑦ 문화(예술)정책 중심의 지원이 아닌 젠더감수성 증진, 혐오문화 성찰,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하는 사회통합적접근이 필요			
	® 제도적 선정을 통한 지원보다는 활동 기반 마련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우선			
	③ 특정 소수성만을 위한 지원은 해당 소수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 발굴은 지영예 : 장애인학교, 기존 다문화정책 등)			
	⑩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의제를 포함하는 축제 또는 사업 발굴을 통해 전 시민의 문화다양성 접촉면확대			
⑩ 그 외 =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직접 써주시길 바랍니	다.		)

## 정책연구 2020-26

# 혁신적 포용사회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연구

발행인 | 김선기

발 행 일 | 2020년 6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90-2 953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